

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0330-01

<http://www.mafra.go.kr>

양곡관리법

2014. 01.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총 목 차

■ 양곡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1
▶ 양곡관리법 시행령 별표	85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7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95
■ 행정규칙	113
■ 농산물검사기준	225



양곡관리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양곡관리법 목 차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페이지
제1장 총 칙			1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10
제2조(정의)	제2조(곡류 등)		11
			11
제2장 양곡의 관리			13
제3조(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 수립)	제2조의2(양곡연도)		13
	제2조의3(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의 고시)		14
제4조(양곡의 매입 및 선금 지급 등)	제3조(생산자 등의 범위)		14
	제4조 삭제		15
	제5조(선금 및 약정이자)		16
	제5조의2 삭제		16
	제6조 삭제		16
	제7조 삭제		17
	제8조 삭제		17
	제9조 삭제		17

법 른	시 행 령	시 행 규 칙	페이지
제5조(양곡 매입가격 등의 결정)	제9조의2 삭제		17
제6조 삭제		제1조의2(부대비용의 범위)	17
제7조 삭제			18
제8조 삭제			18
제9조(정부관리양곡의 판매)	제10조(정부관리양곡의 판매 용도)		18
	제11조(정부관리양곡의 외상판매)		18
	제12조(판매가격의 고시)		19
	제13조 삭제	제1조의3(정부관리양곡의 용도별 매입자격 기준)	20
제9조의2(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		제1조의4(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기준)	20
제10조(공공비축양곡의 비축·운용)		제1조의5 삭제	21
제11조(양곡의 수출입)	제13조의2(시장가격의 기준)		22
제12조(미곡 등의 수입허가 등)	제14조(수입의 허가)	제2조(미곡 등의 수입허가 신청)	23
제13조(수입양곡의 관리 등)		제2조의2(수출 추천대상 양곡)	24
제13조의2(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제2조의3(수입이익금의 부과대상 품목)	25
			26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페이지	
제14조 삭제 제15조 삭제 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출하 등) 제17조 삭제 제18조 삭제 제19조(양곡가공업의 신고) 제19조의2(양곡가공업의 승계) 제20조(양곡가공업자에 대한 명령)	제14조의2(결손처분)	제2조의4(수입이익금의 산정 등)	27	
	제15조 삭제	제3조 삭제	28	
	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출하 등)	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매입 및 판매)		29
		제17조 삭제		31
		제18조 삭제		31
		제19조 삭제		31
		제20조 삭제		31
	제17조 삭제			32
	제18조 삭제			32
	제19조(양곡가공업의 신고)	제21조(양곡가공업의 신고)	제4조(양곡가공업의 신고 등)	32
		제22조 삭제		32
	제19조의2(양곡가공업의 승계)		제4조의2(양곡가공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33
			제5조(양곡가공업의 시설기준)	33
			제6조 삭제	33
			제7조(제조업의 범위)	36
			제7조의2(도정업의 범위)	37
	제20조(양곡가공업자에 대한 명령)	제23조(양곡가공업자에 대한 명령)		37
		제24조 삭제		38
		제25조 삭제		38

법 른	시 행 령	시 행 규 칙	페이지
	제26조 삭제		39
	제27조 삭제		40
	제28조 삭제		40
	제29조 삭제		40
	제30조 삭제		40
제20조의2(생산연도·품질 등의 표시)		제7조의3(양곡의 표시사항 등)	40
제20조의3(거짓표시 등의 금지)		제7조의4(거짓·과대의 표시·광고의 범위)	40
제21조(영업정비 등)		제8조(행정처분의 기준)	42
제21조의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45
제21조의3(영업소의 폐쇄조치)			46
제22조(미곡유통업의 육성)		제9조(미곡유통업의 육성)	47
제23조 삭제			48
제24조(업무대행)			49
제2장의2 양곡증권정리기금			49
제25조(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49
제25조의2(부채의 상환관리)	제30조의2(부채의 상환관리)		50
	제30조의3(양곡증권정리기금계정의 설치)		51
제25조의3(기금의 운용관리)	제30조의4(기금의 용도)		51
제25조의4(예산반영)			51
제25조의5(자금의 일시차입)			52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페이지
제25조의6(기금의 회계기관)			52
제3장 보칙			53
제26조(읍자 및 보조)	제31조(읍자 및 보조 대상사업)		53
제27조(감독)	제32조(감독)		54
제27조의2(명예감시원)		제10조(조사공무원의 증표)	55
제27조의3(포상금 지급)	제32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10조의2(명예감시원의 자격·위촉방법 등)	55
제28조(청문)	제33조 삭제	제11조 삭제	57
제29조(권한의 위임·위탁)	제34조(권한의 위임·위탁)	제12조(보고)	57
제4장 벌칙			61
제30조 삭제			61
제31조(벌칙)			61
제32조(벌칙)			62
제33조 삭제			63
제34조(벌칙)			63

법 른	시 행 령	시 행 규 칙	페이지
제35조(양벌규정)			64
제36조(과태료)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65
부 칙	부 칙	부 칙	66

양 곡 관 리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정 1950. 2.16 법률 제 97호</p> <p>일부개정 1951. 6. 2 법률 제 206호</p> <p>일부개정 1952. 3.21 법률 제 235호</p> <p>일부개정 1954.10.16 법률 제 349호</p> <p>일부개정 1963. 8. 7 법률 제 1386호</p> <p>일부개정 1963.12.16 법률 제 1589호</p> <p>일부개정 1970. 8. 4 법률 제 2213호</p> <p>일부개정 1972.12.18 법률 제 2374호</p> <p>일부개정 1976.12.31 법률 제 2984호</p> <p>일부개정 1980. 1. 4 법률 제 3237호</p> <p>일부개정 1980.12.31 법률 제 3321호</p> <p>일부개정 1988. 8. 5 법률 제 4018호</p> <p>전부개정 1994. 1. 5 법률 제 4707호</p> <p>일부개정 1994.12.31 법률 제 4842호</p> <p>타법개정 1996. 8. 8 법률 제 5153호</p> <p>일부개정 1997. 1.13 법률 제 5280호</p> <p>타법개정 1997.12.13 법률 제 5453호</p> <p>일부개정 1999. 1.21 법률 제 5665호</p> <p>타법개정 2000.12.29 법률 제 6305호</p> <p>일부개정 2002. 1.14 법률 제 6594호</p> <p>타법개정 2002.12.30 법률 제 6836호</p> <p>타법개정 2004.12.31 법률 제 7275호</p> <p>일부개정 2005. 3.31 법률 제 7432호</p> <p>타법개정 2005. 3.31 법률 제 7433호</p> <p>일부개정 2006.12.28 법률 제 8105호</p> <p>일부개정 2007. 8. 3 법률 제 8595호</p> <p>타법개정 2008. 2.29 법률 제 8852호</p> <p>타법개정 2008.12.31 법률 제 9280호</p> <p>일부개정 2009. 4. 1 법률 제 9622호</p>	<p>제정 1950.11.14 대통령령 제 393호</p> <p>일부개정 1962.12.15 각령 제 1081호</p> <p>전부개정 1964. 6.29 대통령령 제 1857호</p> <p>일부개정 1965.10. 8 대통령령 제 2252호</p> <p>일부개정 1966. 1.22 대통령령 제 2383호</p> <p>일부개정 1967. 6.17 대통령령 제 3106호</p> <p>일부개정 1967.10.12 대통령령 제 3237호</p> <p>일부개정 1968. 8.26 대통령령 제 3560호</p> <p>일부개정 1969. 1.28 대통령령 제 3752호</p> <p>일부개정 1969. 7. 4 대통령령 제 3973호</p> <p>전부개정 1969.12.26 대통령령 제 4483호</p> <p>일부개정 1970. 9.18 대통령령 제 5333호</p> <p>일부개정 1973. 2.14 대통령령 제 6500호</p> <p>일부개정 1974.11. 8 대통령령 제 7390호</p> <p>일부개정 1976. 9.16 대통령령 제 8244호</p> <p>일부개정 1977. 4.22 대통령령 제 8545호</p> <p>일부개정 1978. 9. 5 대통령령 제 9155호</p> <p>일부개정 1980. 5.10 대통령령 제 9865호</p> <p>일부개정 1981. 2.28 대통령령 제 10210호</p> <p>일부개정 1982. 4. 7 대통령령 제 10788호</p> <p>일부개정 1984. 4.10 대통령령 제 11404호</p> <p>일부개정 1986.12.31 대통령령 제 12043호</p> <p>일부개정 1988. 6.28 대통령령 제 12473호</p> <p>일부개정 1992.12.14 대통령령 제 13780호</p> <p>타법개정 1993. 3. 6 대통령령 제 13870호</p> <p>전부개정 1994. 4.30 대통령령 제 14224호</p> <p>타법개정 1994.12.23 대통령령 제 14438호</p> <p>타법개정 1994.12.23 대통령령 제 14446호</p> <p>일부개정 1994.12.31 대통령령 제 14489호</p>	<p>제정 1973. 3. 6 농수산부령 제 523호</p> <p>전부개정 1977. 7.29 농수산부령 제 694호</p> <p>일부개정 1981. 6.19 농수산부령 제 832호</p> <p>일부개정 1984. 8. 6 농수산부령 제 913호</p> <p>전부개정 1994. 5.25 농림수산부령 제 1141호</p> <p>일부개정 1994.12.31 농림수산부령 제 1165호</p> <p>일부개정 1995.12.30 농림수산부령 제 1220호</p> <p>타법개정 1996.12.28 농림부령 제 1246호</p> <p>일부개정 1997. 2. 6 농림부령 제 1251호</p> <p>타법개정 1999. 5.24 농림부령 제 1331호</p> <p>일부개정 1999. 8.21 농림부령 제 1341호</p> <p>타법개정 2000. 6.23 농림부령 제 1366호</p> <p>일부개정 2002. 7.27 농림부령 제 1423호</p> <p>일부개정 2005. 7. 1 농림부령 제 1498호</p> <p>일부개정 2006. 3.10 농림부령 제 1518호</p> <p>일부개정 2008. 2. 1 농림부령 제 1579호</p> <p>타법개정 2008. 3. 3 농림수산식품부령 제 1호</p> <p>타법개정 2008.11.18 농림수산식품부령 제 37호</p> <p>일부개정 2008.12.31 농림수산식품부령 제 47호</p> <p>타법개정 2008.12.31 농림수산식품부령 제 55호</p> <p>일부개정 2009.10. 1 농림수산식품부령 제 83호</p> <p>일부개정 2011. 4.13 농림수산식품부령 제 191호</p> <p>타법개정 2012. 7.20 농림수산식품부령 제 296호</p> <p>타법개정 2012.12.11 농림수산식품부령 제 326호</p> <p>타법개정 2013. 3.23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1호</p> <p>일부개정 2013.10. 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44호</p>

양 곡 관 리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 타법개정 2011. 7.21 법률 제10885호 일부개정 2011. 7.25 법률 제10932호 일부개정 2012. 1.26 법률 제11230호 일부개정 2013. 3.22 법률 제11641호 타법개정 2013. 3.23 법률 제11690호 </p> <p>제1장 총 칙 <개정 2009.4.1></p> <p>제1조(목적) 이 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 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4.1]</p>	<p> 일부개정 1995.12.30 대통령령 제14886호 타법개정 1996. 8. 8 대통령령 제15135호 일부개정 1997. 2. 1 대통령령 제15266호 타법개정 1997.12.31 대통령령 제15598호 일부개정 1999. 7.29 대통령령 제16491호 타법개정 1999.12.28 대통령령 제16646호 일부개정 2001. 7.30 대통령령 제17325호 일부개정 2002. 7.13 대통령령 제17673호 일부개정 2005. 6.30 대통령령 제18925호 타법개정 2007.12.31 대통령령 제20506호 일부개정 2008. 1.31 대통령령 제20576호 타법개정 2008. 2.29 대통령령 제20677호 일부개정 2009. 9.29 대통령령 제21758호 타법개정 2010. 3.15 대통령령 제22075호 일부개정 2012. 1.25 대통령령 제23535호 일부개정 2013. 3.23 대통령령 제24455호 일부개정 2013. 9.17 대통령령 제24752호 </p> <p>제1조(목적) 이 영은 「양곡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8.1.31></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곡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0.1]</p>

양 곡 관 리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2></p> <p>1. "양곡"이란 미곡(米穀)·맥류(麥類),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곡류(穀類)·서류(薯類)와 이를 원료로 한 분쇄물(粉碎物)·가루·전분류(澱粉類),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p>	<p>제2조(곡류 등) ① 「양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곡류(穀類)·서류(薯類)"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두류(豆類)·조·좁쌀·수수·수수쌀·옥수수·메밀·귀리·율무·율무쌀·기장·기장쌀 2. 미곡(米穀)·맥류(麥類) 및 제1호에 규정된 곡류의 교잡곡물 3. 감자·고구마 <p>②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곡·맥류 및 제1항에 규정된 곡류·서류의 압착물, 분쇄물 또는 가루의 응집물 2. 제1호에 규정된 분쇄물 또는 가루가 다른 식품과 성분이 변하지 아니한 상태로 혼합된 것 	

양 곡 관 리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2. "정부관리양곡"이란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매입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관리하는 양곡을 말한다.</p> <p>3. "공공비축양곡"이란 양곡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과 천재지변 등의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시장가격에 매입하여 비축하는 미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을 말한다.</p> <p>4. "양곡매매업자"란 양곡의 매매 또는 매매 중개를 업(業)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p> <p>5. "양곡가공업자"란 양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를 말한다.</p> <p>6. "양곡증권"이란 1999년 12월 31일</p>	<p>3. 제1호에 규정된 분쇄물 또는 가루나 제2호의 혼합물을 물만 사용하여 반죽한 것</p> <p>4. 전분류(澱粉類)를 변성(變性)시킨 것</p> <p>③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이란 밀과 콩을 말한다. <신설 2013.9.17> [전문개정 2009.9.29]</p>	

양 곡 관 리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이전에 종전의 「양곡증권법」(법률 제5662호 양곡증권정리기금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양곡증권정리기금의 부담으로 발행된 양곡증권을 말한다.</p> <p>7. "부채"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양곡증권의 원리금 중 미상환액 나.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양곡증권법」에 따른 양곡증권정리기금의 부담으로 도입한 차관양곡의 원리금 중 미상환액 다.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중 미상환액</p> <p>[전문개정 2009.4.1]</p> <p>제2장 양곡의 관리 <개정 2009.4.1></p> <p>제3조(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이하 "양곡수급</p>	<p>제2조의2(양곡연도) 정부의 양곡연도는 전년도 11월 1일부터 해당 연도 10월 31일까지로 한다.</p>	

양 곡 관 리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② 양곡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2,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관리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정부관리양곡의 수요량 및 공급량 3. 공공비축양곡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곡수급계획을 세운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개정 2013.3.23></p> <p>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양곡수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4.1]</p> <p>제4조(양곡의 매입 및 선금 지급 등)</p>	<p>[전문개정 2009.9.29]</p> <p>제2조의3(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의 고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이 확정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9.29]</p> <p>제3조(생산자 등의 범위) ① 법 제4조제</p>	

양 곡 관 리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수급계획의 운용에 필요한 양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매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1항에 따른 생산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p>②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유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미곡종합처리장을 운영하는 자 3. 그 밖의 양곡매매업자 등 양곡의 수급 조절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p>[전문개정 2009.9.29]</p> <p>제4조 삭제 <2005.6.30></p>	

양 곡 관 리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생산자 또는 소유자와 양곡의 매입약정을 체결하여 양곡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매입약정금액의 일부(이하 "선금"이라 한다)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③ 제2항에 따라 선금(先金)을 받은 생산자 또는 소유자는 그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원하지 아니하면 이에 상당하는 선금에 약정이자를 더하여 반납하여야 한다.</p> <p>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선금, 약정이자, 그 밖에 매입약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1]</p>	<p>제5조(선금 및 약정이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매입약정을 체결한 생산자 또는 소유자 중 선금 지급을 희망하는 자에게는 매입약정금액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② 선금을 지급받은 생산자 또는 소유자가 약정의 이행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선금에 더하여 반납하여야 하는 약정이자는 매입 약정량 중 이행을 원하지 아니하는 양에 상당하는 선금에 연 5퍼센트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9.17> [전문개정 2009.9.29]</p> <p>제5조의2 삭제 <2005.6.30></p> <p>제6조 삭제 <2005.6.30></p>	

양 곡 관 리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5조(양곡 매입가격 등의 결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양곡을 매입할 때에는 그 매입가격과 매입량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개정 2013.3.23></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4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로부터 양곡을 매입하는 경우 그 양곡의 매입가격은 소유자가 매입한 양곡의 가격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4.1]</p>	<p>제7조 삭제 <2005.6.30></p> <p>제8조 삭제 <2005.6.30></p> <p>제9조 삭제 <2005.6.30></p> <p>제9조의2 삭제 <2005.6.30></p>	<p>제1조의2(부대비용의 범위) 「양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관료 2. 이자 3. 입출고료

양 곡 관 리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6조 삭제 <2005.3.31></p> <p>제7조 삭제 <2005.3.31></p> <p>제8조 삭제 <2005.3.31></p> <p>제9조(정부관리양곡의 판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따라 판매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대하여는 그 대금을 받기 전에도 양곡을 매수인에게 인도(引渡)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기관용 2. 가공용 3. 공공용 4. 일반판매용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p>제10조(정부관리양곡의 판매 용도)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호용 2. 재고정리 및 긴급처분용 3. 사료용 4. 수입 대체용 5. 수출용 6. 시험연구용 7. 가공식품 개발용 <p>[전문개정 2009.9.29]</p> <p>제11조(정부관리양곡의 외상 판매)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대금을 받기 전에도 양곡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상하차료 5. 그 밖의 운송료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비용 <p>[전문개정 2009.10.1]</p>

양 곡 관 리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② 제1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판매가격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p> <p>③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부관리양곡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공용 또는 일반판매용으로 판매하는 정부관리양곡을 공개입찰하는 방법으로</p>	<p>인도할 수 있는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9.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기관용과 공공용 2. 구호용(재해 등 긴급히 인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재고정리 및 긴급처분용 4. 수입 대체용 5. 일반판매용 6. 가공용과 사료용 <p>② 제1항에 따른 용도로 외상 판매하는 경우 기간 및 조건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9.29]</p> <p>제12조(판매가격의 고시)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부관리양곡의 판매가격을 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양곡의 매수자가 특정한 범위의 소수(少數)로 한정되는 경우에는 판매가격을 고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3.23></p>	

양 곡 관 리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을 용도에 따라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시설 등 자격기준을 정할 수 있고, 양곡의 용도를 지정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지정된 용도 외의 사용·처분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제4항에 따른 용도에 따라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 및 용도지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4.1]</p> <p>제9조의2(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라 판매한 정부관리양곡을 매입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매입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p>	<p>[전문개정 2009.9.29]</p> <p>제13조 삭제 <1999.7.29></p>	<p>1조의3(정부관리양곡의 용도별 매입자격 기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용도에 따라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9.10.1]</p> <p>제1조의4(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 기준) ① 법 제9조의2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를 거</p>

양 곡 관 리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2011.7.21,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4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경우 2. 제9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이 지정한 용도 외의 용도로 양곡을 사용·처분한 경우 3. 해당 양곡에 대하여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생산연도·품질 등의 표시를 위반하거나 제2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과대의 표시 또는 거짓·과대의 광고를 한 경우 4. 해당 양곡에 대하여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의무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의2. 해당 양곡에 대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의무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57조 각 호의 		<p>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양곡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p>② 법 제9조의2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9.10.1]</p> <p>제1조의5 삭제 <2009.10.1></p>

양 곡 관 리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p>5. 그 밖에 양곡관리대장 비치 등 양곡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09.4.1]</p> <p>제10조(공공비축양곡의 비축·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비축양곡을 비축·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2013.3.23></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공비축양곡을 비축·운용할 때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국내보조 감축약속 면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2013.3.23></p> <p>③ 공공비축양곡의 매입·판매가격은 매입·판매지역의 당시 시장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3.3.22></p> <p>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공공비축양</p>	<p>제13조의2(시장가격의 기준) 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시장가격은 공개입찰을 통하여 결정된 가격이나 매입 및 판매 당시 통계청장이 조사한 가격(통</p>	

양 곡 관 리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곡의 비축·운용, 시장가격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2> [전문개정 2009.4.1] [제목개정 2013.3.22]</p> <p>제11조(양곡의 수출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양곡을 수입하거나 수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4.1]</p> <p>제12조(미곡 등의 수입허가 등) ①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의 시장 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이하 "양허세율"이라 한다)로 미곡이나 이를 원료로 한 분쇄물·가루, 그 밖에</p>	<p>계청장이 조사한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조사한 도매시장 가격이나 실제 거래가격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가격의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통계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9.17> [전문개정 2009.9.29]</p> <p>제14조(수입의 허가)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미곡의 압착물, 분쇄물 또는 가루의 응집물 2. 미곡의 분쇄물 또는 가루가 다른</p>	

양 곡 관 리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이하 "허가대상미곡등"이라 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대상미곡등의 용도 등을 밝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② 양허세율로 허가대상미곡등이 아닌 양곡을 수입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양곡을 수출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양곡의 수출 또는 수입에 대한 추천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품목별 추천물량 및 추천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p> <p>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외국의 원조기관 또는 외국의 민간원조단체가 제공하는 허가 또는 추천대상인</p>	<p>식품과 성분이 변하지 아니한 상태로 혼합된 것</p> <p>3. 미곡의 분쇄물 또는 가루나 제2호의 혼합물을 물만 사용하여 반죽한 것</p> <p>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허가대상미곡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미곡등수입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9.29]</p>	<p>제2조(미곡 등의 수입허가 신청) 「양곡관리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미곡등수입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09.10.1]</p> <p>제2조의2(수출 추천대상 양곡) 법 제12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양곡"이란 미곡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0.1]</p>

양 곡 관 리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양곡의 수입을 관계법령에 따라 인정하려면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협의를 거쳐 수입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4.1]</p> <p>제13조(수입양곡의 관리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입양곡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추천을 받거나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양곡을 수입하는 자 또는 수입된 그 양곡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사항은 제13조의2에 따른 수입이익금의 부과·징수 대상자에게만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1. 수입양곡의 판매가격·방법 및 시기</p>		

양 곡 관 리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2. 수입양곡의 용도제한 3. 수입양곡의 사용량 및 재고량에 관한 보고 [전문개정 2009.4.1]</p> <p>제13조의2(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추천을 받아 양곡을 수입하는 자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액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② 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양곡관리특별회계,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또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p>		<p>제2조의3(수입이익금의 부과대상 품목) 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곡(사료용 양곡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비자 시판용 미곡 2. 가공용 미곡과 맥류(麥類) 중 보리 3. 두류(豆類) 중 대두·팥·녹두·땅콩 4. 메밀·감자 5. 영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잡곡물, 귀리, 울무, 밀의 분쇄물, 가루, 압착물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 6. 영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잡곡물, 귀리, 울무, 밀의 분쇄물 또는 가루의 응집물 중 농림축산식품부

양 곡 관 리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③ 제1항에 따라 수입이익금을 낼 의무가 있는 자가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p>		<p>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 [전문개정 2009.10.1]</p> <p>제2조의4(수입이익금의 산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국내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액의 범위에서 부과·징수할 수 있는 수입이익금은 양곡의 판매수입금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산정기준 및 방법에 따라 산정된 해당 양곡의 물품대금·운임·보험료, 그 밖의 수입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과 제세공과금·보관료·운송료·판매수수료 등 국내 판매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나 양곡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 시 납입하기로 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3.23></p> <p>② 법 제13조의2에 따라 수입이익금을 낼 의무가 있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금 또는 특별</p>

양 곡 관 리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입이익금을 낼 의무가 있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국세 체납처</p>	<p>제14조의2(결손처분) 법 제13조의2 제4항제3호에서 "채납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p>1. 채납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p>	<p>회계에 수입이익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13.3.23></p> <p>1. 제2조의3제1호에 따른 미곡: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p> <p>2. 제2조의3제2호에 따른 양곡: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양곡관리특별회계</p> <p>3. 제2조의3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양곡: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p> <p>[전문개정 2009.10.1]</p> <p>제3조 삭제 <1999.8.21></p>

양 곡 관 리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2. 수입이익금 징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체납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9.4.1] <p>제13조의2(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추천을 받아 양곡을 수입하는 자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액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체납자가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로서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체납자의 행방이 불분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전문개정 2009.9.29] <p>제15조 삭제 <1999.7.29></p>	

양 곡 관 리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② 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양곡관리특별회계,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또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3.3.23></p> <p>③ 제1항에 따라 수입이익금을 낼 의무가 있는 자가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p> <p>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입이익금을 낼 의무가 있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국세 체납처</p>		

양 곡 관 리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1. 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p> <p>2. 수입이익금 징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p> <p>3. 체납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9.4.1] [시행일 : 2015.1.1] 제13조의2</p> <p>제14조 삭제 <1999.1.21></p> <p>제15조 삭제 <1999.1.21></p> <p>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출하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출하(出荷) 및 가격을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p>	<p>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매입 및 판매) 법 제1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5, 2013.3.23></p> <p>1.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p>	

양 곡 관 리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이하 "농업협동조합등"이라 한다)에게 양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매입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용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수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부 매입량 외의 일정량에 대하여 정부매입가격과 산지(產地)가격의 차액을 제1항에 따라 양곡을 매입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③ 제2항에 따른 매입가격과 산지가격의 차액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p> <p>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등에게 양곡을 매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4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예에 따라 매입약정 체결 및 선금 지급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4.1]</p>	<p>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라 한다)</p> <p>2. 미곡종합처리장시설을 갖춘 양곡가공업자</p> <p>3. 그 밖에 양곡의 출하 및 가격 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자</p> <p>[전문개정 2009.9.29]</p> <p>제17조 삭제 <1999.7.29></p> <p>제18조 삭제 <1999.7.29></p> <p>제19조 삭제 <1999.7.29></p> <p>제20조 삭제 <1999.7.29></p>	

양 곡 관 리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17조 삭제 <1999.1.21></p> <p>제18조 삭제 <1999.1.21></p> <p>제19조(양곡가공업의 신고)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p>	<p>제21조(양곡가공업의 신고) ①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가공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분업(서류를 제외한 양곡을 원료로 하여 가루를 제조하는 업을 말한다) 2. 제조업(콩과 옥수수를 원료로 하는 가공업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제조업을 말한다) 3.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정업[정미(精米)·정맥(精麥)·밀쌀·압맥(壓麥) 또는 할맥(割麥)을 하는 업을 말한다] <p>②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p>	<p>제4조(양곡가공업의 신고 등) ① 법 제19조 및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분업·제조업이나 도정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 및 서류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분업·제조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 별지 제2호서식의 양곡가공업(제분업용·제조업용) 신고서와 다음 각 목의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별지 제3호서식의 동력 및 기계 시설 내역표 나. 원료처리 및 제품생산 능력표(제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양 곡 관 리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업체명 3. 업체의 소재지 4. 업체의 가공능력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도정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 별지 제4호서식의 양곡가공업(도정업용) 신고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5조에 따른 시설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양곡가공업 신고대장에 기재하고, 제분업·제조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의 양곡가공업(제분업용·제조업용) 신고증을, 도정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는 별지 제7호서식의 양곡가공업(도정업용) 신고증을 각각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법 제19조제1항 후단 및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양곡가공업 변경신고서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

양 곡 관 리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세법」에 따른 제조면허 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가공업을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p>	<p>③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가공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제조업은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세법」에 따른 제조면허를 받은 자: 주류제조업 2.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자: 조미식품제조업(된장, 간장 및 고추장을 제조하는 업만 해당한다), 과자류제조업, 두부류제조업, 식용유지제조업, 면류제조업, 첨가물제조업, 당류제조업 및 원료식품가공업(전분류를 제조하는 업만 해당한다) 	<p>다. 다만, 영 제21조제2항제4호의 가공능력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반영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지 제3호서식의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 2. 원료처리 및 제품생산 능력표(제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양 곡 관 리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p> <p>[전문개정 2009.4.1]</p>	<p>[전문개정 2009.9.29]</p> <p>제22조 삭제 <1999.7.29></p>	<p>④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미리 별지 제9호서식의 양곡가공업 휴업·폐업 신고서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p> <p>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이나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휴업·폐업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2항의 양곡가공업 신고대장에 기재하고, 변경신고를 한 자에게는 해당 양곡가공업 신고증을 갱신하여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가공능력에 대한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p> <p>⑥ 제2항의 양곡가공업 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p>

양 곡 관 리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19조의2(양곡가공업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양곡가공업을 신고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양곡가공업을 신고한 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양곡가공업을 신고한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3.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종전의 양곡가공업을 신고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p>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1]</p> <p>제4조의2(양곡가공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①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종전의 양곡가공업을 신고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그 승계 사실을 신고하려면 별지 제10호서식의 양곡가공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위승계 사실을 확인한 후 제4조제2항의 양곡가공업 신고대장에 기재하고 해당 양곡가공업 신고증을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1]</p>

양 곡 관 리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에 따른 양도</p> <p>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p> <p>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p> <p>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종전의 양곡가공업을 신고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승계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본조신설 2009.4.1]</p>		<p>제5조(양곡가공업의 시설기준)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p> <p>[전문개정 2009.10.1]</p> <p>제6조 삭제 <1999.8.21></p> <p>제7조(제조업의 범위) 영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제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옥수수를 원료로 하여 전분 및 전분당(물엿·포도당·과당)을 제조하는 업으로서 1일(24시간) 24톤 이상의 원료처리시설을 갖춘 제조업 2. 대두를 원료로 하여 식용유지 및 탈지대두를 생산하는 업으로서 1일(24시간) 20톤 이상의 원료처리시설을 갖춘 제조업 <p>[전문개정 2009.10.1]</p>

양 곡 관 리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20조(양곡가공업자에 대한 명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가공방법 개선, 가공생산품의 품질보장 및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무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양곡가공업자에 대하여 기간과 지역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공시설의 개선 2. 가공수율(加工收率)·가공방법 및 가공생산품 규격의 제한 3. 포장규격·포장자재 및 포장방법의 	<p>제23조(양곡가공업자에 대한 명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가공업자에게 법 제20조에 따른 명령을 할 때에는 그 기간과 지역 및 내용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전문개정 2009.9.29]</p> <p>제24조 삭제 <2009.9.29></p> <p>제25조 삭제 <2009.9.29></p> <p>제26조 삭제 <2009.9.29></p>	<p>제7조의2(도정업의 범위)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정업"이란 1일(8시간 기준) 2톤 이상의 미곡 또는 1톤 이상의 맥류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도정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p> <p>[전문개정 2009.10.1]</p>

양 곡 관 리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한 4. 가공생산품에 대한 가공 표지 첨부 [전문개정 2009.4.1]</p> <p>제20조의2(생산연도·품질 등의 표시) ①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가 양곡을 판매하려면 그 양곡의 생산연도·품질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장·용기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의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4.1]</p> <p>제20조의3(거짓표시 등의 금지) ①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는 양곡의 생산연도·품질 등에 관하여 다음 각</p>	<p>제27조 삭제 <2009.9.29></p> <p>제28조 삭제 <2009.9.29></p> <p>제29조 삭제 <2009.9.29></p> <p>제30조 삭제 <2009.9.29></p>	<p>제7조의3(양곡의 표시사항 등) 법 제20조의2에 따른 양곡의 표시사항과 표시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08.2.1]</p> <p>제7조의4(거짓·과대의 표시·광고의 범위)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거짓·과대의 표시 및 거짓·과대의 광</p>

양 곡 관 리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2.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p> <p>② 제1항에 따른 거짓·과대의 표시 및 거짓·과대의 광고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4.1]</p>		<p>고의 범위는 표시의 경우에는 포장·용기에, 광고의 경우에는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인터넷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양곡의 명칭·품질 등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10.2></p> <p>1. 법 제20조의2에 따른 표시사항과 표시방법을 사실과 다르게 한 표시·광고</p> <p>2. "최고"·"가장 좋은" 또는 "특" 등의 표현("Best"·"Most"·"Special", "특"·"최고", "베스트"·"모스트"·"스페셜" 등의 표현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최고등의 표현"이라 한다)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현혹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다만 수상경력 등 객관적인 자료나 사업자의 증명에 의하여 최고등의 표현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3. 다른 사업자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p>

양 곡 관 리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21조(영업정지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양곡가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을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면 영업소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2조를 위반하여 허가 또는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허가대상미곡등을 수입한 경우 2. 제1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한 자 		<p>시·광고</p> <p>4. 수상·인증·추천 또는 보증에 대한 내용을 실제와 다르게 표현하는 표시·광고</p> <p>[전문개정 2009.10.1]</p> <p>제8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p> <p>[전문개정 2008.2.1]</p>

양 곡 관 리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 신고를 한 자</p> <p>5. 제20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p> <p>6. 제2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양곡의 생산연도·품질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p> <p>7. 제2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과대의 표시 또는 거짓·과대의 광고를 한 경우</p> <p>8.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위반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p> <p>9.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경우</p> <p>9의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거짓표시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p> <p>10.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6조제</p>		

양 곡 관 리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경우</p> <p>1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7조 각 호에 따른 거짓표시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p> <p>12. 영업을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p> <p>13. 제1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을 휴업하는 경우</p> <p>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영업을 정지 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때 따로 주무관청이 있으면 그 주무관청에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을 요청받은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4.1]</p>		

양 곡 관 리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21조의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p> <p>① 종전의 양곡가공업자에 대하여 제 21조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곡가공업자에게 승계된다.</p> <p>1. 제19조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 후 다시 양곡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p> <p>2.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p> <p>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양곡가공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또는 종전의 양곡가공업자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본조신설 2009.4.1]</p>		

양 곡 관 리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21조의3(영업소의 폐쇄조치)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제1항(변경신고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영업소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삭제 2.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3. 해당 영업소의 시설물이나 그 밖에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p>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해당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영업소를 폐쇄할 것을</p>		

양 곡 관 리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약속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에 따른 게시문 등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제1항에 따른 조치는 그 영업을 할 수 없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p> <p>⑤ 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09.4.1]</p> <p>제22조(미곡유통업의 육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유통구조개선·품질향상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p>		<p>제9조(미곡유통업의 육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미곡의 매입자금을 생산자인 농민과</p>

양 곡 관 리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생산자로부터의 미곡 매입 및 매입한 미곡의 건조·선별·보관·가공·판매 등 종합적인 미곡의 유통기능을 담당하는 미곡유통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미곡의 유통기능을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미곡종합처리장 등 미곡을 건조·보관·가공·유통·판매하는 시설의 설치 및 미곡의 매입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③ 제2항에 따른 융자 및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융자금의 이자 등 융자조건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4.1]</p> <p>제23조 삭제 <2009.4.1></p>		<p>의 계약재배를 통하여 원료비를 확보하는 자에게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0.1]</p>

양 곡 관 리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24조(업무대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의 수출·수입·매매·저장·출납·수송·가공과 양곡의 매입·약정체결·선금지급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전문개정 2009.4.1]</p> <p>제2장의2 양곡증권정리기금 <신설 2009.4.1></p> <p>제25조(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① 부채의 정리 및 양곡증권의 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p> <p>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p>1. 종전의 「양곡증권법」에 따라 기금</p>		

양 곡 관 리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으로 조성된 자금</p> <p>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p> <p>3. 제25조의4에 따라 정부의 회계로부터 받는 자금</p> <p>4. 출연금</p> <p>5.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p> <p>[본조신설 2009.4.1]</p> <p>제25조의2(부채의 상환관리) 부채의 상환방법·상환기간, 그 밖에 상환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09.4.1]</p>	<p>제30조의2(부채의 상환관리) 법 제25조의2에 따라 부채 중 원금은 상환기일에 현금으로 한꺼번에 상환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상환기간이 끝나기 전에 부채 중 원금의 전부나 일부를 상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1. 상환 예정일</p> <p>2. 상환할 부채의 내용</p> <p>3. 상환 원금 및 그 이자</p>	

양 곡 관 리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25조의3(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개정 2013.3.23></p> <p>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채의 상환 2.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p>[본조신설 2009.4.1]</p> <p>제25조의4(예산 반영) 정부는 다음 각</p>	<p>4. 그 밖에 상환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9.9.29]</p> <p>제30조의3(양곡증권정리기금계정의 설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른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9.9.29]</p> <p>제30조의4(기금의 용도) 법 제25조의3 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차입금의 이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9.9.29]</p>	

양 곡 관 리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호의 비용 및 재원을 회계연도마다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p> <p>1. 제25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비용 2. 부채의 규모 축소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 [본조신설 2009.4.1]</p> <p>제25조의5(자금의 일시차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상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정부의 회계, 다른 기금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 기금 운용에 필요한 자금을 일시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4.1]</p> <p>제25조의6(기금의 회계기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p>		

양 곡 관 리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기금채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 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수입징수관, 기 금채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 무원은 기금의 출납을 담당하는 관서 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임면 한다. [본조신설 2009.4.1]</p> <p>제3장 보 칙 <개정 2009.4.1></p> <p>제26조(융자 및 보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양곡의 수급조절, 식생활의 개 선, 양곡의 가공·보관·유통개선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업을 행하는 자에 대 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4.1]</p>	<p>제31조(융자 및 보조 대상사업) ① 법 제2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 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금을 지급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 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 식생활의 개선 및 양곡 수급 의 안정을 위하여 양곡을 가공·판 매하는 사업 중 원료 양곡의 가격이 상승하여 결손이 생기는 사업 2. 정부가 국민 식생활을 개선하기 위 하여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사업 	

양 곡 관 리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27조(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수급 관리 또는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 등의 관계 서류, 시설 및 양</p>	<p>3. 양곡 시장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업 4. 양곡의 유통개선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5. 양곡관리 방법 및 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 6. 정부관리양곡의 보관이나 양곡의 조제를 위한 설비 및 장비의 개선에 관한 사업</p> <p>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이자 등 융자 조건에 관하여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29]</p> <p>제32조(감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양곡의 소유자, 양곡매매업자, 양곡가공업자와 양곡을 수출·수입·보관 또는 수송하는 자에게 보고 접수기관, 보고기한 및 보고 대상자의 범위를 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양 곡 관 리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곡 소유량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양곡의 소유자 2. 양곡매매업자 3. 양곡가공업자 4. 양곡을 수출·수입·보관 또는 수송하는 자 <p>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일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의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사하여야 하거나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 달성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1]</p> <p>제27조의2(명예감시원) ① 농림축산식</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양곡의 소유자: 양곡 소유량 2. 양곡매매업자: 양곡의 매매가격 및 양곡의 종류별 재고량 3. 양곡가공업자: 원료 양곡의 구매, 제품의 생산·포장·판매·재고량 4. 양곡의 수출입업자: 수출입 국가별 수출입 물량 및 그 가격과 수입된 양곡의 용도 5. 양곡의 보관업자: 보관 양곡의 품질 상태, 재고량, 입고량, 출고량 및 사고(事故)량 6. 양곡의 수송업자: 수송 양곡의 출발지·도착지별 수송량, 화주명(貨主名), 보관량, 사고량, 수송 수단 및 수송 능력 <p>[전문개정 2009.9.29]</p>	<p>제10조(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27조 제3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09.10.1]</p> <p>제10조의2(명예감시원의 자격·위촉방</p>

양 곡 관 리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품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정한 양곡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지도·홍보 및 계몽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명예감시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③ 제1항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자격·위촉방법·업무범위와 수당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p> <p>[전문개정 2009.4.1]</p>		<p>법 등) ① 법 제27조의2제3항 및 영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명예감시원 위촉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명예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의 회원이나 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2. 양곡의 유통에 관심이 있고 명예감시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 <p>② 명예감시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20,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양곡의 용도 외의 사용·처분에 대한 감시·신고 2. 법 제20조의2에 따른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관한 지도·홍보 및 위반사항에 대한 감시·신고

양 곡 관 리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3. 법 제20조의3에 따른 거짓·과대의 표시·광고에 대한 감시·신고</p> <p>4. 삭제 <2013.3.23></p> <p>5. 그 밖에 양곡의 유통질서 확립과 관련하여 명예감시원 위촉자가 부여하는 임무</p> <p>③ 명예감시원 위촉자는 명예감시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④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p> <p>[전문개정 2009.10.1]</p> <p>제11조 삭제 <2008.12.31></p> <p>제12조(보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양곡가공업 중 영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분업 및 제조업의 신고 현황을 별지 제13호서식에</p>

양 곡 관 리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27조의3(포상금 지급)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9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이 지정한 용도 외의 용도로 양곡을 사용·처분한 자 2.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생산연도·품질 등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자 3. 제2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과대의 표시 또는 거짓·과대의 광고를 한 자 <p>[전문개정 2009.4.1]</p> <p>제28조(청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p>	<p>제32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27조의3에 따른 포상금은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1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p> <p>[전문개정 2009.9.29]</p> <p>제33조 삭제 <1997.12.31></p>	<p>따라 때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09.10.1]</p>

양 곡 관 리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또는 구청장은 제21조에 따라 양곡가공업자에게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려 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1]</p> <p>제2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②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 법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농업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3.23> [전문개정 2009.4.1]</p>	<p>제34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중 국가기관용·가공용·공공용 양곡의 판매 2. 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양곡의 소유자, 양곡매매업자, 양곡가공업자와 양곡을 수출·수입·보관 또는 수송하는 자에 대한 감독과 조사 공무원에 대한 증표 발행(제2항제1호에 따른 감독과 조사 공무원에 대한 증표 발행은 제외한다) 3. 법 제3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양 곡 관 리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양곡의 소유자, 양곡 매매업자와 양곡가공업자에 대한 감독(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지정된 용도 외의 사용·처분에 관한 조사와 법 제20조의2 및 법 제20조의3에 따른 표시·광고에 관한 조사에 한정한다)과 조사 공무원에 대한 증표 발행 2. 법 제27조의2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운영 3. 법 제27조의3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4. 법 제36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p>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한 경우에</p>	

양 곡 관 리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벌 칙 <개정 2009.4.1></p> <p>제30조 삭제 <1999.1.21></p> <p>제3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수입한 양곡을 시가(時價)로 환산한 가액(價額)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p>	<p>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p> <p>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농업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25,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1조에 따른 양곡 중 미곡의 수입 2. 제1호에 따라 수입한 미곡의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판매용으로서의 판매 <p>[전문개정 2009.9.29]</p>	

양 곡 관 리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금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대상미곡등을 수입한 자 2. 제12조제2항에 따른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양곡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p>② 제1항의 경우에는 수출하거나 수입한 양곡을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을 추징한다. [전문개정 2009.4.1]</p> <p>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9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용도 외로 양곡을 사용·처분한 자 2. 제1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명 		

양 곡 관 리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령을 위반하여 수입양곡을 사용·처 분한 자 [전문개정 2009.4.1]</p> <p>제33조 삭제 <2009.4.1></p> <p>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3조제3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곡가공업을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 고 양곡가공업을 한 자 4. 제2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과대의 표시 또는 거짓·과대의 광고 를 한 자 5. 제21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 을 위반하고 영업을 한 자 6. 제21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 		

양 곡 관 리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령을 받고도 영업을 한 자</p> <p>7. 제21조의3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부착한 봉인·게시문 등을 함부로 제거하거나 손상한 자</p> <p>8.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위반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p> <p>[전문개정 2009.4.1]</p> <p>제3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제32조 또는 제3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양 곡 관 리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전문개정 2009.4.1]</p> <p>제3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곡가공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고 양곡가공업을 한 자 3.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자 4.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양곡가공업의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곡가공업을 한 자 5. 제20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2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p>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p>	<p>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p> <p>[전문개정 2009.9.29]</p>	

양 곡 관 리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4.1]</p> <p>부 칙 <법률 제4707호, 1994.1.5></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및 이와 관련되는 양곡가공업에 관한 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폐지법률) ① 법률 제2237호 양곡관리기금법은 이를 폐지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양곡관리기금의 부채 및 자산의 정리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p> <p>제3조(양곡매매업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양곡매매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양곡매매업의 신고를 한</p>	<p>부 칙 <대통령령 제14224호, 1994.4.30></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및 이와 관련되는 양곡가공업에 관한 규정은 1995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대통령령 제5373호 양곡관리기금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미강착유장려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양곡관리법 제16조 및 동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도정업자"를 "양곡관리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도정업자"로 한다. ② 농수산물유통 및가격안정에관한법</p>	<p>부 칙 <농림수산부령 제1141호, 1994.5.25></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이와 관련되는 양곡가공업에 관한 규정은 1995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농림수산부령 제1165호, 1994.12.31></p> <p>이 규칙은 세계무역기구(WTO)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의 효력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농림수산부령 제1220호, 1995.12.30></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p>

양 곡 관 리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것으로 본다.</p> <p>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양곡가공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양곡가공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산물가격유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p> <p>② 농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3조 제1항중 "양곡관리법 제15조의3 및 제16조"를 "양곡관리법 제18조 및 제19조"로 한다.</p> <p>③ 농촌근대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2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p> <p>④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양곡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p>	<p>를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8조제2항제4호중 "양곡관리법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양곡도매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양곡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양곡도매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p> <p>③ 식품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7조제1호 커목(1)의 단서중 "양곡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분업허가를 얻은 자가"를 "양곡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제분업의 등록을 한 자가"로 하고, 동목(2)의 (가)중 "양곡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을 "양곡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으로 한다.</p> <p>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양곡관리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p>	<p>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농림부령 제1246호, 1996.12.28> (농지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농림부령 제1251호, 1997.2.6></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농림부령 제1331호, 1999.5.24> (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법령의 개정) ① 생략</p> <p>② 양곡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중 "국립농산물검사소지소장"을 "국립농산물품</p>

양 곡 관 리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한 것으로 본다.</p> <p>부 칙 <법률 제4842호, 1994.12.31></p> <p>이 법은 세계무역기구(WTO)설립을위한 마라케쉬협정의 효력이 국내에서 발생 되는 날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법률 제5153호, 1996.8.8> (정부조직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 이 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 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㉗ 생략 ㉘ 양곡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 제9조제1항 본문·제2항 내지 제6항,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본문, 제13조의2제1항, 제14조</p>	<p>또는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부 칙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12.23>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4조 생략</p>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㉞ 생략 ㉟ 양곡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1조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p> <p>㊱ 내지 ㊳ 생략</p> <p>부 칙 <대통령령 제14446호, 1994.12.23>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생략</p>	<p>질관리원지원장"으로 한다.</p> <p>제10조제2항중 "국립농산물검사소장"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p> <p>별표 2중 소규모도정업 비고란 제3호 및 대규모도정업 비고란 제6호중의 "국립농산물검사소장"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p> <p>부 칙 <농림부령 제1341호, 1999.8.21></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농림부령 제1366호, 2000.6.23> (농수산물유통 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양곡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의4제2항중 "농수산물유통 및가</p>

양 곡 관 리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16조, 제17조 본문, 제20조제1항 본문·제2항, 제22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제1항, 제29조, 제33조제1호, 제34조제2호 및 제36조제2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 제1항중 "농림수산부"를 "농림부"로 한다.</p> <p>제12조 제2항, 제13조의2제1항·제2항, 제18조제2항제2호, 제19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3항 및 제25조제1항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p> <p>㉑ 내지 ㉒ 생략</p> <p>제4조 생략</p> <p>부 칙 <법률 제5280호, 1997.1.13></p> <p>이 법은 199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법률 제5453호, 1997.12.13>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p> <p>⑥ 양곡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1조제1호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p> <p>⑦ 내지 ⑩ 생략</p> <p>부 칙 <대통령령 제14489호, 1994.12.31></p> <p>이 영은 세계무역기구(WTO)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의 효력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대통령령 제14886호, 1995.12.30></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대통령령 제15135호, 1996.8.8>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격안정에관한법률 제44조"를 "농수산물유통 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4조"로 한다.</p> <p>③ 생략</p> <p>부 칙 <농림부령 제1423호, 2002.7.27></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농림부령 제1498호, 2005.7.1></p> <p>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농림부령 제1518호, 2006.3.10></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농림부령 제1579호, 2008.2.1></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양곡가공업 시설기준의 변경에</p>

양 곡 관 리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정비에관한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p> <p>부 칙 <법률 제5665호, 1999.1.21></p> <p>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 (양곡가공업 등록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곡가공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양곡가공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p> <p>부 칙 <법률 제6305호, 2000.12.29> (관세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p>	<p>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㉓ 생략 ㉔ 양곡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조,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2항 내지 제4항, 제8조, 제9조제1항·제3항, 제10조제6호, 제11조제1항제6호·제2항, 제12조, 제13조,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3항제4호, 제16조제3호, 제17조, 제21조제1호, 제23조, 제24조제3호, 제25조제2항, 제27조제1항·제4항, 제32조, 제34조 및 제35조제2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중 "농림수산부"을 "농림부"로 한다. 제21조 본문·제1호, 제22조 및 제35조제4항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㉕ 내지 ㉗ 생략 제8조 생략</p>	<p>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양곡가공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양곡가공업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양곡가공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p> <p>제3조(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p> <p>부 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호, 2008.3.3>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p>

양 곡 관 리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 ⑪ 양곡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관세법 제16조"를 "관세법 제71조"로 한다. ⑫ 내지 ⑰ 생략 제8조 생략</p> <p>부 칙 <법률 제6594호, 2002.1.14></p> <p>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양곡가공업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양곡가공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는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양곡가공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p> <p>부 칙 <법률 제6836호, 2002.12.30> (국고금관리법)</p>	<p>부 칙 <대통령령 제15266호, 1997.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대통령령 제15598호, 1997.12.31>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대통령령 제16491호, 1999.7.29></p> <p>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폐지한다. 1. 농업정보통계심의위원회규정 2. 가축방역대책위원회규정 ③ (다른 법령의 개정) 식품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양곡관리법에 의한 양곡가공업중 도정업 및 제분업을 하는 경우</p>	<p>⑳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조의5, 제2조의2, 제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의2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조의2제5호, 제1조의5, 제2조의3제4호, 제2조의4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및 제10조의2제2항제1호·제3항·제4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2 제2호나항 및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2호서식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㉑부터 ㉓까지 생략</p>

양 곡 관 리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5조 생략</p> <p>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p> <p>⑪ 양곡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제2항중 "예산회계법 제68조"를 "국고금관리법 제26조"로 한다.</p> <p>⑫ 내지 ⑳ 생략</p> <p>제7조 생략</p> <p>부 칙 <법률 제7275호, 2004.12.31> (농수산물유통 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p> <p>② 양곡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3조의2제2항중 "농수산물유통 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을 "농수산물유통 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4</p>	<p>부 칙 <대통령령 제16646호, 1999.12.28>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p> <p>⑦ 양곡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제1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p> <p>2.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p> <p>3.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p> <p>⑧ 및 ⑨ 생략</p> <p>제5조 생략</p> <p>부 칙 <대통령령 제17325호, 2001.7.30></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7호, 2008.11.18>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 등을 위한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47호, 2008.12.31></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수입이익금의 부과대상품목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3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p> <p>제3조(수입이익금의 산정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양곡의 수입자로 결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p> <p>부 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55호, 2008.12.31>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p>

양 곡 관 리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한다.</p> <p>③ 생략</p> <p>제5조 생략</p> <p>부 칙 <법률 제7432호, 2005.3.31></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정부관리양곡을 매입하는 자부터 적용한다.</p> <p>제3조(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것으로 본다.</p> <p>제4조(정부관리양곡의 교환 또는 대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정부관리양곡을 교환 또는 대여받아 이를 인도 또는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p>	<p>부 칙 <대통령령 제17673호, 2002.7.13></p> <p>이 영은 200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대통령령 제18925호, 2005.6.30></p> <p>①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② (다른 법령의 폐지) 비축양곡관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p> <p>부 칙 <대통령령 제20506호, 2007.12.31> (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대통령령 제20576호, 2008.1.31></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08</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p> <p>⑩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4 제1호가목4)가) 및 나목1)·2)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p> <p>⑪부터 ⑰까지 생략</p> <p>부 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83호, 2009.10.1></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양곡증권정리기금법시행규칙은 폐지한다.</p> <p>부 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91호, 2011.4.13></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1호</p>

양 곡 관 리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여는 종전의 제8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포장양곡에 대한 규격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 2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양곡에 표시된 규격표시는 제 20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표시된 것으로 본다.</p> <p>제6조(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양곡유통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양곡정책심의위원회로 본다.</p> <p>부 칙 <법률 제7433호, 2005.3.31>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중 "양곡관리특별회계"를 "양곡관리특별회계,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p>	<p>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부 칙 <대통령령 제20677호, 2008.2.29>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⑥까지 생략 ③⑦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3, 제3조제2항제3호, 제5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 본문, 제14조제2항, 제16조제3호, 제21조제1항제2</p>	<p>아목의 개정 규정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포장양곡에 표시된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품위 및 품위의 규격에 대한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 2012년 4월 30일까지 2. 단백질 함량의 규격에 대한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 2013년 4월 30일까지 <p>부 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96호, 2012.7.20>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p>

양 곡 관 리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의한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으로 한다.</p> <p>② 생략</p> <p>제8조 생략</p> <p>부 칙 <법률 제8105호, 2006.12.28></p> <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법률 제8595호, 2007.8.3></p> <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 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p>	<p>호, 제23조, 제24조제3호, 제25조제2항, 제27조제1항·제4항, 제32조 각호 외의 부분, 제32조의2제2항, 제34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5조제2항 전단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2, 제21조제1항제2호·제2항·제4항 및 제35조제4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p> <p>㉞부터 ㉟까지 생략</p> <p>부 칙 <대통령령 제21758호, 2009.9.29></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3 및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양곡증권정리기금법시행령은 폐지한다.</p> <p>제3조(경과조치) 2009년 11월 27일까지는 제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p> <p>④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0조의2제2항제4호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양곡의 원산지 표시 또는 같은 법 제16조제2항"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6조"로 한다.</p> <p>⑤ 및 ⑥ 생략</p> <p>제6조 생략</p> <p>부 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26호, 2012.12.11>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p>

양 곡 관 리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㉑부터 ㉓까지 생략</p> <p>㉔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3조제1항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p> <p>제3조제1항·제2항제4호·제3항·제4항, 제5조제1항, 제9조제4항,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제2호, 제10조제1항·제2항, 제13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의2제1항·제2항, 제2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제1호 및 제32조제1호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p> <p>제4조제1항·제2항, 제5조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제2항·제3항, 제11조, 제12조제2항·제3항 전단 및 후단·제4항, 제13조 각</p>	<p>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 본다.</p> <p>부 칙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3.15>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㉑부터 ㉓까지 생략</p> <p>㉔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1조제1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p> <p>㉕부터 ㉗까지 생략</p> <p>부 칙 <대통령령 제23535호, 2012.1.2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p> <p>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㉑부터 ㉓까지 생략</p> <p>㉔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의2, 제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p> <p>제1조의2제5호, 제2조의3제5호·제6호, 제2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10조의2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별표 1 제4호의 매입 자격기준란, 같은 표 제5호의 매입 자격기준란, 별표 2 제2호 나목의 위반행위란, 별표 4 제1호라목 1), 같은 호 사목1), 같은 호 아목1) 및</p>

양 곡 관 리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의2제1항, 제16조제1항 전단·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제2항, 제24조, 제26조, 제27조제1항, 제29조 및 제36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p> <p>제5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의2제1항·제2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2조제3항 전단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p> <p>제9조제5항,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제5호, 제20조의2제1항·제2항, 제20조의3제2항, 제21조제3항 및 제27조의2제3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p> <p>⑮부터 ⑳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부 칙 <법률 제9280호, 2008.12.31></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p> <p>⑯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라 한다)</p> <p>제3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로 한다.</p> <p>⑰부터 ㉘까지 생략</p> <p>제3조 생략</p> <p>부 칙 <대통령령 제24455호,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p>	<p>별지 제1호서식 앞쪽·뒤쪽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p> <p>제10조의2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p> <p>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p> <p>㉙부터 ㉛까지 생략</p> <p>부 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4호, 2013.10.2></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포장양곡에 표시된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간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p>

양 곡 관 리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정부기업예산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p> <p>⑥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3조의2제2항 중 "기업예산회계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p> <p>⑦부터 ⑨까지 생략</p> <p>제6조 생략</p> <p>부 칙 <법률 제9622호, 2009.4.1></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5조·제20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⑤1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의3, 제3조제2항제3호, 제5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 본문, 제13조의2 후단, 제14조제2항, 제16조제3호, 제21조제1항제2호, 제23조, 제3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0조의3,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의2제2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제1호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p> <p>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p> <p>⑤2부터 ⑦6까지 생략</p> <p>부 칙 <대통령령 제24752호, 2013.9.17></p> <p>이 영은 2013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p>	

양 곡 관 리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양곡증권정리기금법은 폐지한다.</p> <p>제3조(양곡가공업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변경하는 부분부터 적용한다.</p> <p>제4조(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하는 휴업 또는 폐업부터 적용한다.</p> <p>제5조(양곡가공업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승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6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하는 행정제재처분부터 적용한다.</p> <p>제7조(양곡가공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양곡가공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9조에 따라 양곡가공업의 신고를</p>		

양 곡 관 리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한 것으로 본다.</p> <p>제8조(양곡증권정리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양곡증권정리기금법」에 따라 설치된 양곡증권정리기금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양곡증권정리기금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양곡증권정리기금법」에 따라 운용·관리한 기금은 이 법에 따라 운용·관리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양곡증권정리기금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회계기관은 이 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p> <p>제9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4. 「양곡관리법」</p>		

양 곡 관 리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부 칙 <법률 제10885호, 2011.7.2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p> <p>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p> <p>⑦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9조의2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4. 해당 양곡에 대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 의무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p>4의2. 해당 양곡에 대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유</p>		

양 곡 관 리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의무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p>제21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2항"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위표시 등"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7조 각 호에 따른 거짓표시 등"으로 한다.</p> <p>9.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경우</p> <p>9의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거짓표시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p> <p>⑧부터 ⑬까지 생략</p> <p>제20조 생략</p>		

양 곡 관 리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부 칙 <법률 제10932호, 2011.7.25>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p> <p>⑤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9조제2항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로 한다.</p> <p>⑥ 생략</p> <p>제5조 생략</p> <p>부 칙 <법률 제11230호, 2012.1.26>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양 곡 관 리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p> <p>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3조의2제2항 중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을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으로 한다.</p> <p>② 생략</p> <p>제15조 생략</p> <p>부 칙 <법률 제11641호, 2013.3.22></p> <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별표] <개정 2013.3.2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1. 일반기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을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이거나 2배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다만, 줄이는 경우 과태료 최저금액은 5만원으로 하고, 늘리는 경우 과태료 금액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금액
가.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양곡가공업을 한 경우	법 제36조제1항제1호	100만원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고 양곡가공업을 한 경우	법 제36조제1항제2호	100만원
다. 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	법 제36조제1항제3호	50만원
라.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양곡가공업의 승계 신고를 하지 않고 양곡가공업을 한 경우	법 제36조제1항제4호	100만원
마. 법 제20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36조제1항제5호	50만원
바. 법 제2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36조제1항제6호	5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3. 제2호바목의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가. 생산연도, 품질 등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 1) 과태료 부과금액은 표시를 하지 않은 물량(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고 있는 물량을 포함한다)에 적발 당일 해당 업소의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2) 1)의 해당 업소 판매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인근 2개 업소의 동일 품목 판매가격의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평균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농산물의 매입가격에 3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3)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저 단위는 5만원으로 하고, 5만원 이상은 반올림하여 만원 단위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생산연도, 품질 등의 표시사항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 1) 가목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이 경우에도 최저금액은 5만원으로 한다.
- 2)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저 단위는 5만원으로 하고, 5만원 이상은 반올림하여 만원 단위로 부과한다.

4. 제2호바목의 과태료 부과방법

가. 양곡매매업소에서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여 판매한 행위로 적발된 경우에는 양곡매매업자 및 양곡가공업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양곡가공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곡매매업자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한다.

나. 양곡가공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중이거나 운반 중에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행위로 적발된 경우에는 양곡가공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별표 1] <개정 2013.10.2>

정부관리양곡을 용도에 따라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 (제1조의3 관련)

용 도	매입 자격기준	비고
1. 국가기관용	○ 국방부, 경찰청, 교도소 등 급식을 국가예산으로 운영하는 기관	
2. 가공용, 시험연구용, 가공식품 개발용	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한 자 나.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한 자 다. 「주세법」 제6조에 따라 주류의 제조에 관한 면허를 받은 자 라. 가공식품을 연구 또는 개발하려는 연구기관 및 업체	
3. 공공용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개인·단체·기관(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정부로부터 급식비 지원을 받고 있는 개인·단체·기관은 제외한다.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으로서 급식시설을 갖춘 곳(지역교육청 교육장 또는 시·도 교육감이 확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일반판매용	○ 도정 등 가공능력, 자본금, 매출액, 판매점포, 쌀 소비능력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5. 구호용, 재고정리 및 긴급처분용, 사료용, 수입 대체용, 수출용	○ 필요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자격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2] <개정 2013.3.23>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기준(제1조의4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고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해당 양곡매매·판매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 행위	근거법령	매입자격 제한기간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경우	법 제9조의2 제1호	6개월	1년	-
나.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 한 용도 외의 용도로 양곡을 사용·처분한 경우	법 제9조의2 제2호	1년	-	-
다. 해당 양곡에 대하여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생산연도·품질 등의 표시를 위반하거나 법 제2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과대의 표시 또는 거짓·과대의 광고를 한 경우	법 제9조의2 제3호	3개월	6개월	1년
라. 해당 양곡에 대하여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의무, 같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의무 또는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의무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9조의2 제4호	3개월	6개월	1년
마.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9조의2 제5호	3개월	6개월	1년
바. 양곡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법 제9조의2 제5호	3개월	6개월	1년

[별표 3] <개정 2009.10.1>

양곡가공업의 시설기준(제5조 관련)

1. 제분업 및 제조업

구 분		시설기준
제분업	밀가루	가. 고르는 장치: 원료 고르는 장치 1벌 이상 나. 분쇄장치: 분쇄능력 시간당 0.9톤 이상 다. 체장치: 체치는 능력 시간당 0.9톤 이상 라. 시험장치: 자체 품질관리에 필요한 회분·단백질 및 사분의 분석시설
	옥수수나 그 밖의 곡분	가. 고르는 장치: 원료 고르는 장치 1벌 이상 나. 분쇄장치: 분쇄능력 시간당 0.9톤 이상 다. 체장치: 체치는 능력 시간당 0.9톤 이상
제조업	옥수수전분 및 옥수수전분당(물엿·포도당·과당) 제조업, 식용유지 및 탈지대두 제조업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시설

2. 도정업

구 분	시설기준
미곡도정	미곡을 1일(8시간 기준) 2톤 이상 생산할 능력이 있는 동력장치 및 도정기
맥류도정	맥류를 1일(8시간 기준) 1톤 이상 생산할 능력이 있는 동력장치 및 도정기

비고

- 가. 도정업은 미곡도정 또는 맥류도정으로 구분하여 신고할 수 있다.
- 나. “미곡도정”이란 벼를 현미 또는 쌀로 도정하거나, 현미를 쌀로 도정하는 것을 말한다.
- 다. “맥류도정”이란 보리 또는 밀을 정맥·밀쌀·압맥 또는 할맥으로 도정하는 것을 말한다.
- 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역별 사정을 고려하여 위 시설기준 이상으로 하는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4] <개정 2013.10.2>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제7조의3 관련)

1. 표시사항

가. 의무표시사항

1) 품목

- 가) 양곡의 품목 또는 품명을 표시
- 나) 쌀 또는 현미에 다른 양곡이나 양곡가공품을 혼합한 경우에는 혼합된 모든 품목 또는 품명을 표시하되, 혼합된 품목 또는 품명이 다섯 가지를 넘으면 혼합비율 또는 중량이 많이 혼합된 순으로 다섯 가지 이상을 표시
- 다) 여러 가지 양곡 또는 양곡가공품을 혼합한 경우 품목별로 표시된 양과 실제 양과의 과부족 허용오차는 10퍼센트 이하로 함

2) 생산연도(쌀과 현미의 경우만 해당함)

- 가) 원료 양곡의 수확연도를 표시
- 나) 수확연도가 다른 원료 양곡을 혼합한 경우에는 그 수확연도별로 혼합비율을 표시

3) 중량

실제 중량을 표시

4) 품종(쌀과 현미의 경우에만 해당함)

- 가) 해당 품종명을 표시하되, 품종명 표시가 가능한 다른 품종과의 혼입을 허용할 수 있는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
- 나) 품종명을 모르는 경우에는 "혼합"으로 표시
- 다) 품종을 혼합한 경우에는 품종별 혼합비율을 표시하거나 "혼합"으로 표시

5) 도정 연월일(쌀과 현미의 경우만 해당함)

- 가) 벼를 현미로 도정한 연월일을 표시하거나 벼 또는 현미를 쌀로 도정한 연월일을 표시
- 나) 도정일이 다른 쌀·현미를 혼합한 경우에는 먼저 도정한 연월일을 표시

6)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 상호(또는 성명) 및 전화번호[외국산의 경우에는 수입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 상호(또는 성명) 및 전화번호]

7) 등급 표시(흑미·향미를 제외한 맵쌀만 해당함)

- 가) 해당되는 등급에 "○" 표시하되 등급의 구분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나) 등급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검사"로 표시
- 다) 가공업체의 원료로 판매하는 가공용 쌀은 등급표시 대신에 "가공용"이라고 표시할 수 있음

- 라) 수입쌀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등급으로 표시 할 수 있음
- 나. 임의표시사항
 - 쌀의 경우 단백질함량을 표시할 수 있되, 함량의 구분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2. 표시방법

가.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1) 위치

- 가) 포장 앞면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포장양곡 표시사항의 일괄표시 예시에 따라 표시하되,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 상호(또는 성명) 및 전화번호[외국산의 경우에는 수입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 상호(또는 성명) 및 전화번호]는 포장 뒷면에 따로 표시 할 수 있음
- 나) 5킬로그램 이하의 포장양곡은 앞면에 표시하기가 어려울 경우 표시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뒷면에 표시할 수 있음
- 다) 품목(또는 품명) 및 가변성이 있는 도정일 등은 일괄표시가 있는 면에 따로 표시할 수 있음.

<포장양곡 표시사항 일괄표시 (예시)>

품 종	추청	중 량	20kg
등 급	특, 상, 보통	단백질함량(임의표시)	수, 우, 미
		단백질함량이 낮을수록 밥맛이 우수	
생산연도	2012	도정 연월일	2013. 1. 31.
생산자 (가공자 또는 판매원)	주소	00도 00군 00로 00	
	상호명(성명)	00미곡종합처리장	
	전화번호	031)000-0000	

- * 등급 표시는 해당 등급에 ○ 표시하되, 표시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는 "등외"로,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는 "미검사"로 표시
- * 단백질함량은 임의표시사항이며, 해당 함량에 ○ 표시
- * 원산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시

2) 글자크기

가) 의무표시사항

10킬로그램 이상의 포장양곡은 16포인트(24급) 이상으로 하고, 10킬로그램 미만의 포장양곡은 12포인트(18급) 이상으로 함. 다만, 1킬로그램 이하의 포장양곡은 8포인트(12급) 이상으로 표시할 수 있음

나) 임의표시사항

글자크기 제한 없음

- 3) 색도: 포장재의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으로 표시
- 4) 포장재에 직접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스티커·고무인 등으로 표시할 수 있음

나.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품목·중량·생산자·주소·상호 또는 전화번호를 생략할 수 있음)

- 1) 표시방법: 용기 표면, 뚜껑 등에 표시
- 2) 용기 표시: 가로 10cm × 세로 5cm 이상
- 3) 뚜껑 표시: 가로 10cm × 세로 5cm × 높이 5cm 이상

다. 표시 문자

- 1) 한글 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
- 2) 영문 또는 한문 등으로 표시하려면 한글 표시 다음에 ()로 표시

양곡가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처분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고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양곡가공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회	2회	3회 이상
가.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허가 또는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허가대상미곡등을 수입한 경우 1) 고의가 있는 경우 2) 과실인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1호	영업정지 6개월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6개월
나. 법 제1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 고의가 있는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2호	영업정지 6개월	영업소 폐쇄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회	2회	3회 이상
2) 과실인 경우		경고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9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3호	영업소 폐쇄		
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9조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 신고를 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4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마. 법 제20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5호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바. 법 제2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양곡의 생산 연도·품질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6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사. 법 제2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과대의 표시 또는 거짓·과대의 광고를 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7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아.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위반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8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자.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9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차.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10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카.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위표시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11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타. 영업을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12호	영업소 폐쇄		
파.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을 휴업하는 경우	법 제21조 제1항제13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별표 6] [별표 6은 별표 2로 이동 <2008.2.1>]

[별표 7] [별표 4]로 이동 <2008.2.1>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3.23>

미국등수입허가 신청서

※ 뒤쪽의 안내문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	-----	------	-----

신청인	성명(업체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수입 물품의 명세

HS번호	품명	규격	단위 및 수량	단가
금액	① 용도	② 원산지	선적항	도착항
③ 수입기한				
④ 주거래 외국환은행				

「양곡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미국 등의 수입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	-----	-----	-----

210mm×297mm [백상지 80g/㎡]

미국 등 수입허가 신청안내

제출하는 곳	농림축산식품부	처리기관 (담당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	---------	----------------	--------------------

근거법령

- 「양곡관리법」 제12조(미국 등의 수입허가 등)
 - ①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이하 "양허세율"이라 한다)로 미국이나 이를 원료로 한 분쇄물·가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이하 "허가대상미국등"이라 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대상미국등의 용도 등을 밝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14조(수입의 허가)
 -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허가대상미국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미국등수입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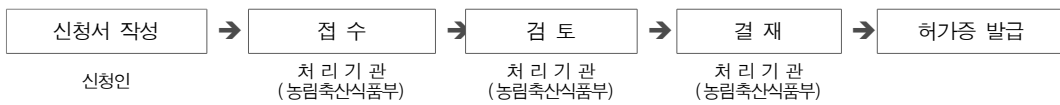
유의사항

- 「양곡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미국 등을 수입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입한 미국 등을 시가(時價)로 환산한 가액(價額)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併科)하게 됩니다.(「양곡관리법」 제31조제1항제1호)

작성방법

1. ① 용도는 MMA 입찰 샘플용 등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 ② 원산지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명을 적습니다.
3. ③ 수입기한은 연, 월까지 적습니다.
4. ④ 주거래 외국환은행은 수입승인을 받으려는 외국환은행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3.23>

양곡가공업 제분업용 **신고서**
 제조업용

※ 뒤쪽의 안내문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4일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설치공장	업체명				
	소재지	① 업체 구분			
	② 업 종	부지면적 m ²			
③가공능력 (M/T) (1일 24시간기준)		제 분	제 조		
	제 품				
	원 료				
건 물		④건물구조	동 수	면적(m ²)	보관능력(M/T)
	공 장				
	창 고				

「양곡관리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1부. 2. 원료처리 및 제품생산능력표(제조업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m²]

근거 법령

- 「양곡관리법」 제19조 (양곡가공업의 신고)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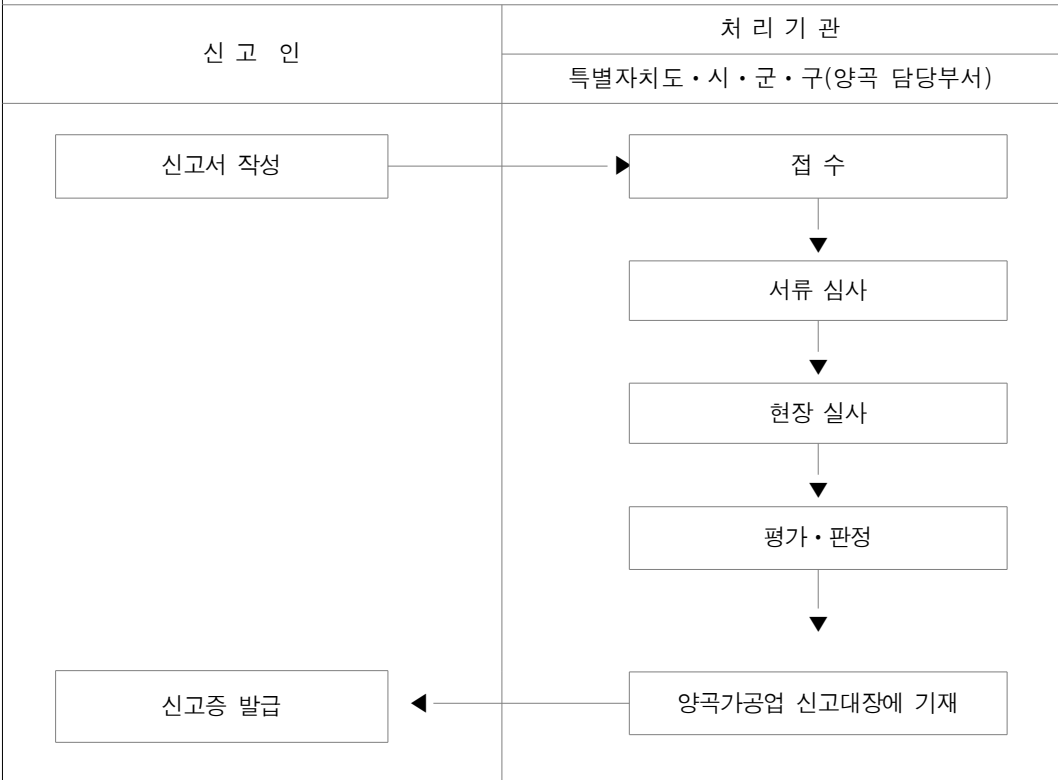
- 「양곡관리법」 제19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곡가공업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양곡관리법」 제34조 제2호)

작성방법

1. ①란은 업체의 규모나 사업의 내용에 따라 제분업, 제조업 등으로 적습니다.
2. ②란은 신고하려는 업종(제분·제조)을 적습니다.
3. ③란은 1일 24시간을 기준으로 적으며, 제분업 중 밀가루 제분업은 제품생산능력을, 제분업 중 옥분 및 옥전분 제분업과 제조업은 원료처리 능력을 적습니다.
4. ④란은 공장 또는 창고의 건물구조(철골조스레트, 시멘트 바닥 등)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업체명: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																
시설 구분 업체 구분		동력시설						기계시설								
		진동기		발동기		계		업종 구분	기종	형식	규격	대수	기종	형식	규격	대수
		형식	마력(대)	형식	마력(대)	마력	대									

※ 작성방법

1. 업체 구분은 제조업 및 제조업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업종 구분은 밀가루 및 옥분 및 그 밖의 곡분 제분, 옥수수진분 및 진분당 제조, 식용유지 및 탈지대두 제조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97mm×210mm
(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3.3.23>

양곡가공업(도정업용)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업 체	업체명					
	소재지					
	영업의 종류					
가공능력 (M/T) (1일 8시간기준)	구 분	정 미	정 맥	밀 쌀	압 맥	할 맥
	가공능력					

「양곡관리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1부	수수료 없음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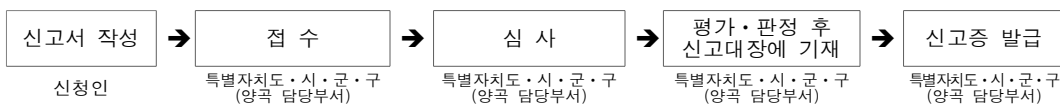
근거법령

- 「양곡관리법」 제19조 (양곡가공업의 신고)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유의사항

- 「양곡관리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곡가공업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양곡관리법」 제34조제2호)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 80g/m²]

제 호

양곡가공업(제분업용 제조업용) **신고증**

업 체 명:

대표자성명:

소 재 지:

업 체 구 분:

신고업종:

가공능력(1일 24시간 기준, M/T):

「양곡관리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직 인

제 호

양곡가공업(도정업용) 신고증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상 호:

영업장 소재지:

영업의 종류:

구 분	정 미	정 맥	밀 쌀	압 맥	할 맥
가공능력(M/T) (1일 8시간 기준)					

「양곡관리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 인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2.12.11>

양곡가공업 변경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가공능력변경의 경우 제분·제조업은 14일,도정업은 7일)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업 종								
변경 사항	영업자성명 (법인은 대표자성명)		변경 전						
			변경 후						
	업 체 명		변경 전						
			변경 후						
	업체의 소재지		변경 전						
			변경 후						
	① 가공능력 (M/T)	제분·제조업 (1일 24시간 기준)	제 품	변경 전	제 분		제 조		
				변경 후					
			원 료	변경 전					
				변경 후					
	도정업 (1일 8시간 기준)		변경 전	정미	정맥	밀쌀	압맥	할맥	
			변경 후	정미	정맥	밀쌀	압맥	할맥	
변경 사유									

「양곡관리법」 제19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가공능력변경의 경우 1.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1부. 2. 원료처리 및 제품생산능력표(제조업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작성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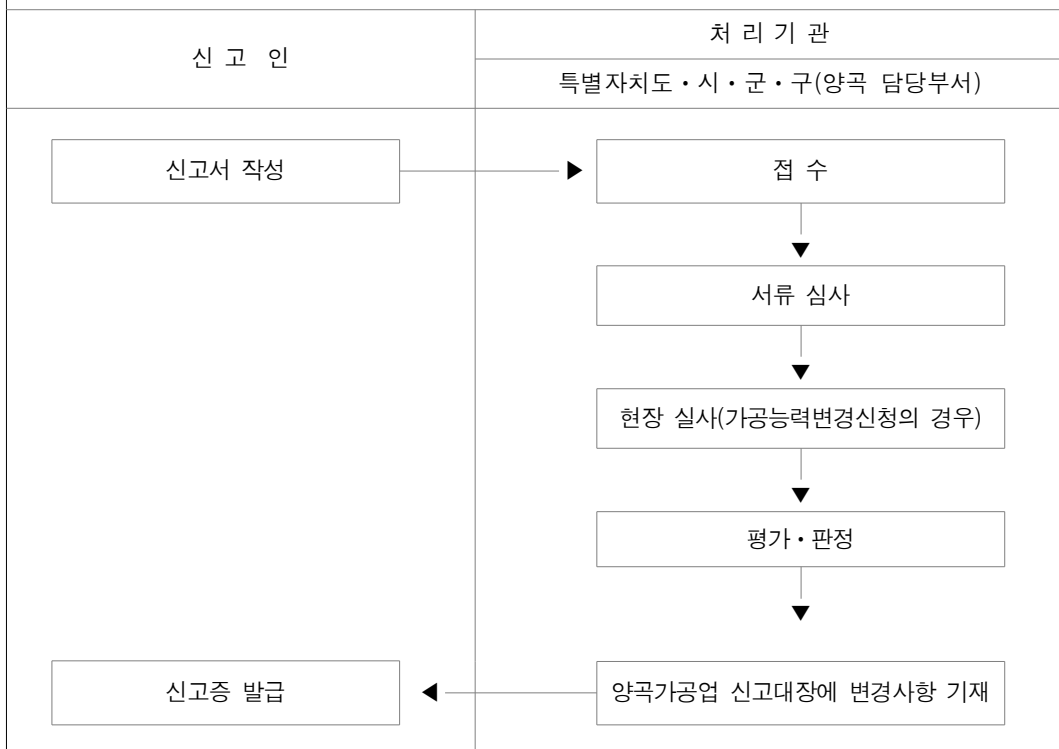
1. ①란은 제조업·제분업의 경우 1일 24시간을 기준으로 적으며, 제분업 중 밀가루 제분업은 제품생산 능력을, 제분업 중 옥분 및 옥전분 제분업과 제조업은 원료처리능력을 적습니다.

유의사항

- 「양곡관리법」 제19조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곡가공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법 제19조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고 양곡가공업을 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양곡관리법」 제3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2.12.11>

양곡가공업 [] 휴업 신고서 [] 폐업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 시
신고인	업체명		
	주 소	사업장	전화번호
		신고인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양곡가공업 신고	신고업종		신고번호 제 호
	휴업 예정일		재개업 예정일(휴업인 경우)
	폐업 예정일		
휴업 사유 또는 폐업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양곡관리법」 제1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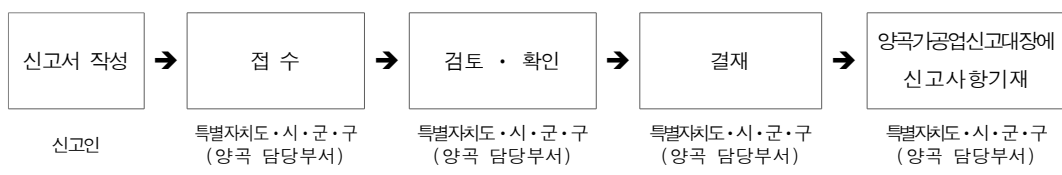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	-----	----

유의사항

1. 신고대상: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자
2. 「양곡관리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양곡관리법」 제36조제1항제3호).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2.12.11>

양곡가공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뒤쪽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는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승계하는 사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승계받는 사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영업장	명 칭(상호)	신고번호 제 호		
	영업 종류			
	소 재 지			
승계사유	[] 양도·양수 [] 상속 [] 기 타 ()			

「양곡관리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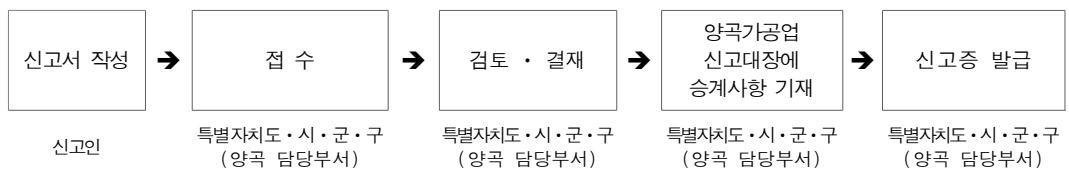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지위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m²]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양곡관리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5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과 행정제재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받은 날짜	행정처분 내용	행정처분 사유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적발일	양곡관리법령 위반 내용	진행 중인 내용

-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처분 받은 날짜 란에 “없음”이라고 적어야 합니다.
 - 2) 양도·양수(신고)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기재사항을 보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된 경우에는 「양곡관리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5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양수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 양도인의 서명 표시는 양도인이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앞 쪽)

<p>제 호</p> <p>양곡관리 조사공무원증</p>	<p>사 진</p> <p>(2.5×3cm)</p>
<p>소 속: _____</p> <p>직 급: _____</p> <p>성 명: _____</p> <p>주민등록번호: _____</p>	
<p>위 사람은 「양곡관리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양곡관리 조사 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p>	
<p>년 월 일</p>	
<p>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input type="checkbox"/> 직인</p>	
<p>* 바탕색: 연노랑색</p>	

90mm×55mm [보존용지1 중120g/㎡]

(뒤 쪽)

<p>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p> <p>2. 이 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양곡관리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양곡의 소유자, 양곡매매업자, 양곡가공업자와 양곡을 수출·수입·보관 또는 수송하는 자에 대한 감독을 할 권한이 있습니다.</p> <p>3.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p>

(앞 쪽)

제 호 양곡관리 조사공무원증	사 진 (2.5×3cm)
소 속: 직 급: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 사람은 「양곡관리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양곡관리 조사 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직인	
* 바탕색: 연노랑색	

90mm×55mm[보존용지1종]120g/㎡

(뒤 쪽)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2. 이 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양곡관리법」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양곡의 소유자, 양곡매매업자와 양곡가공업자에 대한 감독(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지정된 용도 외의 사용·처분에 관한 조사와 법 제20조의2 및 법 제20조의3에 따른 표시·광고에 관한 조사에 한정한다)을 할 권한이 있습니다.3.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목 양곡가공업 신고 현황 보고(년도 반기)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 시설기준에 따라 신고된 양곡가공업체의 년도 반기 업종별(제분업·제조업) 원료처리 및 제품생산 능력과 실적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업종	구분	신고 업체수	연간가공능력(M/T)		연간가공실적(M/T)		비 고
			원료처리	제품생산	원료처리	제품생산	
총 계							
제분업	밀가루 제조						
	옥수수가루 제조						
	계						
제조업	옥수수전분당 제조						
	대두 식용유지 제조						
	계						

끝.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 g/㎡ 또는 일반용지60 g/㎡ 재활용종)



행 정 규 칙

쌀의 등급 및 단백질함량 기준

제정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8- 6호 2008. 2. 4

개정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1-131호 2011. 7. 28

개정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133호 2013. 10. 2

제1조(목적) 이 고시의 목적은 양곡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중 쌀의 등급 및 단백질함량에 대한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등급 기준) ① 쌀 등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쌀 등급 검정순위는 별표 2와 같다.

제3조(단백질 함량 기준) 쌀 단백질함량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4조(표시내용의 객관성 확보) 양곡가공업자 또는 양곡매매업자가 쌀 등급 및 단백질함량을 표시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등급과 단백질함량을 점검하여 표시내용의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부 칙 (2013. 10.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3.10. 2부터 시행한다. 다만,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경과규정에 따라 기존의 표시사항으로 표시하는 경우는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1-131호를 따른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10월 1 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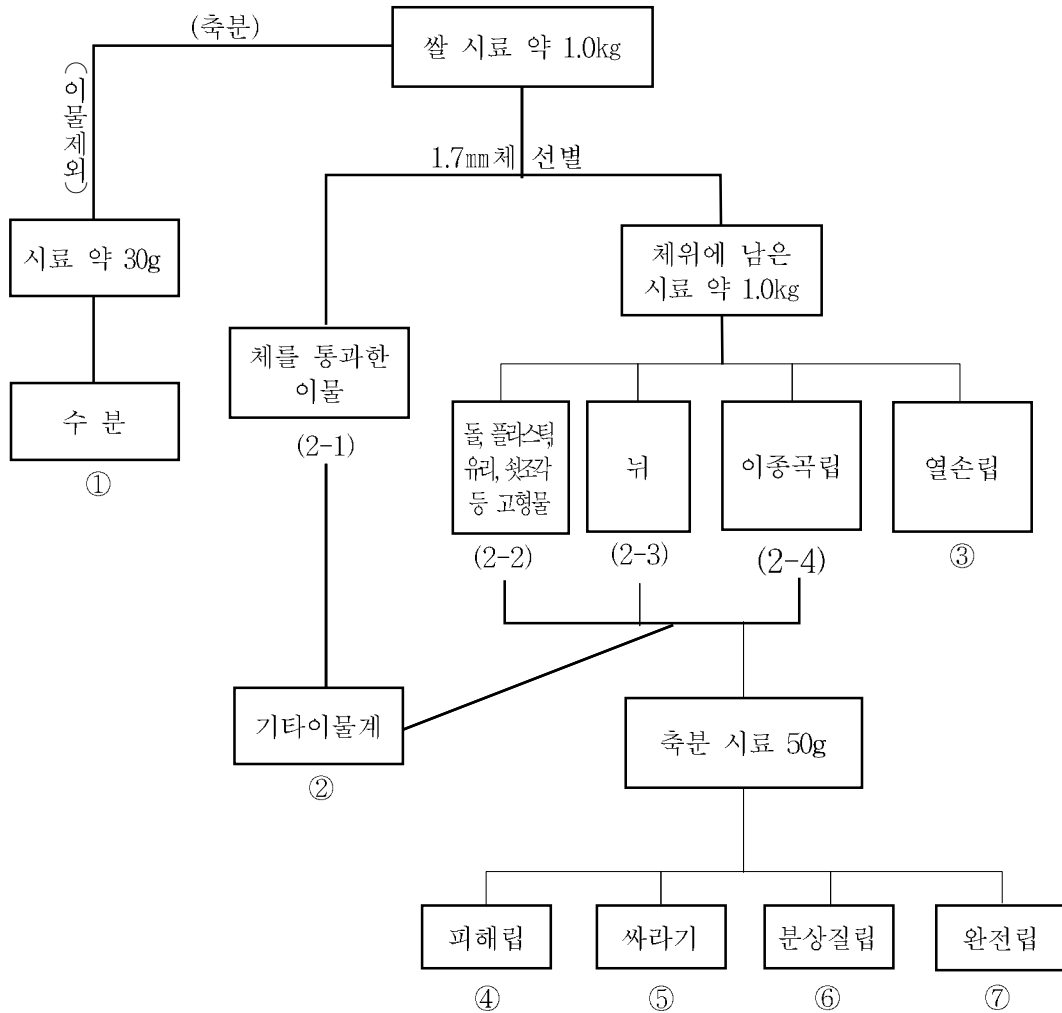
[별표 1]

쌀 등급 기준 (제2조제1항 관련)

등급	항목	최 고 한 도 (%)				
	수분	싸라기	분상질립	피해립	열손립	기타이물
특	16.0	3.0	2.0	1.0	0.0	0.1
상		7.0	6.0	2.0	0.0	0.3
보통		20.0	10.0	4.0	0.1	0.6
<p>※ 기타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손립은 시료 1kg 중 ‘특’은 3립 이하, ‘상’은 7립 이하여야 함 ○ 기타이물 중 ‘돌, 플라스틱, 유리, 쇧조각’ 등 고행물은 시료 1kg 3번복 조사 합산하여 1개 이내여야 하며, ‘이종곡립(누 포함)’은 특과 상은 2개 이하, 보통은 5개 이하여야 함 ○ 완전립 비율이 96.0%이상인 경우에는 ‘특’표시와는 별도로 ‘완전미(Head Rice)’로 표시할 수 있음 						
<p>【 용어의 정의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분율(%) : 전량에 대한 무게비율을 말하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수분 : 105℃ 건조법 또는 이와 동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측정된 함수율을 말한다. ○ 싸라기 : KS A 5101-1(금속망체) 중 호칭치수 1.7mm 금속망체로 쳐서 체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낱알 중 그 길이가 완전한 낱알 평균길이의 3/4미만인 것을 말한다. ○ 분상질립 : 체적의 1/2이상이 분상질 상태인 낱알을 말한다. ○ 피해립 : 오염된립, 병해립·충해립·발아립·생리장해립, 적조 및 흑조가 낱알 길이의 1/4이상 부착된 것을 말한다. 다만, 피해가 쌀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경미한 것은 제외한다. ○ 열손립 : 열 등에 의하여 변색 또는 손상된 낱알을 말하며 미립표면적의 1/4이상이 주황색(한국표준색표집 2.5Y8/4기준 이상)으로 착색된 것을 말한다. 다만, 착색 정도가 주황색 기준 이하이거나 1/4미만인 것은 피해립으로 적용한다. ○ 기타이물 : 쌀 이외의 것(‘돌, 플라스틱, 유리, 쇧조각 등 고행물 이종곡립 과KS A 5101-1(금속망체) 중 호칭치수 1.7 mm의 금속망체로 쳐서 체를 통과한 것을 말한다. * 이종곡립 : 쌀 이외의 곡립(누 포함) ○ 완전립 : 쌀의 외관특성상 완전한 낱알 또는 완전한 낱알 평균길이의 3/4 이상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 중 분상질립, 피해립, 열손립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 낱알의 평균길이는 완전한 낱알 15개 이상을 계측하여 산출함 						

[별표 2]

쌀 등급 검정 순위표 (제2조제2항 관련)



< 유의사항 >

- 한 낱알이 제한항목의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것은 검정순위가 앞선 항목만 적용한다.

[별표 3]

쌀 단백질 함량 기준 (제3조 관련)

구분	단백질 함량(%)
수	6.0 이하
우	6.1 ~ 7.0
미	7.1 이상

【용어의 정의】

- 단백질 함량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정한 시험방법에 따라 분석한 쌀의 조단백질 함량을 수분 15.0%로 보정하여 백분율(%)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와 동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측정된 함량을 말한다.

* 단백질함량(%)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허용오차】

- 단백질 함량의 허용오차의 범위는 $\pm 0.3\%$ 포인트로 한다.

쌀·현미의 품종 표시사항 중 다른 품종의 혼입허용범위

제정 농림부 고시 제2006- 23호, 2006. 5.15
 개정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340호, 2009. 9.15
 개정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1-189호, 2011.11.30
 개정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162호, 2013.10. 7

제1조(목적) 이 고시의 목적은 양곡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의 규정에 의거 쌀·현미에 품종명을 표시하였을 경우 다른 품종과의 혼입허용범위를 정함에 있다.

제2조(다른 품종 혼입허용범위) 쌀·현미에 품종명을 표시하였을 경우 다른 품종의 혼입 허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구 분	혼입 허용범위	표시 사례
품종명 표시	다른 품종 혼입 20% 이하	품종 : 추정

제3조(쌀·현미의 품종검정기관 지정) ① 농촌진흥청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쌀·현미의 품종 검정기관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쌀·현미의 품종검정에 적합한 시설·인력 등을 갖추고 쌀·현미의 품종검정기관 지정을 희망할 경우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별도 지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10월 6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검사대상농산물

개정 농림부 고시 제2001- 4호('01.2.10)
 개정 농림수산물식품부고시 제2009-183호('09.8.25)
 개정 농림수산물식품부고시 제2012- 49호('12.4.27)
 개정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179호('13.10.7)

1. 검사대상 농산물의 종류별 품목

- 가. 정부가 구매하거나 생산자단체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구매하는 농산물
 - (1) 곡류 : 옥수수
- 나. 정부가 수입하거나 생산자단체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입하는 농산물
 - (1) 곡 류 : 보리, 메밀
 - (2) 서 류 : 감자
- 다. 생산자단체가 공동판매를 목적으로 생산자로부터 구매하는 농산물
 - (1) 곡 류 : 보리, 맥주보리, 밀, 귀리
 - (2) 서 류 : 고구마, 절간고구마
 - (3) 특용작물류 : 유채
- 라. 국제견업협회 규정에 의해 수출 또는 수입하는 잠사류 중 검사를 신청하는 것 : 생사, 쌍고치실, 견연사
- 마. 국가 종자 생산계획에 의한 지정포장에서 생산된 작물종자 : 맥주보리, 밀, 쌀, 녹두, 땅콩, 참깨, 들깨, 고구마, 유채

2. 농산물검사 유효기간

종 류	품 목	검사 시행시기	유효기간(일)	
곡 류	옥수수, 메밀	5. 1 ~ 9. 30	90	
		10. 1 ~ 4. 30	120	
	보리, 맥주보리	5. 1 ~ 9. 30	60	
		10. 1 ~ 4. 30	90	
		밀, 귀리	5. 1 ~ 9. 30	40
			10. 1 ~ 4. 30	60
서 류	고구마, 감자	1 1 ~ 12. 31	15	
	절간고구마	1 1 ~ 12. 31	40	
특용작물류	유채	1. 1 ~ 12. 31	180	
잠 사 류	생사, 쌍고치실, 견연사	1. 1 ~ 12. 31	365	
종 자 류	국가 종자 생산계획에 의한 지정포장에서 생산된 작물종자 : 맥주보리·밀·쌀·녹두·땅콩·참깨·들깨·고구마·유채	종자산업법 관련규정에 따름		

3. 농산물검사 수수료

종 류	품 목	검사구분	단 위	수수료(원)
잠 사 류	생사, 쌍고치실	진량검사	건당	7,500
	생사, 쌍고치실, 견연사	샘플검사	건당	700
종 자 류	종자류 전품목	종자산업법 관련규정에 따름		

부 칙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수입대행의 범위) 본고시의 적용에 있어 수입권공매 또는 실수요자추천제에 의한 수입물량은 정부를 대행하여 수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③ 1. 다. (1) 곡류 중 보리, 맥주보리는 2014.12.31일까지 시행 후 폐지한다.
- ④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10월 6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양곡명예감시원 운영규정

제정 농림부 고시 제2006- 3호 2006. 1. 7
개정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186호 2009. 8.25
개정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1- 21호 2011. 3. 4
개정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2- 91호 2012. 8.24
개정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 186호 2013.10.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양곡관리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양곡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2조(명예감시원 위촉) ① 시행규칙 제10조의2의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명예감시원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명예감시원신청서를 매 분기말 10일 이전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명예감시원 위촉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② 명예감시원 위촉기관의 장은 매 분기시작 10일 이내에 적격자를 선정 위촉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명예감시원위촉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감시원증을 발급한다.

③ 명예감시원 위촉인원은 「별표」에서 정한 수준이내로 한다.

제3조(명예감시원 위촉기간) 명예감시원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위촉기간 만료 후에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명예감시원증 재발급은 생략할 수 있다.

제4조(명예감시원 해촉) ① 명예감시원 위촉기관의 장은 명예감시원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명예감시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추천한 단체에서 퇴직·해임되거나 그 단체의 장이 해촉을 요구한 때
2. 사망·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명예감시원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3. 명예감시원이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② 명예감시원 위촉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명예감시원을 해촉 할 때는 본인 및 추천기관에 서면으로 알리고, 명예감시원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5조(명예감시원 활동방법) ①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2항의 업무 수행을 위한 명예감시원의 활동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예감시원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감시·신고
2. 단체의 장이 주관하는 감시·신고 및 홍보, 다만, 이 경우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명예감시원 위촉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활동일자(기간), 장소, 주요 활동내용, 동원인원, 소요예산액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3. 명예감시원 위촉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합동지도·조사·단속·홍보 등
4. 명예감시원의 자율적인 업무 수행 중 발견한 부정유통·표시 또는 기타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별지4호 서식 「명예감시원 감시활동 보고서」 또는 전화 등 기타 방법으로 보고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해 위촉기관의 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5. 제4호의 「명예감시원 감시활동 보고서」를 접수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부정유통·표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곡부정유통 신고 고발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활동수당 등 지급) 명예감시원 위촉기관의 장은 명예감시원이 제5조에 따라 합동 활동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수당 등을 명예감시원 1인당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교육) 위촉기관의 장은 명예감시원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 임무수행에 관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2016년 10월 6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표」

양곡명예감시원 위촉인원

위촉기관	인원(명)
서울	200
부산	80
대구	50
인천	50
광주	30
대전	30
울산	20
경기	210
강원	30
충북	30
충남	40
전북	40
전남	50
경북	60
경남	70
제주	10
합계	1,000

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군·구별로 위촉인원을 조정하되 가급적 양곡 유통물량 등을 감안하여 조정

■ 양곡명예감시원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양곡 명예감시원		[] 추천서 [] 신청서	사진 붙이는 곳 (가로 3cm × 세로 4cm)
①성 명			
②생년월일			
③주 소 (연락처)	(연락처)		
④소속 단체 또는 직장명			
⑤활동지역 (시·군명)			
⑥추천 또는 신청사유 (주요 사회활동 경력 또는 추천·신청사유 등을 기재)			
※개인 신청자의 경우	본인은 「양곡관리법」 제27조의 2에 따른 양곡명예감시원을 희망하여 신청합니다. 20 신청자 : ○ ○ ○ (서명 또는 날인)		
※단체장이 추천하는 경우	위 사람을 「양곡관리법」 제27조의 2에 따른 양곡명예감시원으로 추천하오니 위촉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추천기관 : ○○○○○○ 단체장 (인)		
(명예감시원 위촉기관의 장) 귀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본인은 양곡명예감시원의 위·해촉 및 재위촉 및 활동경비 지급 등을 위하여 본인의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소속단체 등을 위촉기관의 장에게 제공하고 양곡명예감시원에서 해촉 될 때 까지 활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 상기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예감시원 위촉·재위촉, 및 활동경비 지급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	
개인정보 제공 동의자 : (서명)	

210mm × 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 양곡명예감시원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양곡명예감시원 위촉 대장

일련번호	소 속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위촉일자	비고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주> 1. 일련번호는 명예감시원증 발행번호를 말하며, 위촉기관별 연도-일련번호(예, 2012-1)를 사용
 2. 비고란에는 해촉일자 등을 기록

■ 양곡명예감시원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양곡명예감시원증

<앞면>

<p style="text-align: center;">양곡명예감시원증</p> <p style="text-align: center;">(사진)</p> <p style="text-align: center;">가로30mm × 세로40mm</p> <p>소속 :</p> <p>성명 :</p>
(위촉기관명)

52mm×74mm 보존용지(1종)120g/㎡

<뒷면>

<p>발행번호 : 제 호</p> <p>성명 :</p> <p>생년월일 :</p> <p>1. 위 사람은 양곡관리법 제27 조의2에 따른 양곡명예감시 원임을 증명함.</p> <p>2. 이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음.</p> <p style="text-align: center;">20 . . .</p> <p style="text-align: center;">(위촉기관의 장 인)</p>
<p>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Tel.)</p>

■ 양곡명예감시원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 서식]

양곡명예감시원 감시활동 보고서			
보고 일자			
보고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서명)
제목			
<p>1. 발견일시 :</p> <p>2. 발견 및 정보획득 장소 :</p> <p>3. 정보내용 :</p> <p>4. 조사자 의견 :</p> <p>* 첨부 : 증거사진 및 관련 서류 등</p>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양곡부정유통 신고 고발포상금 지급규정

제정 농림부고시 제2006-46호 2006. 9. 5
개정 농림수산물부고시 제2009-187호 2009. 8.25
개정 농림수산물부고시 제2011-22호 2011. 3. 4
개정 농림수산물부고시 제2012-92호 2012. 8.24
개정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187호 2013.10. 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양곡의 부정유통 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포상금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① 행정기관, 수사기관 또는 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고 또는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 해당 사건별로 별지 서식의 포상금지급신청서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장을 경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일반인의 경우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징역 또는 벌금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기소유예 처분된 경우
 3. 과태료를 납부하였거나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이의제기(이하 “이의제기”라 한다)기간이 경과한 경우
 4. 이의제기한 건에 대하여 과태료의 재판 결과 과태료처분이 확정된 경우
- ② 제1항에 의해 포상금지급신청 시 동일한 건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포상금을 받고자하는 자들 간에 합의한 배분합의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형 또는 처분이 확정된 일자를 기준으로 다음년도 말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출된 포상금지급신청서를 검토한 후 신청 후 한달 이내에 포상금 지급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포상금을 계좌입금 조치한다. 다만, 조사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사결과 확정 후 한달 이내에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포상금을 계좌입금 조치한다.

제4조(비밀의 보장) 행정기관 및 수사기관의 장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분보호를 위하여 일체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10월 6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표]

포상금 지급기준(제2조관련)

구 분	포상금 지급기준(건당)		
	부정유통물량	민간인	공무원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용도의료 양곡을 사용·처분한 행위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	2톤 미만	20만원	10만원
	2톤 이상 ~ 5톤 미만	30만원	15만원
	5톤 이상 ~ 10톤 미만	50만원	25만원
	10톤 이상 ~ 20톤 미만	70만원	35만원
	20톤 이상	100만원	50만원
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연도·품질 등의 표시사항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	100kg 이상 ~ 2톤 미만	5만원	-
	2톤 이상 ~ 5톤 미만	10만원	5만원
	5톤 이상 ~ 10톤 미만	20만원	10만원
	10톤 이상 ~ 20톤 미만	30만원	15만원
	20톤 이상	50만원	25만원
또는 제20조의3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과대의 표시, 거짓·과대의 광고를 한 행위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	2톤 미만	5만원	-
	2톤 이상 ~ 5톤 미만	10만원	5만원
	5톤 이상 ~ 10톤 미만	20만원	10만원
	10톤 이상 ~ 20톤 미만	30만원	15만원
	20톤 이상	50만원	25만원

주 1) 포상금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민간인에게 위 지급기준에 의하여 우선 지급하고 잔여예산액으로 「공무원별 포상금신청액×잔여예산액÷공무원 포상금신청총액」의 기준에 의하여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다만, 민간인에게 지급할 포상금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민간인별 포상금신청액×예산액÷민간인 포상금신청총액」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고 공무원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2) 공무원과 합동 활동 시 양곡명예감시원은 공무원으로 본다.

미국 수출추천 물량 및 배정방식

[시행 2013.10.7]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143호, 2013.1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양곡관리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미국(이하 "수출추천대상미국"이라 한다) 수출추천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수출추천대상미국 수출추천의 관리에 관하여는 관련법령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업무대행기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관리법 제12조(미국 등의 수입허가 등)제3항의 따라 수출추천대상미국의 수출추천과 이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대행하게 한다.

② 공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대행 업무에 관한 세부규정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정·시행할 수 있다.

제4조(추천대상 품목) 추천대상 품목은 HS코드 기준으로 아래 각 호와 같다.

1. 1006-10-0000 벼
2. 1006-20-1000 메현미
3. 1006-20-2000 찰현미
4. 1006-30-1000 멥쌀
5. 1006-30-2000 찰쌀
6. 1006-40-0000 쇄미
7. 1102-90-2000 쌀가루
8. 1103-19-3000 쌀의 것
9. 1103-20-2000 쌀의 것
10. 1104-19-1000 쌀의 것
11. 1806-90-2290 기타
12. 1806-90-2999 기타
13. 1901-20-1000 쌀 가루의 것

- 14. 1901-20-9000 기타
- 15. 1901-90-9091 쌀 가루의 것
- 16. 1901-90-9099 기타

제5조(수출추천물량 등) ① 수출추천물량은 1.1일부터 12.31일까지 기간 중 당 해연도에 도입되는 밥쌀용 물량 범위내에서 추천할 수 있다.

- ② 미곡수출 추천 기준가격은 가장 최근에 통계청에서 조사한 전국 평균 산지 쌀값(정곡기준)의 85%이상으로 하고 통계청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곡은 당해연도의 정부양곡 판매가격 이상으로 한다.
- ③ 수출추천은 선착순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추천물량 및 추천방식을 공고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추천신청) 수출추천을 신청하는 자는 사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추천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별지1호 서식에 의한 미곡 수출추천 신청서 1부.
- 2. 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사본 1부.
- 3. 기타 추천대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7조(추천서 발급) 추천대행기관의 장은 추천신청이 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7일 이내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미곡 수출 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를 발급한다.

제8조(추천서의 유효기간) ①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교부일로부터 30일 이상 180일 이내에서 추천대행기관의 장이 정한다.

- ② 추천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미곡 수출추천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당초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추천대행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초의 추천서와 교환하여 유효기간이 연장된 추천서를 교부한다.

제9조(추천서의 반납 등) 수출 추천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서를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1. 추천수량의 수출을 포기하는 경우
2. 기타 추천수량의 수출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10조(수출이행실적 보고 등) ① 수출추천을 받은 자는 수출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출이행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수출이행실적 등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3-143호, 2013.10.7>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7월 13일까지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접수번호 :							처 리 기 간
							7 일
미곡 수출추천 신청서							
구 분	신 청 인(수출자)			수출 대행자			
업 체 명							
주 소							
대표성명							
사업자등록 번호							
전화번호	(HP :)			(HP :)			
팩스번호							
○ 신청내용							
H·S	품 명	수 량	금 액	수출선	수출예정 일 자	비 고	
<p>양곡관리법 제 12조 2항에 의거 미곡 수출추천을 받고자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p> <p style="text-align: right;">신 청 인 (인)</p> <p>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귀하</p>							

(별지 제2호 서식)

추천번호 :						
미국 수출 추천서						
구 분	신 청 인 (수출자)			수출대행자		
업 체 명						
주 소						
대표성명						
사업자등록 번호						
전화번호	(HP :))			(HP :))		
팩스번호						
○ 추천내용						
H·S	품 명	수 량	금 액	수출선	수출예정 일 자	용 도
○ 유효기간 만료일 : 20 . . 까지						
양곡관리법 제 12조 2항에 의거 미국 수출을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20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인)						

(별지 제3호 서식)

접수번호 :						처 리 기 간
						7 일
미곡 수출추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구 분	신 청 인 (수출자)			수출대행자		
업 체 명						
주 소						
대표성명						
사업자등록 번호						
전화번호	(HP :)			(HP :)		
팩스번호						
○ 당초 추천내용(추천번호 :)						
H·S	품 명	수 량	금 액	수출선	수출예정 일자	용 도
○ 유효기간 연장신청 내용 : ○ 유효기간 연장신청 사유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 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서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오니, 연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20 . . .</div> 신 청 인 (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인)						
첨부서류 : 당초추천서 원본						

소비자 시판용 수입미곡의 수입 및 판매비용 산정기준

[시행 2010.6.18]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0-62호, 2010.6.18, 일부개정]

1. 수입에 소요되는 비목과 산정기준

비 목	내 역	산 정 기 준
수입양곡대	○ 물품대, 해상운임 등 미곡의 수입비용	○ 수입외화금액을 수입어음·전신환 등의 결제환율로 환산하여 지급한 금액
해상보험료	○ 수입미곡에 대한 해상적하보험료	○ 위탁사업기관의 해상적하보험요율을 적용한다.
운송료	○ 통관하여 보관창고에 입고하기 전까지 발생하는 수입미곡의 운송료	○ 현행 수입양곡 트럭운임처리요율표에 의한 단가입찰 가격으로 한다. 다만 컨테이너 사용시에는 이에 관한 협정 요율을 적용한다.
신용장 개설비	○ 수입품에 대한 신용장 개설 수수료 및 외국환 은행 수수료 등 수입제수수료	○ 신용장 개설금액×외국환은행 신용장 개설수수료 요율×개설 당일 환율로 한다.
통관수수료	○ 수입미곡의 통관대행과 관련 관세사에 지급하는 비용	○ 위탁사업기관의 통관대행수수료 요율을 적용한다.
항만하역료 하역료	○ 수입하여 통관할 때까지 항만하역비용 ○ 통관하여 보관창고에 입고하기 전까지 발생하는 입·출고, 상·하차, 계근비 등	○ 국토해양부의 인가요율을 적용한다. ○ 정부관리양곡처리요율을 적용한다.
수입제비용	○ 입항료, 컨테이너청소료, 통관서류작성비 등 항만 사용과 관련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비용	○ 국토해양부의 고시요율 적용 또는 관련 증빙서류에 따라 지급한다.
검사검역비	○ 검역수수료, 검정료, 훈증소독비용, GMO·잔류농약 검사, 해외검사·검역비 등	○ 관련 증빙서류에 따라 지급한다.
광고료	○ 수입입찰을 위해 일간지 광고에 지출한 비용	○ 관련 증빙서류에 따라 지급한다.
제세공과금	○ 수입하여 보관창고에 입고하기 전까지 발생하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담금 등 제세공과금	○ 관계법령에 따라 적용한다.
구상비	○ 소송, 상사중재 및 조정 등과 관련되어 지출한 금액	○ 관련 증빙서류에 따라 지급
기 타	○ 기타 수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용	○ 당해 계약내용에 의하거나 실비를 적용한다.

2. 국내 판매에 소요되는 비목과 산정기준

비 목	내 역	산 정 기 준
보관료 및 보관보험료	○ 수입미곡의 보관 및 위탁보관에 따른 보관료 및 보관 보험료	○ 정부관리양곡처리요율을 적용한다. 단 민간창고 등에 보관시에는 계약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
운송료	○ 보관창고에서 판매하기까지 발생하는 수입미곡의 운송료	○ 현행 수입양곡 트럭운임 처리요율에 의 한 단가입찰 가격으로 한다. 다만, 컨테 이너 사용시에는 이에 관한 협정요율을 적용한다.
하역료	○ 보관품의 입·출고, 상·하차, 계근 또는 이적·이고 비용	○ 정부관리양곡처리요율을 적용한다. 단 민간창고 등에 보관시의 하역료는 계약 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
채포장작업비	○ 샘플검사시 발생하는 파대품 작업관련 비용	○ 관련 증빙서류에 따라 지급한다.
제세공과금 공고료	○ 수입미곡 관리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 판매 및 운송공고 입찰을 위해 일간지 등 공고에 지출한 비용	○ 관계법령에 따라 적용한다. ○ 관련 증빙서류에 따라 지급한다.
품질유지비	○ 보관품의 품질보전을 위한 훈증소독, 품 질변화 확인 등 시험분석과 정선 채포 장 등의 비용	○ 관련 증빙서류에 따라 지급한다.
구상비	○ 소송, 중재 및 조정 등과 관련되어 지출 한 금액	○ 관련 증빙서류에 따라 지급한다.
위탁수수료	○ 시판용 수입미곡의 수입 및 판매와 관련 하여 위탁사업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	○ 연도별 취급물량[(도입량*2)+(판매량*1) /3]×톤당수수료×가산율 -톤당수수료는 농림수산물부장관이 정 한다. -가산율은 매년 기획재정부의 임금인상율 을 적용한다.
사업부대비 금융비용 등	○ 수입미곡 관리 활동에 필요한 제잡비 ○ 민간위탁금 부족으로 인하여 필요자금 을 조달한 경우 소요되는 금융비용 및 제반비용	○ 매출액의 0.05% 이내로 한다. ○ 관련 증빙서류에 따라 지급한다.
기 타	○ 기타 국내판매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용	○ 당해 계약내용에 의하거나 실비를 적용 한다.

부 칙 <제2010-62호, 2010.6.18>

(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3년 6월 17일까지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정부관리양곡 일반판매용중 소비자 밥쌀용 수입미곡을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

[시행 2011.5.13] [농림수산물식품부고시 제2011-43호, 2011.5.13, 일부개정]

1. 정부관리양곡 일반판매용중 소비자 밥쌀용 수입미곡을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가. 농산물 도소매업체, 일반음식점 또는 법정양곡도매시장 중도매인
 - 나. 판매점포 또는 영업시설을 갖춘 자
 - 다. 양곡관리법령상 양곡가공업체와 정부관리양곡을 가공용으로 매입하는 자가 아닐 것

2.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소비자 밥쌀용 수입미곡 공매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공매입찰참가자격 등록기간 내에 공매 시행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공매입찰참가자격 등록시 적격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가.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나. 사업장운용증명서(건축물관리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류 중 1종) 사본 1부
 - 다.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 또는 도매시장거래실적증명서 1부
 - 라. 기타 공매시행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다음 각목의 경우, 공매시행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 각목의 요건을 완화하거나 자격대상을 추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시행기관은 공매입찰 참가 자격기준 변경사항을 공매입찰시 공고 하여야한다.
 - 가. 공매입찰등록 및 참가현황 등을 고려할 때 원활한 공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 나. 기타 공정한 공매 진행 등을 위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양곡관리법령 또는 농산물품질관리법령상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과 받은 자는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기준)에 따라 공매 참가를 제한한다.

부 칙 <제2011-43호, 2011.5.13>

(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3년 5월 12일까지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소비자시판용 수입미곡 관리지침

[시행 2013.10.7] [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72호, 2013.1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호에 의거 소비자 시판용 미곡(이하 "시판용 수입쌀"이라 한다)의 수입·판매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정부관리양곡 중 시판용 수입쌀의 관리에 관하여는 관련법령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위탁사업기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관리법 제29조(권한의 위임·위탁)제2항에 따라 시판용 수입쌀에 대한 수입, 보관, 판매, 회계 업무와 이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② 공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위탁 업무에 관한 세부규정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정·시행할 수 있다.

제4조(자금 운용계획 수립 및 자금지급) ① 공사는 당해연도 시판용 수입쌀의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자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따라 공사가 제출한 자금운용계획서를 검토하여 그 소요되는 자금을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공사에 지급한다.

③ 시판용 수입쌀의 수입, 보관 및 국내 판매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양곡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4 제1항 규정에 따른 고시에 의한다.

제5조(자금의 운용) ① 공사는 시판용 수입쌀의 수입 및 판매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고 구분·계리하여야 한다.

② 자금의 집행담당자는 회계관계법령 지침 등을 준수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6조(시판용 수입쌀 사업자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시판용 수입쌀 민간위탁사업 자금운용계획을 검토하여 민간위탁금을 공사에 배정한다.

② 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배정한 자금과 시판용 수입쌀의 판매대금을 활용하여 당해년도 사업을 실시한다

③ 수입가격 상승 및 판매부진 등으로 운용자금 부족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자금을 추가로 전도할 수 있으며, 필요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우선 공사 자체자금으로 사업할 수 있다. 단 공사 자금의 차입이자 및 관련 비용은 민간위탁금에서 부담한다.

④ 사업자금 잔액은 시판용 수입미곡에 대해 공사와의 위탁이 종료되는 시점에 전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 결산 및 수입이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시판용 수입쌀 업무위탁에 따른 사업결산 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정산 결과에 따라 수입 및 국내 판매에 소요된 비용과 수입이익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1. 시판용 수입쌀의 판매이익금 발생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4 제2항에 따라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2. 납입금액은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4 제1항에 따라 판매금액에서 수입양곡대, 수입 및 판매제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수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 당해연도 수입물량을 분할수입 하되 국내수급상황, 국내외 가격동향, 보유재고, 판매전망 등을 감안하여 수입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판용 수입쌀을 수입함에 있어 하역 등에 의한 자연감량, 해상운송사고, 수량부족 등의 제반사고와 계약위반사고에 대하여는 당해계약의 조건 또는 약관과 국제무역관례에 준하여 처리하되 구상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거나 대한상사중재원의 구상불가판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손비로 처리할 수 있다.

제9조(내륙운송 등) 공사는 시판용 수입쌀의 하역작업 및 내륙운송 등을 통상의 순로에 따라 실시하여 비용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조건 및 교통사

정의 악화, 물량 수급의 긴박성, 전시사변, 파업, 시위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거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별도 지시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보관관리) ① 시판용 수입쌀은 공사가 관리하는 정부비축사업보관창고(이하 "비축창고"라 한다)에 보관하되 창고부족 등 필요시 도난 및 화재보험에 가입된 1급 이상의 정부양곡보관창고 또는 민간창고를 임차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② 정부양곡보관창고 또는 민간창고에 위탁 보관하는 경우 공사는 제4항에 따라 입출고 관리를 할 수 있고, 보관관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비축창고에 보관시 공사는 시판용 수입쌀의 적정 적재기준을 정하여 보관창고별로 비치하고 부패, 변질, 압상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게 그 기준에 따라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창고의 여석 및 시판용 수입쌀의 품위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판용 수입쌀은 선입선출의 원칙에 의하여 입출고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관리, 판매여건 등 보관관리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비축창고에 보관시 공사는 시판용 수입쌀의 재고현황 등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창고안의 입구에 재고 및 입출고 상황표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재고조사 및 사고책임) ① 공사는 시판용 수입쌀의 입출고, 재고현황 및 보관상태 등에 대한 재고조사를 매년2회(6월 30일, 12월 31일 기준)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조사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보관 중인 시판용 수입쌀에 대하여 도난, 화재, 침수 등의 사고가 발생하여 파손, 변질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당해 사고 발생이 보관 담당자 또는 관련 감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체 없이 변상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변상은 사고 발생 당시 물품의 시가로 현금배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현금 배상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물배상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물로 배상할 수 있다.

제12조(판매시기 및 가격) ① 시판용 수입쌀은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연중 정기적으로 판매한다. 다만, 국내산 양곡 성출하기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방출물량을 조정하여 판매할 수 있다.

② 시판용 수입쌀의 판매가격(공매가격)은 당해 시판용 수입쌀과 비슷한 품위와 곡종의 국산쌀 도매가격 수준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설정한다. 다만, 시판용 수입쌀의 곡종과 품위에 상응하는 국산쌀이 없거나, 판매여건상 원활한 공매가 곤란하거나, 긴급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판매가격을 조정하여 판매할 수 있다.

③ 포장손상품, 변질품, 규격미달품 등 비정상품 및 기타의 사유로 제2항에 따라 시중도매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3인 이상의 원매자로부터 견적가격을 받아 그중 최고가격을 채택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④ 시판용 수입쌀 판매 후 변질품 등의 사유로 반품 및 교환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손비로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판매방법) 시판용 수입쌀은 일반공개경쟁에 의하여 판매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매방법을 달리하여 판매할 수 있다.

제14조(판매 대상자 및 계약기준) ① 시판용 수입쌀의 판매대상자는 양곡관리법 제9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3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계약기준을 준수하여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낙찰자가 물품대금을 납부한 때에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2. 낙찰자가 물품대금을 납부한 후, 출고기한(낙찰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이내에 낙찰 받은 물량을 인수하지 않는 경우 공사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 해제에 따른 효과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3. 공사는 제2호에서 정한 사유 이외에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4. 물품이 불량하거나 손상되어진 경우 공사는 낙찰자에 대하여 이를 정상품으로 교환해주어야 한다. 다만, 교환이 불가능한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물품대금을 환불해 주어야 한다.

부 칙 <제72호, 2013.10.7>

(시행일) 이 훈령은 2013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2016년 6월 17일까지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2013. 10. 7. 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88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양곡관리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영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곡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회계와 기금의 회계사무 취급은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규정과 관련되는 내용을 변경하거나 또는 신설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회계단위) ① 회계의 회계단위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특별시, 광역시 및 각도(이하 “시·도”라 한다)로 한다.
② 기금의 회계단위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본부”라 한다)로 한다.

제4조(회계처리의 원칙) ① 이 회계와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서 회계처리하며, 국가회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을 그 발생의 사실에 따라 회계처리 한다.
② 이 회계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의 비용 및 수익에 관하여서는 그 발생의 원천에 따라 양곡관리특별회계와 양곡증권정리기금으로 명 확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계정의 구분) 이 회계는 정부기업예산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계정과 손익계정 그 밖에 필요한 계정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제6조(회계보고) ① 이 회계의 각종보고는 신속 정확을 기하여야 한다.

② 회계단위기관이 아닌 시와 군(이하 “시·군” 이라 한다)의 모든 거래는 발생할 때마다 관계 장부에 기입하고, 그 결과를 다른 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단위기관인 소속 상급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정기보고서는 해당실적이 없을 때에도 해당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정기일 안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보고로 마감될 때(연도중이라도 계속 제출할 필요가 없을 때에도 또한 같다)에는 『최종보고』라고 그 난에 주서표시를 한다.

④ 재고자산의 물품에 관한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누계는 회계연도와 양곡연도로 구분·표시한다.

2. 양곡 및 부산물 단위는 kg으로 한다.

제7조(회계관직공무원의 관직지정) 이 회계와 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과 임면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전표의 작성) ① 회계단위기관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는 발생할 때마다 계정과목별로 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기록이 전산매체에 의하여 관리되고 전산기억자료에 의해 보관되는 경우 전표작성은 생략하고, 전산시스템에서 생산되는 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전표의 작성은 거래가 발생한 날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계단위기관이 아닌 시·군에서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는 원 증빙이 되는 각종보고서를 접수한 날에 한다.

③ 제2항 단서에 의한 전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원 증빙이 되는 각종보고서가 월을 경과하여 접수되었을 때에는 제2항의 단서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월 말일 현재로 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장부의 종류) 이 회계의 회계장부는 주요부와 보조원장 및 명세장으로 구분한다.

제10조(주요부) ① 주요부라 함은 이 회계의 제반 거래를 기록, 계산, 정리함으로써 자산, 자본 및 부채의 증감 변동과 수익 및 비용의 수지로 인한 경

영성적을 파악하는 기본 장부를 말한다.

제11조(전표집계표 및 표철) ① 전표집계표란 대변대체전표와 차변대체전표를 계정과목별로 집계한 표를 말한다.

② 전표집계표철은 제1항의 전표집계표를 편철한 부책을 말한다.

제12조(총계정원장) ① 총계정원장이라 함은 계정과목 전부를 각 과목별 배열 순서에 따라 적정한 계좌를 설정하여 총괄기록, 정리하기 위한 장부(서식 제1호)를 말한다.

② 총계정원장은 회계단위 총계정원장과 총괄계정원장으로 나눈다.

③ 회계단위 총계정원장은 전표집계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④ 총괄총계정원장은 본부에 비치하고, 각 회계단위기관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시산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⑤ 회계단위기관의 총계정원장 작성자는 당월 거래발생에 대한 모든 사항을 관계보조부와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보조원장) ① 보조원장이라 함은 주요부에 대하여 보조적으로 각 계정의 명세를 기록 정리하는 장부를 말한다.(서식 제2호~제7호)

② 보조원장은 거래발생에 따라 전표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14조(보조원장의 비치) 보조원장은 계정별로 계좌를 설치하여 회계단위기관에 비치한다.

제15조(명세장) ① 명세장은 시·군 및 시·도에 비치하고 각 계정의 보조원장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기 위하여 거래내용을 분명히 하고, 거래 과정을 상세히 기입하는 내역표를 말한다.

② 명세장은 원 증빙서에 의하여 거래발생순으로 기입한다.

제16조(장부의 서식 및 비치기관) 이 회계의 장부서식과 장부종류별 비치기관은 별표 2와 같다.

제17조(장부의 보존기간) 장부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2장 양곡관리특별회계

제18조(계정의 분류)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세입·세출과목의 분류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안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르되, 기업회계결산을 위한 계정과목의 분류는 이 규정 별표 1에 의한다.

제19조(세입 소속연도) 세입금의 소속연도는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납입시기) 양곡, 부산물 및 기타물품의 매출대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따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1조(수납기관) 세입금의 수납기관은 한국은행 및 국고수납대리점(이하 국고대리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2조(전표작성자) ① 세입과 세출 및 관서운영경비의 출납에 대한 전표의 작성은 수입징수관과 지출관이 한다. 다만, 양곡 포장재료 및 부산물의 매매에 수반하는 출납에 대한 전표의 작성은 제5장에서 이를 따로 정한다.

제23조(세입경정의 처리) ① 징수결정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와 징수결정액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금액이 과다하게 수입 결의되어 이미 수납되었을 때에는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미지급금 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해약, 매출취소 등에 의하여 이미 수납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가 감액된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3. 해약 매출취소 및 징수결정의 중복 또는 착오로 인하여 징수된 금액에 과오납액이 있을 경우에는 징수 초과로서 환불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부족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추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4. 납입고지서의 오기, 중복발부 및 수납기관(국고대리점)의 불입오류에 의한 과오납액은 징수결정의 오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5.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세입이전의 징수초과에 대하여는 과오납분에 대한 그 사유 및 금액을 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징수결정의 오납이 있을 때에는 과오납반환결의서를 작성한 다음, 제5호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② 과오납금은 관계자로부터 과오납금의 환불금 청구서(서식 제8호)를 통해 내역을 확인한 후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17조에 따른다.

제24조(정부양곡관리비의 확인) ① 취급기관 또는 도급사업자가 양곡, 기타물품의 제 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양곡관리관 또는 분임양곡관리관에게 비용별(상하차료 및 부대비, 가공, 보관, 운송) 각종 확인서(보관, 가공실적, 운송, 작업보고)를 첨부한 청구서 4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청구서를 접수한 해당기관의 양곡관리관 또는 분임양곡관리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보고서 및 대장에 의하여 해당 사실을 대조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이 끝나면 청구서 및 작업보고서 4부중 1부는 양곡관리관이 보관하고 3부는 해당 양곡관리관이 증명 날인하여 1부는 도급 업자에게 교부하며 2부는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 및 도 양곡관리관(이하 시·도 양곡관리관 이라 한다)은 관계보고서와 서류 및 장부에 의하여 다시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비는 도착지 시·도 양곡관리관이 발행하는 도착확인증을 도급업자로 하여금 제출하게 하고 이를 확인한 다음, 제2항에 의거 증명하여야 한다.

⑤ 분임양곡관리관은 월보로서 정부양곡관리비 발생액 보고서(서식 제9호 및 부표1-4호)를 다음달 15일까지 소속 양곡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도 양곡관리관은 제5항의 보고서를 받았을 때에는 미지급금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5조(정부양곡관리비의 지출) ①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곡관리관 또는 분임양곡관리관이 확인 대조하여 이송한 청구서의 계수를 심사한 다음 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제3장 양곡증권정리기금

제26조(수입과지출)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양곡관리법과 국고금관리법 등 회계 관련 법규에 따른다.

제27조(준용) 수입금의 소속연도는 제19조, 납입 시기는 제20조 수납기관은 제21조, 전표작성자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제4장 세입 세출 외 현금 및 유가증권

제28조(시·군에서 출납하는 세입 세출 외 현금 및 유가증권) ① 시·군의 세입 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출납공무원이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별도의 전표를 작성하지 않고 매월 세입 세출 외 현금 및 유가증권출납명세보고를 다음달 5일까지 소속도의 세입 세출 외 현금 및 유가증권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의 세입 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보고서에 의하여 전표를 작성하고 관계 장부에 기입하여야 한다.

제5장 자 산

제1절 총 칙

제29조(일반유형자산) 일반유형자산은 고유한 행정활동에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집기·비품·차량운반구, 기타 일반유형자산 및 건설 중인 일반유형자산을 말한다.

제30조(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양곡, 부산물, 포장재료 및 훈증약제 등을 말한다.

제31조(기타자산) 기타자산은 제29조 및 제30조 규정 이외의 일반유형자산을 말한다.

제32조(일반유형자산과 재고자산의 분류정리) ① 일반유형자산의 분류는 국유재산법령 및 물품관리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류한다.

② 재고자산의 분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3조(일반유형자산과 재고자산의 관리) ① 국유재산법령과 물품관리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유형자산과 기타자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재산관리관 또는 물품관리관과 재고자산 관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양곡관리관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구분은 분임 회계직에도 준용한다.

제34조(일반유형자산의 가액) 일반유형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매입가격과 그 부대경비로 한다.
2. 일반유형자산의 취득에 있어 장기간 건설과정을 요하는 것은 건설임시계정의 가격으로 한다.
3. 관리전환에 의하여 수입한 자산은 발송기관에서 통지를 받은 가액으로 한다.
4.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 또는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액을 정할 수 없는 일반유형자산에 대하여는 감정기관의 감정조서 및 기타 가액평가의 자료에 의한다.
5. 교환에 의하여 취득한 것은 그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가액에 교환차액을 가감한 가액으로 한다.

제35조(재고자산의 가액) 재고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조곡 중 벼 : 연산별 정부매입 1등급가격
 2. 조곡 중 보리 : 연산별, 곡종별 정부인수가격에 인수비용을 포함한 가격
 3. 정곡 : 제1호 및 제2호의 가격에 정곡생산 시까지 제비용을 포함한 가격
 4. 수입양곡 : 도입연도 도입가격에 부대비용을 포함한 가격
 5. 포장재료 및 훈증약제 : 최종 구입연도의 취득가격
 6. 부산물 : 시·도별 고시가격
 7. 현 포장재 : 시·도별 최종연도 판매가격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중 제1호 내지 제4호의 가격을 연산별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제36조(예정가격) ① 예정가격이라 함은 제35조에 규정된 재고자산가액 평가가격으로 기업 회계 관리상의 계산가격을 말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고자산에 대한 매입 및 판매가격이 개정되면 제 3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과 가격개정시점을 결정하여 각 회계단위기관의 양곡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일반유형자산과 재고자산의 가액개정) ① 물가의 변동, 기타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일반유형자산의 가액이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따로 정하는 일반유형자산의 재평가요령에 의하여 재평가하여 가액을 개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유형자산 재평가요령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회계단위기관인 시·도에서는 재고자산에 대한 가액개정계산서(서식 제10호)를 작성하고 가액개정차액에 대한 전표를 작성한다.

④ 재고자산의 가격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예정가격 개정에 의한다. 다만, 가격개정시 시·도간 수송도중에 있는 재고자산에 대한 전표의 작성은 가격 개정 후 반입한 분에 한하여 반입기관에서 반출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개정된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관계 장부의 수량란에는 기입하지 아니하고 금액란과 적요란에만 가격개정 계산내역을 기입한다.

제2절 재고자산

제1항 총 칙

제38조(양곡년도) 양곡년도는 전년 11월 1일부터当年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신곡은 생산당년으로 표시한다.

제39조(지역별 수급조정) ① 농림축산식품부 양곡관리관(이하 본부 양곡관리관 이라 한다) 및 시·도 양곡관리관은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과 수요 및 재고상황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연간·분기별 수급판단을 실시하고, 이에 의하여 가공·조작 등 지역별 수급을 합리적으로 조정 운용하여야 한다.

② 본부양곡관리관은 제1항의 지역별 수급판단에 의하여 연간·분기별로 가공 및 조작 지시를 하여야 한다.

③ 시·도 양곡관리관은 제1항의 수급판단과 제2항의 가공 및 조작지시에 의하여 항시 적정재고가 유지될 수 있도록 월별로 균형 있게 가공 및 조작을 소속분임양곡관리관에게 지시하여야 한다.

제2항 매 입

제40조(매입구분) 매입이라 함은 생산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양곡을 정부가 매입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매입·기타곡 등으로 구분한다.

제41조(양곡의 매입절차) 국산양곡의 매입절차는 매입 시 별도로 정하는 공공비축미곡매입요령에 의한다.

제42조(매입양곡의 처리) ① 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 및 시·군·구 분임양곡관리관은 국산 양곡을 매입하였을 때에는 매일 매입양곡에 대하여 매입구분 및 곡종별 매입일계표(서식 제11호)를 작성하고, 양곡매입대장(서식 제12호) 및 양곡수불대장(서식 제13호)을 비치·기입하여야 한다.

②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양곡매입실적 보고서(서식 제14호)를 매입 종료 후 10일 이내에 소속 양곡관리관에게 보고하고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한다)사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도 양곡관리관 및 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일계표에 의하여 양곡매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시·도 양곡관리관은 양곡매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매입업무 종료 후 2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수입양곡의 인수) ① 수입양곡의 인수에 있어서 입항지의 시·도 양곡관리관 및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당일 인수분을 인계 작업 일지, 수입양곡인수대장(서식 제15호) 및 양곡수불대장에 기입한다. 다만, 입항지의 시·도 양곡관리관은 인수작업일지에 의하여 수입양곡인수대장 및 양곡수불대장에 기입한다.

② 입항지의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모선별 인수분에 대하여 수입양곡인수보고서(서식 제16호)를 모선별 인수 작업 완료 후 10일 이내에 현지 수입대항기관의 인수확인 및 하역업자의 작업확인증을 첨부하여 소속 양곡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당 시·도 양곡관리관은 제2항의 보고에 의하여 전표를 작성한 다음, 수입양곡인수대장, 수불대장 및 관계대장에 기입하여야 한다.

④ 입항지 해당 시·도 양곡관리관은 입항예정물량 인수 완료 후 15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포장재의 공급 및 관리지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포장용 포장재를 조달하여 시·도 양곡관리관과 포장재 취급기관(이하 취급기관이라 한다)에게 인수 및 관리를 지시하여 공급하며, 필요한 경우 정부관리양곡 가공공장이 자체 조달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포장재를 조달하여 공급한 때에는 도 양곡관리관은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에게 이를 인수 및 관리 지시하고, 특별시·광역시·양곡관리관이 인수 및 관리하며, 가공공장에 포장재를 자체 조달하여 사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포장재의 종류와 규격을 명시하여 가공 지시할 때에 일괄 지시하여야 하고, 그 대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45조(포장재의 인수도 방법) 정부양곡 포장재를 조달하여 공급할 경우의 인수도 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6조(포장재 인수 시 기장 및 보고) ① 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 및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인수증을 발행할 때에 관계대장에 기입한다.

②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포장재의 인수확인보고서(서식 제17호)를 분기말 다음달 10일까지 소속양곡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포장재인수확인보고서는 인수증 및 기타 계약에 명시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7조(포장재의 인수확인) ① 도 양곡관리관은 제46조 제2항의 인수보고 확인보고서를 접수하면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인수증에 날인된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의 인감이 이미 제출된 인감과 부합되는지를 대조 확인한다.

2. 동 보고서에 첨부된 인수증이 정확한지의 여부를 관계보고서 및 장부와 대조 확인한다.

3. 제2호의 대조확인결과 인수사항이 정확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불대장 및 관계대장에 기입한다.
4. 제3호의 기장은 인수 지시량에 대비하여 인수 실적량의 초과 및 미달량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3항 보관관리

제48조(보관창고의 등급) ① 정부관리양곡을 보관하는 창고의 등급은 특급·1급·2급·3급으로 구분한다.

② 창고의 등급결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9조(양곡의 보관) ① 양곡보관은 기탁보관으로 하되, 1급 이상의 창고에 보관하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시보관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2급 이하 창고에도 보관할 수 있다.

②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관내 정부양곡보관창고에 대한 보관 기탁우선순위를 창고시설의 우열과 관리자의 성실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고, 출고순위는 지정된 출고우선순위를 엄수하여야 하며, 출고순위가 따로 정하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선입선출 원칙으로 출고지시 하여야 한다.

제50조(보관업자의 이행사항) ① 본부 및 시·도 양곡관리관 또는 소속 분임양곡관리관은 정부관리양곡 보관도급계약의 약관에 의하여 정부관리 양곡관리 책임자에게 다음 각항의 의무를 부과, 처리하여야 한다.

② 보관양곡을 입·출고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보관업자가 기탁양곡을 입고할 때에는 품질상태를 파악하여 적절한 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기탁양곡을 출고할 때에는 제49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출고순위를 엄수하여야 하며, 출고순위가 따로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선입선출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정부관리양곡을 보관할 때에는 다음 적재방법에 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정부관리양곡은 연산별·곡종별·품종별(벼에 한함)·등급별·포장재료별·단위수량별로 구분 적재하여야 한다.
 2. 더미구성은 수량파악이 용이하며 견고하고 안전한 더미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방습불안전 창고는 깔판 위에 방습 조치를 하여 보관 중 습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④ 보관업자는 사명감이 투철하고 관리기술이 숙달된 관리요원을 고정 배치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관리요원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의 사전교육을 받은 자로 교체할 수 있다. 그러나 무인경비 시스템을 설치한 경우에는 관리요원 배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보관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한 관리 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⑥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 내 적정 온·습도 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보관업자는 온·습도 및 곡온을 매일(조곡은 주1회) 오전 10시에 측정하여 보관관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기간(11월 ~ 다음년도 4월)중 품위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1회 측정할 수 있으며, 강우 시 또는 창고외부온도가 10℃ 이하일 때에는 측정을 생략할 수 있다.

2. 충분한 환기시설을 확보하고 환기시설 및 출입문은 밀개폐가 가능하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창고내의 온·습도가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통풍·환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⑦ 병해충 및 쥐 피해방지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보관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해충 방제 및 쥐 피해방지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병해충방제 및 쥐 피해방지작업은 보관업자책임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훈증약제는 정부에서 무상 공급할 수 있다.

⑧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⑨ 보관업자는 정부관리양곡이외의 다른 물품과 다른 양곡을 보관할 수 없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1조(양곡의 안전관리) 시·도 양곡관리관 및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정부관리양곡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정부관리양곡을 보관 및 가공하는 자에게 다음사항을 이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양곡의 보관창고 및 가공공장에 소방법이 정한 소방시설설치 등 각종 조치사항

2. 창고 및 가공공장 내부의 백열등에는 이중갓 설치

3. 창고 및 가공공장에서의 화기엄금
4. 숙직실, 취사실 등 화기취급시설은 창고 및 가공공장 건물과 격리설치
5. 창고 및 가공공장의 인접한 장소에 인화물질 존치금지
6. 발화우려 부위(전선, 승강기축 등)의 먼지 제거
7. 창고 및 가공공장의 울타리, 지붕, 벽체, 바닥 등 파손부분의 개보수
8. 창고 및 가공공장 주변의 배수구정비
9. 태풍·폭우 등에 대비한 수방대책과 도난방지를 위한 방법대책
10. 사고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점검 및 순찰실시
11. 기타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

제52조(지도, 점검) ① 시·도 양곡관리관 또는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양곡의 안전관리 조치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 보관창고의 보관관리 지도·점검 및 확인과 부실창고에 대한 제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의 점검은 타 규정 및 요령에 의한 지도·점검 시에 병행 실시 할 수 있다.

제53조(시정조치) 시·도 양곡관리관 또는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경고, 가공중지, 타 창고이교 및 도급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제54조(훈증소독 상황보고)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훈증소독 실시상황을 연보로 1월 10일까지 시·도 양곡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 양곡관리관은 훈증실시 상황을 1월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서식 제18호)하여야 한다.

제55조(입·출고) ① 보관업자가 물품을 입·출고할 때에는 시·도 양곡관리관 및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이 발행하는 인수도 지시서(서식 제19호) 및 작업지시서(서식 제20호·21호)에 의하여 물품을 대조 확인한 다음 입·출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도 양곡관리관 및 시·군 분임양곡관리관 또는 동 대리양곡관리관의 인

감은 미리 보관 업자에게 통지하고, 보관업자로 하여금 인감을 비교 확인한 다음, 입·출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6조(보관에 관한 장부 및 보고) ① 시·도 양곡관리관 및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보관업자로 하여금 물품의 인수도지시서 및 작업지시서에 의하여 정부관리양곡 보관대장(서식 제22호, 제23호) 및 기타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입·출고 사실에 대하여 다음날까지 시·도 양곡관리관 및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에게 보고(서식 제24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시·도 양곡관리관 및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해당 인수지시서 또는 작업지시서와 대조 확인한 다음, 양곡보관대장 및 양곡수불대장에 기입하고 동 보고서에 확인·날인을 하여야 한다.

제57조(양곡보관상황보고)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매월 양곡보관상황보고서(서식 제25호)를 다음달 5일까지 소속양곡관리관에게 보고하고, 시·도 양곡관리관은 1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8조(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 시설현황보고) 시·도 양곡관리관은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 시설현황(서식 제26호, 및 부표 1)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9조(재고조사) 물품의 재고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에 의한 재고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정기재고조사는 연 2회 3월말·10월말 기준으로 실시하고, 임시재고조사는 필요에 따라 수시 실시할 수 있다.
2. 재고조사요령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항 수 송

제60조(도간수송) 도간수송이라 함은 각 회계단위기관간의 재산관리전환을 말한다.

제61조(도간수송지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고자산의 연간 시·도별 수급사정을 감안하여 도간수송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도간 반출입을 시·도 양곡관리관에게 지시한다.

② 제1항의 지시를 할 때에는 도간수송의 합리화 및 수송 계획 상 필요한 사항을 책정하여 관계 시·도 양곡관리관에게 지시한다.

제62조(반출 시·도의 수송지시) ① 제61조의 도간 수송지시를 받은 반출 시·도의 양곡관리관은 본부 지시 및 반출상대 시·도 양곡관리관의 착지별 반입요청에 의하여 관내 시·군별, 곡종별, 품종별, 월별 수급사정과 보관, 가공, 수송 및 기타 사정을 감안하여 수송실행계획(서식 제27호)을 수립하고, 동 계획에 의하여 관할 반출시·군의 분임양곡관리관에게 수송지시를 하여야 한다(특별시·광역시양곡관리관은 취급기관에 동 지시를 하여야 한다).

② 반출 시·도의 양곡관리관은 중계 수송이 필요할 때에는 해당 중계 시·군의 분임양곡관리관에게도 지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수송실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별 수급을 감안하고, 수송비용 절감원칙에 의하여 반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자의 요청이 있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정곡의 수송은 도정공장에서부터 직접 수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가공원료용으로 수송 지시되었을 때에는 도정공장에 직송한다. 다만, 원료량을 다른 시·도에서 반입할 때, 도정공장의 보관여석이 부족할 경우에는 인근 보관창고에 임시 보관할 수 있다.

3. 철도, 해상 및 육로수송 등의 연결조작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일관작업에 의하여 수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수송지시물량은 가능한 한 수송량 단위로 수량을 책정하여야 한다.

④ 반출 시·도의 양곡관리관은 착지요령을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해당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에게 지시(특별시·광역시양곡관리관은 취급기관에 동 지시를 하여야 한다)하여야 한다. 중앙지시량은 일부만을 유보시킬 수 없으며 다만, 양곡수급관리 상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시할 수 있다.

⑤ 시·도 양곡관리관이 반출지시를 할 때에는 지시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반입 시·도의 양곡관리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수송업체에 적기에 수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요청 하여야 한다.

제63조(반출지의 수송실행계획) ① 반출 시·군의 분임양곡관리관은 소속양곡관리관의 지시(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은 본부양곡관리관)에 따라 수송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1. 해당공장 또는 보관창고에 반출을 지시하고, 중계 시·군의 분임양곡관리관에게 통보한다.

2. 각 업무담당자에게는 작업지시를 발급하여 작업하게 하여야 한다.

② 중계 시·군의 분임양곡관리관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송실행계획을 수립, 각 업무담당자에게 작업지시서를 발급하여 작업하게 하여야 한다.

제64조(반입 시도 및 시·군의 수송지시) ① 반입 시·도의 양곡관리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시·도별, 곡종별, 품종별 수급사정 및 보관 등 관련 사항을 감안한 수송계획 (서식 제28호)을 수립하여 반출 시·도에 착지를 통보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반입 시·도의 양곡관리관은 반출 시·도의 수송지시통보에 의하여 해당 시·군 분임양곡관리관(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은 취급기관)에게 수송 지시함과 동시에 관계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반입 시·군의 분임양곡관리관은 소속양곡관리관의 수송지시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반입을 예고하고, 작업지시서를 발행하여 작업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65조(군간 및 군내수송) ① 군간 수송은 동일 회계단일기관 안의 시·군 분임양곡관리관 상호간의 재고자산 관리전환을 말하고, 군내수송은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이 자기 책임 하에 위탁보관하고 있는 재고자산을 자기소관안에서 이동하기 위한 수송을 말한다.

② 시·도 양곡관리관 및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관할 시·군별, 곡종별 수급사정과 가공·보관 및 기타사정을 감안하여 군내 또는 군간 수송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도간수송의 절차에 준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6조(수입곡의 인수와 수송) ① 수입양곡은 수요자 항구에 입항시켜 인수 및 수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요지항만의 하역사정으로 정상하역이 어려운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수입양곡의 인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수입업무 담당기관 간에 체결한 협정서 또는 계약서에 의하고, 수송은 제62조, 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③ 수입양곡 포장재(P.P대, P.E대, 지대 등)는 포장작업 개시 전에 관계기관 입회하에 계량하여 포장재의 매당 평균 단량을 결정한다.
- ④ 포장작업은 포장재 평균 단량과 지정된 실중량을 합산한 총중량에 맞추어 포장한다.
- ⑤ 입항지의 광역시 양곡관리관 및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인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67조(수송기관의 제한) ① 수송은 육로 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송비용이 절감될 때는 예외로 한다.

- ② 입항지에서의 수입현미 수송조작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③ 수송은 육로 편을 이용할 경우 최단거리를 택하여야 한다.
- ④ 양곡수급 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긴급 도간수송을 지시한 때에는 철도수송과 육로수송을 병행할 수 있다.

제68조(반출지의 반출작업) 반출 특별시·광역시의 양곡관리관 및 시·군의 분임 양곡관리관은 물품의 반출작업을 다음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반출양곡에 대하여는 인수도당사자(창고업자, 가공업자, 수송기관등)간에 이의가 있어 점검을 요청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군수는 농관원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점검을 의뢰하여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2. 각도 운송담당업자에게 그 담당 작업을 서식 제29호 및 제30호에 의하여 신속·정확히 처리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3. 작업에 입회한 직원은 작업일지를 기록하여 복명한다.

제69조(반출지의 작업보고 및 기장) ① 반출 특별시·광역시의 양곡관리관 및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각 작업담당자로부터 매 작업지시서에 의한 작업결과를 보고(서식 제31호)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작업증명서(서식 제32호)를 발행하여야 한다.

- ② 반출 특별시·광역시의 양곡관리관 및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도간 또는 군간 수송을 담당할 수송기관으로부터 지체 없이 발송 보고(서식 제33호)를 받아야 한다.
- ③ 해상수송을 할 때에는 반입 특별시·광역시의 양곡관리관 및 시·군 분임양

곡관리관은 선장과 하역작업자간에 작성한 하역협정서(서식 제34호)를 선장으로부터 지체 없이 받아야 한다.

④ 반출 특별시·광역시의 양곡관리관 및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고 발송통지서를 작성하여 발송도착내역부(서식 제35호)에 기입하고,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소속양곡관리관과 반입 시·군의 분임양곡관리관의 보고에 의하고 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은 발송통지서에 의하여 전표를 작성한 다음, 제71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⑤ 반출 특별시·광역시의 양곡관리관 및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검근을 필요로 할 때에는 관계업자의 입회하에 검근하여 검근표(서식제36호)를 작성하게 하고 필요할 때에는 발송보고서 또는 하역협정서에 첨부한다.

제70조(포장재 송증발행) 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 및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취급기관이 작업지시서에 의하여 포장재 발송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송증(서식 제37호) 6부(도간 수송 시에는 7부)를 발행하여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1. 포장재 송증 발행대장(서식 제38호)에 기입한다.
2. 1부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에 비치하며,
3. 4부(정본 1부, 부분 3부)는 취급기관에 교부한다.
4. 1부는 확인보고시에 도에 제출한다. 다만, 도간수송 시에는 2부를 제출한다.

제71조(반출 시·도의 전표작성 및 통지) 반출 도의 양곡관리관은 관내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의 발송통지서를 받고, 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송증을 발행하여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1. 도간반출분에 대하여는 상대 시·도로 대체하는 전표를 작성한다.
2. 도간반출분은 제1호의 전표에 의하여 발송도착내역부 및 관계대장에 기입하고, 반입 시·도의 양곡관리관에게 발송통보를 하며, 반입 시·도 양곡관리관의 도착 통보를 받아 발송도착내역부에 그 전말을 기입한다.
3. 군간 반출분에 대하여는 발송통지서에 의하여 반입 시·군으로 대체하는 전표를 작성하고, 발송도착내역부등 관계대장에 기입한다.

제72조(반입지의 반입 작업) 반입 특별시·광역시의 양곡관리관 및 시·군 분임양

곡관리관은 물품의 반입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각 작업담당자에게 즉시 작업지시서를 발행하고,
2. 양곡 하역 시 품위이상 등으로 인한 당사자간의 이해가 대립되는 경우 시도양곡관리관 및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관할 농관원 지원장 및 사무소 장에게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3. 각 작업담당자에게 그 담당 작업을 서식 제21호 및 제33호에 의하여 신속 정확히 처리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4. 작업에 입회한 직원은 작업일지를 기록하여 복명하여야 한다.

제73조(반입지의 작업보고 및 기장) ① 반입 특별시·광역시의 양곡관리관 및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지체 없이 작업담당자로부터 매 작업지시서에 의한 작업결과를 보고받아야 한다.

② 포장재에 대한 제1항의 작업보고서에는 포장재 수취인의 수취증(서식 제39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해상수송을 할 때에는 반입 특별시·광역시의 양곡관리관 및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선장과 하역자간에 작성한 하역협정서를 지체 없이 선장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④ 반입 특별시·광역시의 양곡관리관 및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도간 및 군간 수송을 담당한 운송업자로부터 도착보고(서식 제25호, 제28호)를 지체 없이 받아야 하며, 이때 수송을 담당한 운송업자는 도착지의 보관업자(또는 역장)이 발행하는 물품인도증명서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⑤ 반입 특별시·광역시의 양곡관리관 및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제4항의 보고에 의하여 발송도착내역부에 기입한 다음, 반출 특별시·광역시의 양곡관리관 또는 시·군 분임양곡관리관(반입 시·군의 분임양곡관리관은 소속 양곡관리관에게도 보고)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반입 시·도의 양곡관리관은 수송을 담당하는 운송업자에게 『도착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검근 및 제 작업증명서 발급을 반출업무에 준한다.

제74조(포장재 수령증 발부) 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 및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취급 기관이 작업지시서에 의하여 포장재 반입작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포장재 수령증(서식 제41호) 6부(도간 수송 시에는 7부)를 발행하여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1. 포장재 수령증 발행대장(서식 제38호)에 기입하고
2. 1부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에 비치하며
3. 4부(정본1부, 부분3부)는 취급기관에 교부하고
4. 1부는 확인 보고할 때에 소속 도에 제출한다. 다만, 도간 수송을 할 때에는 2부를 제출한다.

제75조(반입 시·도의 전표작성 및 통지) ① 반입 도의 양곡관리관은 관할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의 도착통지서를 받고, 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은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증을 발행하며,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1. 도간 반입분에 대하여는 상대 시·도로 대체하는 전표를 작성한다.
 2. 도간 반입분은 발송도착내역부 및 관계대장에 기입하고, 반출 시·도의 양곡관리관에게 도착통보를 하여야 한다.
 3. 군내 반입분에 대하여는 도착일자에 의하여(전월 발송분과 당월 발송분을 구분하여 전표를 작성한 다음) 발송도착내역부등 관계대장에 기입한다.
 4. 군간 수송에 있어서 발송도착내역부에 월말 현재 수송 중인 양곡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전표를 작성하고, 군간 미반입대장에 기입하여야 한다.
- ② 반입 시·도의 양곡관리관은 반출 시·도로부터 받은 발송통보에 의하여 발송도착내역부에 그 내역을 기입한다.

제76조(수송실적보고) ① 시·도 분임양곡관리관은 양곡 도간 수송지시 대 실적을 분기별로 다음달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서식 제42호 및 부표 1)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별, 분기별 수송대조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② 시·도 양곡관리관은 포장재 반출입 상황표를 수불보고서에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양곡과 동 포장재의 시·도 및 시·군간 수송 대조 확인은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시·도간 수송 대조 확인은 분기별로 연4회(3·6·10·12월말현재)
 2. 시·군간 수송 대조 확인은 시·도간 수송 대조 확인에 앞서 분기별로 연4회

제77조(포장재 도내수송확인) ① 도입양곡관리관은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이

제출한 수송확인보고(포장재 송증 및 수령증)를 접수하면 송증 및 수령증에
날인된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의 인감과 미리 제출된 인감과의 상위여부를
확인하고, 도의 포장재 발송도착내역부에 대사하여 도 지시내역, 수송기한
및 수령일자의 상위여부를 확인한다.

② 취급기관이 수송비를 청구할 때에는 도급계약이 정한 지급기관의 양곡관
리관 또는 분임양곡관리관에게 송증 및 수령증을 첨부한 청구서 3부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시·도 양곡관리관 또는 분임양곡관리관은 제2항의 청구서를 받아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포장재 발송도착내역부(도양곡관리관은 이미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이 확
인하여 제공한 포장재 송증 및 수령증) 및 관계서류와 대조 확인한 다음
2. 수송확인증(서식 제43조, 양곡은 이에 준함)을 발행하며,
3. 운송업자의 청구서 부분 1부(도 양곡관리관은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의 확
인보고서)를 비치하고, 청구서 2부를 시·도 분임양곡관리특별회계 재무관에
게 이송하여야 한다.
4. 제3호의 청구서 이송에 있어서는 반드시 별도 장부에 기입하여야 한다.
5. 제4호의 기장으로 수송의 이종 확인 등 착오가 없도록 정확을 기하여야
한다.
6. 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청구서 원본과 동 내역을 기입한 장부를 반드시 비
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항 가 공

제78조(공장별 원료배정비율) ① 시장·군수는 정부양곡도정공장의 기계, 시설
등의 계약기준 등을 기초로 한 가공능력, 매입량, 가공원료 및 제품수송여
건, 기타 가공에 따른 기계, 시설, 환경 등의 제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
토하여 농관원 사무소장 및 곡물협회의 시·군 회원과 협의, 공장별 도정원료
배정비율을 결정하되, 시도지사는 시·군의 행정구역에 인접지역권 구성과 역
수송방지를 위하여 가공재고량, 가공 및 수송, 기타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인접 시·군지역의 가공원료를 합리적으로 배분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가공원료 배정비율은 생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의 변동이
없는 한 해당 양곡 연도 안에는 변동하지 아니한다. 다만, 양곡수급 상 긴급

하거나 수요자의 요청 등 양정업무 집행 상 필요할 때에는 본 원료 배정비율에 구애 없이 변경·실시할 수 있다.

- ③ 원료 배정배율을 적용하기 위한 역수송을 금한다.
- ④ 시장·군수가 공장별 가공원료 배정비율을 결정하였거나, 시·도지사가 시·군간 원료배정을 조정하였을 때에는 즉시 협회 시·도지회장에게 통보한다.
- ⑤ 각 도정공장별로 도정원료를 공급할 때에는 역수송이 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지역별·등급별 원료품위가 균형되도록 배분한다.

제79조(가공지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에 의하여 시·도 양곡관리관에게 다음 각호에 의하여 일괄 가공지시하고 농관원장에게 통보한다.

1. 가공대상물량에 대하여 제품의 용도(군·관수용, 학교급식용, 사회복지용, 가공식품용 등) 및 가공방법(단일곡, 혼합곡, 합성곡)을 검토한 다음에 결정하여야 한다.
 2. 혼합·합성원료곡으로 가공하여 타 지역(시·도) 수요에 충당(조작)하여야 하는 양곡에 대하여는 수요지의 가공 상대곡 및 재고, 가공능력, 가공상황, 수요시기 등을 감안하여 제반비용(원료수송비, 가공임, 포장재료비, 합성임, 제품수요지 수송비 등)이 절감될 수 있도록 발지에서 가공하여 정곡으로 수송할 것인가 또는 가공원료를 수송하여 수요지에서 가공할 것인가를 판단하여 가공지시하여야 한다.
- ② 도 양곡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된 가공량을 시·군별 양곡 수급과 수송사정 및 가공능력을 감안하여 시·군 분임양곡관리관(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은 도정공장)에게 가공 지시함과 동시에 동 지시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농관원 시·도 지원장 및 대한곡물협회 시·도 지회장에게 통보한다.
- ③ 시·도 양곡관리관과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양곡가공지시서 접수일로부터 다음 기일 안에 가공능력을 감안하여 재가공지시하고 양곡가공지시대장(서식 제44호)과 양곡가공원료재고대장(서식 제45호)을 정리하여야 한다.

구 분	시·도		시·군		도정능력적용
	도정지시기간	통신수단	도정지시기간	통신수단	
일반	5일 이내	우편, fax, e-mail	3일 이내	우편, fax, e-mail	평시
긴급	3일 이내	fax, 전화, e-mail	2일 이내	fax, 전화, e-mail	평시의 160% 적용

④ 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 및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가공지시량, 가공능력 및 기타여건을 감안, 가공기한을 명시하여 가공지시하고 농관원 사무소에 통보한다.

⑤ 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 및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가공지시 건별로 공급된 원료를 가공기한까지 전량 사용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0조(가공일보) ① 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과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도정공장의 가공원료 인수와 동 가공상황을 가공일보(서식 제46호)로 매일 보고받아 농관원 사무소장이 발급하는 양곡검사증(서식 제47호)과 대사하여 수검수량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② 농관원 사무소장은 가공지시 건별로 검사실적에 대한 양곡검사증 1부(청산분은 2부)를 발급하여 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 또는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도정공장은 최종 가공일보 작성 시 가공일보의 초과생산량 확인란에 신청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1조(가공보고 및 정리) ① 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과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도정공장에서 보고하는 가공일보에 의하여 양곡가공실적대장(서식 제48호) 및 관계수불대장에 가공원료공급, 제품 생산실적, 부산물, 포장재료 사용 및 회수실적 등을 기입한다.

②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제1항의 실적대장에 의하여 양곡가공실적보고(서식 제49호) 및 제품인수도 실적보고(서식 제50호)등 월보를 다음달 10일까지 소속양곡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보고를 받은 시·도양곡관리관은 동 보고에 의하여 제품별로 당월분 가공원료 공급, 제품, 부산물 및 현 포장재료 발생액에 대하여 전표를 작성하고 가공실적대장(서식 제48호)를 정리한다.

④ 도정공장에 공급한 가공원료를 다른 공장에 반출하였을 때에 해당 공장 가공실적대장의 원료공급란에 당초 수입전량을 흑서로 기입하며, 불출량은 주서로 기입하고 적요량에 『○○공장에 불출』이라고 주서로 기입한다.

제82조(가공성적계산 및 보고) ① 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과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가공이 완료되면 가공지시 건별·공장별로 도정수율에 의한 생산책

입량과 가공실적에 의한 가공성적보고서(서식 제51호)를 작성하여 과부족량을 산출하고 해당공장 계좌를 마감한다.

②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제1항의 가공성적계산결과에 의하여 가공성적보고서(서식 제51호)를 기말로부터 5일 이내에 공장별 청산분 양곡검사증 1부를 첨부하여 도양곡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과 제2항의 보고를 받은 도양곡관리관은 관계대장과 대조 확인한 다음, 지시건별로 양곡가공성적보고서를 작성하여 15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도 양곡관리관은 가공성적보고서의 가공부족량에 대하여 전표를 작성하되, 납품부족량에 대하여는 흑서로, 과잉량에 대하여는 주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83조(가공청산) ① 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과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가공성적 계산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산 조치하여야 한다.

1. 가공지시 건별·공장별로 가공마감 시에는 제품 및 부산물의 생산책임량을 납품토록 하여야 하며, 생산책임량 대비 과부족량이 있을 때에는 다음에 의하여 처리한다. 다만, 생산책임량이 결정되기 전에는 생산된 제품과 부산물 전량을 납품토록 하여야 한다.

(가) 부족량은 가공업자 책임 하에 변상한다.

(나) 초과량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한 바에 따라 확인 절차를 거친 후 가공업자 소유로 귀속한다.

2. 지정된 가공 기한까지 가공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가공 미필량에 대한 검사완료 때까지의 제조작비 총액의 5/1,000를 지체상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3. 제82조 제1항의 가공성적계산결과 부족량 및 초과량의 처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한 바에 의하며 부족량의 변상은 가공마감일(수출 미시달 시는 수출 시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도정공장이 제3호의 기간 안에 청산을 이행치 아니할 때에는 청산 완료 시까지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청산 미필량에 대하여 제조작비 총액의 5/1,000의 청산지체상금을 징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청산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까지도 청산을 완료하지 아니할 때에는 3개월간 도정 중지 조치를 취한다.

6. 제5항의 기간까지도 청산을 완료하지 아니할 때에는 도급계약을 해지하

고, 시·도 재무관 및 출납명령관이 지불할 공제금 적립보증금에서 가공임 및 하역비를 공제 청산하여야 한다.

7. 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 및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도정공장이 부족량을 현물로 변상할 때에는 가공일보 양식에 준하여 도정공장에서부터 보고를 받아야 한다.
 8. 시·도 양곡관리관은 제7호의 보고에 의하여 가공청산대장과 수불대장에 기입하여야 한다.
 9. 제품부족량을 현물로 변상할 경우에는 동 변상량에 대한 포장재료와 가공비용을 포함하여 지급한다.
- ② 시·도 양곡관리관(또는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공급된 원료곡을 전량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전량을 현물로 환수 조치하여야 하며, 임의처분으로 현물이 없는 경우에는 정부관리양곡 판매원가(미강은 별도 정하는 변상가격, 미강이외 부산물은 고시가격)로 현금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1. 공급된 원료곡의 일부를 은닉 또는 임의 처분한 경우
 2. 제품(부산물 포함)을 납품하지 아니하고 은닉 또는 임의 처분한 경우, 다만 확인절차를 거친 초과생산제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4조(청산처리보고 및 전표작성) ①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양곡가공과부족량 청산보고서(서식 제52호)를 소속양곡관리관에게 기말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 또는 상계 청산하였을 때에는 상계청산내역서(서식 제52호 부표1)에 기입하고 상계청산내역표(서식 제52호의 부표 2)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도 양곡관리관은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의 양곡가공청산보고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은 공장별 청산상황에 의하여 양곡가공청산대장에 기입하되 부족량은 수입은 흑서로, 과잉량의 반환은 주서로 기입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 또는 상계청산을 할 때에 전표를 작성하고, 도 양곡관리관은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이 보고한 수입징수명세표와 상계청산내역표를 부표로 첨부하여야 한다.

제85조(본부가공) 양곡수급 상 본부에서 직접 가공이 필요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지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 제86조(가공생산제품) ① 도정공장은 그 책임 하에 합격품을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도정공장이 최선을 다하여도 불합격 제품 밖에 생산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전에 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 또는 시·군 분임양곡관리관과 농관원의 원료품질에 대한 확인을 얻어 불합격품을 생산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단서의 불합격품 청산처리는 합격품에 준한다.

제87조(제품 및 부산물의 생산책임량 산출방법) ① 제품 및 부산물의 생산책임량은 가공지시 건별로 가공지시와 원료곡의 양에 도별·모선별·곡종별·유형별·품종별·기별·등급별 해당수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② 제1항의 수율적용은 가공지시일을 기준한 해당기 수율을 지시된 전량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중복가공지시 및 기말가공 지시로 가공능력에 비하여 가공지시량이 과다하여 해당기안에 가공이 완료되지 못하고 차기로 이월 가공되는 물량의 수율적용은 가공능력 대비초과량에 한하여 차기수율을 적용한다.
2. 가공 중지된 물량을 가공중지 해제하였을 경우에는 시·군의 해제 지시일을 기준한 해당기 수율을 적용 청산하되, 당초 가공지시일까지 가공능력 대 가공실적이 미달되는 양에 대하여 당초 가공지시 당시의 수율을 적용한다.
3. 가공능력은 공장별·곡종별로 실가공능력을 적용하되, 실가공능력이 양곡관리법시행규칙 제5조의 시설기준능력에 미달될 때에는 동 시설기준능력을 적용한다.
4. 각종 수율은 결정 및 접수 즉시 가공(도정)공장에 시달하여야 한다.

제88조(국산양곡의 가공기별) 국산양곡이 가공기별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미곡

- 제1기 : 1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 제2기 : 익년 1월 1일부터 3월까지
- 제3기 : 4월 1일부터 6월말까지
- 제4기 : 7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2. 맥류

- 제1기 : 7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 제2기 : 1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 제3기 : 익년 1월 1일부터 3월말까지
- 제4기 : 4월 1일부터 6월말까지

제89조(양곡도정시험실시)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양곡도정시험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농관원, 시·도지사 등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② 농관원장은 제1항의 계획에 의해 정부관리양곡도정수율시험실시요령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부관리양곡도정수율시험실시요령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따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90조(가공원료 사고품 처리) 인도 당시 포장의 서식, 내용물의 절취흔적이 현저한 사고물에 대하여는 가공원료로서 공급할 수 없다.

제91조(공장대장 및 목록의 비치) 각 회계단위의 양곡관리관 및 분임양곡관리관은 관내 정부관리양곡 도정공장대장(서식 제53~55호)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2조(제품포장) ① 이 회계 소유 포장재로는 정부관리양곡포장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목적이외에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할 경우에는 사후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만약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사용책임자는 동 규격의 품종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93조(가공생산제품 포장재의 공급) ① 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 및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해당 행정지역의 수급사정을 감안하여 양곡가공에 지장이 없도록 포장재를 도정공장에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도정공장에 자체 조달하여 사용하게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공급계획은 일부 도정공장에 편중되거나 과잉 보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포장재의 사용은 가공제품 생산 실적량(포대수)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포장규격 단량 미만의 가공생산량이 생길 때에는 동 생산량에 대하여 포장재 1매를 공급할 수 있다.

④ 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 및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가공공장이 포장재 인수도 및 보관관리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 및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취급기관으로 하여금 포장재를 수령하게 하였을 때에는 수령증을 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포장재의 관리는 품위유지에 손상이 안 되는 안전한 시설 안에 보관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 및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이 포장재의 용도를 명시한 사용량보고서(서식 제56호)를 요구할 때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포장재수불대장을 비치하고 수불상황을 기입한다.
 - ⑤ 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 및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제4항을 위반한 도정공장에 대하여는 포장재의 공급을 중지할 수 있으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포장재 공급중지 및 행정조치를 하였을 경우 즉시 상급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4조(가공제품포장) 제품포장은 농산물검사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준이 정하는 것과 다른 포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시에 의하여 실시한다.

- 제95조(포장재 사용량의 기록·보고 및 회계 처리) ① 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 및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가공일보의 포장재 사용량에 대하여는 제품포장실적대장(서식 제57호)과 포장수불대장(서식 제58호)에 기입하여야 한다.
- ② 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 및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가공청산결과 발생한 제품포장 부족량에 대하여 포장재를 추가 공급하였을 때에는 주서로, 제품포장 과잉량에 대하여 포장재를 반환받았을 때에는 주서로 해당제품 포장실적란에 기입한다.
- ③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포장재수불상황보고서의 부표로서 가공제품별 포장실적을 소속 양곡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도 양곡관리관은 포장재 사용량에 대하여 전표를 작성하되, 제품 가공 과잉량에 대한 포장재 반환량은 주서로 기입하여, 포장 재료비대장(서식 제59호) 및 관계대장에 기입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은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96조(현 포장재 회수비율) 양곡가공에서 발생한 현 포장재 회수율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7조(현 포장재 회수처리) 현 포장재 회수량은 정부가 현물로서 회수하거나

대가 청산하게 할 수 있으며, 정부가 현포장재를 현물로 회수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98조(포장재 파손품의 처리) 포장재중 지대, P.P대가 포장작업 또는 수송도중 파손된 때에는 관할 농관원 지원장 및 사무소장의 확인을 받아 그 대가를 현금으로 청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가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항 매 출

제99조(매출) ① 정부관리양곡의 매출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결정한다. 다만, 지방징수분 양곡으로서 군·관수용·학교급식용·사회복지용 및 기본방침이 결정된 양곡의 매출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 라 한다)가 매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곡매출이 결정되면 본부양곡관리관 또는 시·도 양곡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입징수관은 제2항의 매출통지서에 의거 양곡대금을 징수하고 이를 양곡관리관에게 통지하며, 양곡관리관은 소속분임양곡관리관에게 매출지시서를 발부한다. 다만, 시·군에서 대금을 징수하는 양곡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이 대금을 징수하여 매출할 수 있다.

④ 분임양곡관리관이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곡을 매출하였을 경우에는 매출결정과 동시에 소속양곡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도 양곡관리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매출량을 검토 확인한 다음 이를 매출 지시량으로 처리하여 양곡매출지시대장(서식 제60호)과 미인도양곡정리부(서식 제63호) 및 양곡매출지시 대 실적대장(서식 제62호), 양곡매출대장(서식 제61호)등 관계 장부를 정리하고 본부양곡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 및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본부 양곡관리관 또는 도 양곡관리관 또는 도 양곡관리관의 지시량 범위 안에서(시·군 징수분 양곡은 대금이 징수된 수량범위 안에서) 양곡매출지시서를 발행하여 인수도기한까지 현물을 인수도하게 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인수도기한은 특별시·광역시는 양곡인수도지시서 발급일로부터 3일, 시·군은 5일 이내로 한다.

제100조(양곡매출지시서의 기재사항) 본부 양곡관리관 또는 시·도 양곡관리관이 발행하는 제99조 규정의 양곡매출지시서(서식 제64호)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곡 종 (품종별)
2. 수 량
3. 매출단가
4. 총 액
5. 대금징수기관
6. 대금징수여부(외상, 현금 등)
7. 매출처명
8. 인도시기
9. 기 타

제101조(양곡매출통지와 전표작성) ① 시·도 양곡관리관과 시·군·분임양곡관리관은 해당 소속기관의 대금징수분 매출양곡에 대하여 양곡매출통지서(서식 제65호)의 정본과 부본을 각각 3부씩 발행하여, 이를 해당기관의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수입징수관은 제1항의 양곡매출통지서에 의하여 대금납입고지서 및 양곡매출통지서 정본을 매입자에게 교부하고 부본 1부는 일시보관(부본 1부는 수입결의서에 첨부)한다.

③ 양곡매출통지서를 발급할 때에는 동 발생대장에 기입하여야 한다.

제102조(매출지시 및 전표작성) ① 수입징수관은 양곡매출대금 수납을 확인한 후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된 양곡매출통지서 부본 1부에 대금수납사항을 기입하여 동 통지서 발행관에게 회송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본부 양곡관리관 또는 도 양곡관리관은 각 산하기관에 양곡매출지시서를 발행하며, 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 및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보관업자와 매입자에게 동 지시서(시·군 징수분은 통지서)에 의하여 양곡인수도지시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③ 본부 양곡관리관 및 시·도 양곡관리관은 소속기관 또는 상급기관의 대금징수분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양곡매출지시서에 의하여 전표를 작성한다. 만약, 시·도 양곡관리관이 본부 징수분에 대한 매출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그 매출지시분에 대하여 본부로 대체하는 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보관업자는 제2항의 양곡인수도지시서와 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 또는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이 인감을 대사확인한 다음, 수배자에게 양곡을 인도하고 다음날까지 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 또는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에게 출고일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각 회계단위기관의 양곡관리관은 양곡매출지시대장을 대금징수구분별로 비치·정리하여야 한다.

제103조(양곡매출상황보고 및 전표작성) ①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대한 양곡인수도지시서와 제102조 제4항의 출고일보를 대사한 다음 출고일보에 의하여 수불대장에 기입하고 대금징수 구분별·양곡매출 지시서 별로 매출대장에 기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은 확인된 출고일보에 의하여 전표를 작성한 다음 관계대장에 기입하여야 한다.

②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제1항의 대장에 의하여 기보로서 징수 구분별 양곡매출상황보고서(서식 66호) 및 부표 1·2를 작성하여 소속관리관에게 분기말의 다음달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보고를 받은 도 양곡관리관은 양곡매출상황보고서를 양곡매출지시대장과 대조 확인한 다음 지시량 범위 내일 경우에는 전표를 작성하고 관계대장에 기입한다. 다만, 시·군 징수분에 대하여는 동 보고서와 시·군 수입징수 보고서 부표인 수입명세서와 대조 확인한 다음 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시·도 양곡관리관은 제3항의 대장에 의하여 기보로서 대금징수구분별 양곡매출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분기말의 다음달 3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104조(부산물물의 매출) ① 부산물은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시장·군수가 매출한다. 다만 수입양곡 부산물에 한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 및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부산물 수불대장(서식 제67호)을 비치하여 부산물 생산·매출 및 재고를 파악하여야 한다.

④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부산물매출보고서(서식 제68호)를 월보로서 다음달 10일까지 도 양곡관리관에게 제출하며, 월보를 받은 도 양곡관리관은 수입명세서와 대조 확인한 다음 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은 부산물 매출보고서와 수입명세서를 대조 확인한 다음 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5조(수급대장 및 수불대장) ① 양곡의 수급상황과 가용재고의 추산을 위하여 본부 양곡관리관과 시·도 양곡관리관은 양곡수급대장(서식 제69호, 제70호)을 비치하고 각종 지시 및 보고서에 의하여 수급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시·도 양곡관리관과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양곡과 포장재료 및 부산물의 수불대장을 비치하여 기간별·항목별·품종별 수량이 관계대장과 상호 일치하는지 여부를 수시 확인하고 수입과 불출을 정확히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제106조(수불상황보고) ①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양곡과 부산물 및 포장재료에 대하여 각 수불대장에 의거 수불상황보고서(서식 제71호 및 부표 1-5호, 제72호 및 부표 1-3호)를 기보로서 분기말의 다음달 15일까지 소속 양곡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 양곡관리관은 수불부(도 양곡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수불상황보고서와 대사·확인한 다음 집계)에 의하여 수불상황보고서를 작성하고 분기말의 다음달 3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절 재고자산 사고처리

제107조(사고발생보고) ① 재고자산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 군수는 그 진상을 조사하여 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즉시 보고(서식 제73호)하여야 한다.

② 사고발생보고서에는 사고발생책임자의 경위서(서식 제74호)에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업무상의 부정, 도난 또는 화재로 인한 사고는 검찰기관장이나 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증명서(경위서에 증명하여도 무방함),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에는 심급별 판결문 등본 또는 사본
2. 수송사고 시에는 관계기관이 증명한 서류
3. 부패·변질 등으로 인한 사고는 농관원이 증명하는 서류
4. 사고현장을 조사하였을 때에는 그 조서 사본
5. 기타 관련 증빙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보고에 있어서 단시일 내에 관계서류의 구비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개황을 우선 보고하고 수시 중간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08조(사고가 발생한 때의 전표작성) 도양곡관리관은 제106조 제1항의 사고발생보고에 의한 사고량에 대하여 전표를 작성하고 양곡사고발생 및 처리대장(서식 제75호)에 기입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은 사고발생을 확인한 때에는 전표를 작성하고 관계대장에 기입한다.

제109조(사고처리구분) ① 시·도간 수송 중의 사고는 발송지 시·도지사책임하에 처리하되 발생지 시·도지사는 사고처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사고는 시·도지사가 처리하되 도지사는 그 처리요령을 사고발생지 시장·군수에게 지시하고 시장·군수는 사고 책임자에게 지시한다.

제110조(사고의 변상) ① 재고자산의 사고에 대한 변상은 현금변상을 원칙으로 하되 양정 수행상 필요한 경우와 현금변상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물 또는 대곡으로 변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불가항력의 사고로 인정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한 변상은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현금 변상 시에는 정부관리 양곡판매원가(미강은 별도 정하는 변상가격, 미강이외의 부산물은 고시가격)로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2. 현물 변상은 양곡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근 연산의 동일 곡종·동일품종으로 부산물 등 임치물은 동일 품종으로 하며 대곡변상은 미곡 또는 대맥 및 과맥에 한하되 대곡 변상량은 변상 당시의 사고양곡과 대곡의 정부관리양곡판매원가에 의하여 환산한다. 다만, 동일품종으로 변상하지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동등품 이상의 타품종으로 변상할 수 있다.

③ 사고변상은 변상지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상 완료하여야 한다.

④ 재고자산의 변상은 시·도간 수송중의 사고는 발송지의 시·도에, 그 밖의 사고는 해당 시·도에 하여야 한다. 다만, 타 시·도에 변상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1조(변상수입의 기장)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 받았을 때에는 납입영수증 또는 입고증을 원증빙으로하여 양곡 사고발생 및 처리대장에 기입하여야 한다.

제112조(정기보고 및 회계처리) ① 시장·군수는 재고자산 사고발생처리내역보고서(서식 제76호, 서식 제77호 및 부표 제1~2)를 연보로 1월10일 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1월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서식 제77호 및 부표 제1~2)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양곡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 사고발생 및 처리내역보고서에 의하여 즉시 그 처리상황에 대한 전표를 작성하고 사고발생 및 처리대장에 기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은 납입영수증 또는 입고증에 의하여 전표를 작성하고 관계대장에 기입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표작성에 있어서는 현금변상수입에 대하여 관계수입명세서와 대조 확인한 다음에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표를 작성할 때에는 변상액이 사고량에 대한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잡익으로 처리한다. 다만, 변상액을 감면했을 경우에는 해당 감액은 잡손으로 처리한다.

⑤ 제110조 제4항 단서 조항에 의하여 타 시·도에서 변상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변상을 받은 분임양곡관리관은 즉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준하여 소속 양곡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시·도양곡관리관은 변상액을 본부로 대체하는 전표를 작성하고 사고처리책임 시·도양곡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통보 및 보고를 받은 양곡관리관 및 사고처리 책임 시·도 양곡관리관은 변상 통보액에 해당하는 재고자산을 시·도 및 본부로 대체하는 전표를 작성한 다음 관계대장에 기입하고 도 양곡관리관은 즉시 시·군에 통지하여 관계대장을 정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3조(사고재고자산의 처분) ① 사고재고자산은 제10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발생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처분한다.

② 사고양곡을 즉시 정선하여 식량에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일반양곡으로 우선 출하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는 사고양곡은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공매 처분하여야 하며 부산물 및 포장재료 등의 사고물도 이에 준한다. 다만, 일반경쟁 입찰방법에 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를당사자

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하여 지명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④ 입찰예정가격은 현물의 이용가치, 시가, 수요관계 등을 참작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농관원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⑤ 사고재고자산의 처분대가는 이를 처분한 시·도에서 수입 조치하되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현금변상에 준하여 시·도양곡관리관이 전표를 작성하고 관련 장부에 기록한다.

⑥ 사고재고자산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사고처리상황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⑦ 사고재고자산에 있어 현금 또는 현물로 사고전량을 변상 받았을 때에는 해당 사고현물을 사고책임자에게 반환한다.

제114조(사고발생 및 처리대장의 비치) 시·도 양곡관리관과 시·군분임양곡관리관은 양곡사고발생 및 처리대장(서식 제75호)을 비치·정리하여야 한다.

제115조(재고자산 사고처리에 대한 유의사항) ① 재고자산사고에 대하여는 실지 조사를 실시하여 원인과 내용을 철저히 조사규명하고 그 처리에 있어서는 신속과 정확을 기하여야 한다.

② 선량하게 관리한 구곡 및 소량보관 곡종의 공매처분은 사고로 보지 아니한다.

③ 사고재고자산의 변상을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변상능력이 희박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계약을 해약함과 동시에 변상금 회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한다.

제6장 감가상각

제116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감가상각자산은 일반유형자산 중 토지, 건설 중인 일반유형자산을 제외한 자산으로 한다.

제117조(감가상각시기) 상각대상자산의 감가상각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감가상각은 자산을 취득한 다음 연도부터 최종 내용연도까지 한다.
2. 감가상각은 정액법에 의한다.

제118조(취득가액)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으로 한다.

제119조(잔존가액) 잔존가액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제120조(내용연수) ① 감가상각대상자산의 내용연수는 정부총괄관리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1조(감가상각액) 자산의 가액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액을 공제할 잔액을 내용연수로 나눈 가액을 해당연도 감가상각액으로 한다.

제122조(감가상각시기) 감가상각 시기는 매 회계 연도말 결산 시로 한다.

제123조(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구분한다.

1. 자본적 지출은 일반유형자산의 증설, 개량, 보수 등을 위한 지출액이 500,000원 이상일 것
2. 수익적 지출은 제1호이외의 지출액

제124조(특별상각) 화재, 천재, 사고, 기타 경제적 감가로 인하여 상각자산의 가액이 현저히 변동하였을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특별상각 및 이연을 할 수 있다.

제7장 원가계산

제125조(원가계산의 실시) 원가계산은 이 회계의 정곡(가공생산물)단위당 정확한 원가를 산출하고 이에 의하여 정확한 손익을 계산함으로써 경영실태를 계수적으로 파악, 그 결과를 경영관리 및 경영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제126조(원가의 의의) 원가라 함은 양곡을 가공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소비된 경제 가치를 화폐단위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제127조(원가계산의 의의) 원가계산이라 함은 이 회계의 계정과 관련을 가지고 원가를 구성하는 요소(이하 “원가요소”라 한다)를 정곡의 일정단위에 대하여 계산하는 계산상의 절차를 말한다.

제128조(원가계산의 방법) ① 원가계산은 원가를 요소별, 곡종별(가공제품)로 계산한다.

② 원가계산은 해당기간에 발생한 모든 원가요소를 실제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129조(원가차액의 회계처리) 원가계산 결과 발생한 가공원가 차액은 결산기말에 매출 원가에 배분 가감한다.

제130조(원가계산의 기간) 가공원가계산은 회계 연도별로 한다.

제131조(도입원가의 계산) 도입양곡원가의 계산은 연간 도입실적에 의한 원곡대 및 수입제비를 산출하여 곡종별로 한다.

제132조(원가계산의 범위) 원가계산의 범위는 정곡에 한하여 가공원가와 총원가로 분류한다.

제133조(원가요소의 분류) 요소별 원가계산에 있어서는 원가요소를 재료비, 위탁가공비, 포장재료비, 보관비, 운반비, 상하차료 및 부대비로 분류한다.

제134조(재료비) 재료비라 함은 양곡의 가공에 직접 소비된 원료곡의 가액을 말한다.

제135조(재료의 소비량) ① 재료의 소비는 계속 기록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계속 기록법이라 함은 정곡가공을 위하여 조곡을 인도 출고할 때마다 계속 기록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136조(재료소비가액계산) 재료의 소비가액은 재료인 원료곡의 수량에 해당예정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제137조(위탁가공비) 위탁가공비는 정부관리양곡 가공도급계약업자에게 재료를 공급하여 가공을 위탁할 경우에 발생하는 가공임을 말한다.

제138조(포장재료비) 포장재료비는 정부양곡 및 부산물포장에 사용된 포장재료의 가액을 말한다.

제139조(포장재료 소비량) 포장재료의 소비량은 계속 기록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140조(포장재료비 소비가액계산) 포장재료의 소비가액은 정곡 포장에 소비된 포장재료의 수량에 해당예정가격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격을 말한다.

제141조(보관비) 보관비는 조곡 및 포장재료의 보관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142조(운반비) 운반비는 조곡 및 포장재료의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143조(상하차료 및 부대비) 상하차료 및 부대비는 조곡과 포장재료에 소요된 상하차료와 그 부대비 발생액을 말한다.

제144조(곡종별 원가계산) 곡종별 원가계산은 곡종별로 원가를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제145조(보관비, 운반비 및 부대비의 배분) ① 보관비, 운반비, 상하차료 및 부대비의 배분은 해당 기중에 소비된 재료비와 포장재료비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② 제1항에서 미배분된 원가는 기말 결산기에 미배분 원가계정에 대체한다.

제146조(미지급금) 원가계산기말에 해당 원가계산 기간 중 발생한 운반비, 위탁가공비, 상하차료 및 부대비와 보관비, 미지급금을 산출하여 각 원가요소에 계상한다.

제147조(부산물 및 회수 포장재료의 계산) 부산물 및 회수 포장재료의 가액은 매출가액으로 평가하고 가공원가에서 차감한다.

제148조(재공품의 계산) 기말재공품의 가액은 가공재료인 조곡의 가액으로 평가하고 가공원가에서 공제한다.

제149조(가공원가) ① 가공원가는 정곡으로 가공하기 위하여 소비된 원가요소의 합계액에 제147조 및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감한 것을 말한다.

② 가공원가의 계산방법은 원가요소 중 당기부담액을 가공계정에 대체한 다음 부산물(원료포장재료 등 포함)과 재공품의 전기이월액을 가감한다.

제150조(총원가) ① 총원가는 가공원가에 정곡조작비 및 관리비를 가산한 가액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관리비는 주요재료에 재고가액과 매출가액의 합계액 비율로 배분한다.

제151조(원가계산사무의 소관) 원가계산은 각 회계 단위별로 실시하고 본부에서 총괄한다.

제152조(원가계산보고서) 시·도에서는 반기말 현재로 다음 보고서를 작성하여 반기말로부터 50일 안에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가공원가계산서(서식 제78호)
2. 재료비(포장재료비)명세표(서식 제78호의 부표1)
3. 위탁가공비명세표(서식 제78호의 부표1)
4. 보관비배부계산표(서식 제78호의 부표2)
5. 운반비배부계산표(서식 제78호의 부표2)
6. 상하차료 및 부대비 배부계산표(서식 제78호의 부표2)
7. 부산물발생액명세표(서식 제78호의 부표3)
8. 회수포장재료발생액명세표(서식 제78호의 부표4)
9. 재공품명세표(서식 제78호의 부표5)
10. 제품명세표(서식 제78호의 부표6)

제8장 결산

제153조(결산의 목적) 이 회계의 결산은 매 회계연도의 회계 기록을 정리하고 해당 사업기간의 경영실적과 기말의 재산상태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54조(결산의 시기) 이 회계 결산의 시기는 매 회계연도 말일로 한다.

제155조(결산의 단위 및 근거) ① 이 회계의 기업 결산은 각 회계단위별로 실시하고 본부에서 총괄 결산을 행한다.

② 이 회계의 기업 결산은 각 회계단위별 양곡관리관 및 관련부서가 주관한 물동결산(매출, 매입, 수불, 조작, 훈증약제 등)과 국유재산, 물품, 채권 등의 증감 및 현재액의 확정결과에 의하여 결산한다.

③ 각 회계단위 양곡관리관 및 유관부서는 물동결산 및 해당 연도 국유재산, 물품, 채권 등의 증감 및 현재액 등을 반기말 현재로 확정하고, 그 결과부분을 반기말로부터 50일안에 해당 회계단위별 기업회계 결산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6조(결산절차) 이 회계의 사업결산은 다음 순서에 의하여 행한다.

1. 시산표 작성
2. 결산 수정
3. 손익계산(재정운영)계정의 마감
4. 대차대조표(재정상태표)계정의 마감
5. 보조부의 마감
6. 결산보고서의 작성

제157조(시산표작성) ① 이 회계의 시산표라 함은 원장의 오기·탈루의 유무를 검산함과 동시에 자산증감의 대세를 알기 위하여 총계정원장안의 계정별 당기분 합계, 당기말까지 누계, 당기말 잔액으로서 작성하는 표를 말한다.

② 각 회계단위 기관은 매분기별로 시산표를 작성하여 회계단위 기관별로 자체 결산하고, 그 결과를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부터 20일까지 내부거래 보고서(서식 제79호), 조정곡계정 명세서(서식 제80-1호), 포장재료명세표(서식 제80-2호), 세입세출계산증명서(서식 제80-3호 내지 제7호)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속명세표를 첨부하여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본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받아 다음에 의하여 처리한다.

1. 내부거래보고서에 의하여 각 회계단위 기관간의 내부거래를 확인한다.
2. 시산표 각 계정의 금액과 제 보고서를 대조 확인한다.
3. 총계정원장에 기입하여 총괄시산표를 작성한다.

제158조(결산수정) 원장계정의 잔액을 실제액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결산기말에 경과계정, 충당금계정, 재고자산 및 기타 미처리사항을 정리하여 정부가액을 정정하여야 한다.

제159조(손익계정의 마감) ① 비용, 수익의 각 계정 잔액을 집합손익계정에 대체하여 마감한다.

② 시도 회계단위기관의 집합손익계정 대차차액은 본부로 대체하여 마감한다.

제160조(대차대조표 계정의 마감) ① 자산·자본 및 부채의 계정의 마감에 관한 수속은 전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정부의 적요란에 「차기이월」이라 주서로 기입하며, 잔액이 차변인 때는 대변에, 대변인 때는 차변에 잔액을 기입하고 마감한다.

② 가지급금·가수금·미지급금·미인도양곡·사고물품등 채권채무에 관한 보조부를 새 장부에 이기한 때에는 미결분에 한하여 1건마다 그의 발생 연월일, 적요 및 금액을 기입하고 적요란에는 「구장부 제○호 제○페이지에서 전기」라고 기입하여야 한다.

제161조(보조부의 마감) 보조부는 반드시 원장내의 해당계정과 대조하여 일치하면 마감한다.

제162조(장부마감) ① 모든 계정은 결산기말 현재로 제158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 수정을 한 다음 마감한다. 다만, 결산수정이 필요 없는 계정은 그 거래가 종결하였을 때 마감한다.

② 재무제표에 계상할 미지급 채무액과 미수채권액은 연도 중 채무 또는 채권이 확정되었으나 연도말까지 지급 또는 수납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제163(결산제표) ① 본부에서 예산회계법령에 규정한 결산보고서와 기업예산회계법령에 규정한 결산제표를 구분하여 한다.

1. 재정상태표(대차대조표)
2. 재정운영표(손익계산서)
3. 원가계산서
4. 잉여금계산서
5. 잉여금처분계산서
6. 부속명세표
 - ㉠ 세입세출계산증명서
 - ㉡ 장기대여금명세서

- ㉔ 차입금명세표
- ㉕ 재고자산명세표
- ㉖ 고정자산명세표

7. 연도말 시산표

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명세표

② 각 회계단위기관은 회계단위결산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장 회계검사

제164조(회계검사의 목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회계에 관계되는 회계기관의 회계 및 재무에 관한 사무를 검사함으로써 회계 거래의 적정과 업무개선, 경영능률의 향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65조(회계검사의 대상) 회계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재무제표
2. 예산 및 자금의 집행실적
3. 양곡, 포장재료 등 재고자산의 관리사항
4. 자산 및 물품의 사후처리 관리사항
5. 채권, 채무의 관리
6. 기타 검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

제166조(회계검사의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회계 및 재무에 관한 사무에 대한 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서면심사 : 검사증빙서류에 의한 검사를 상시 실시한다.
2. 실지검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검사원을 현지에 파견하여 실시한다.

제167조(검사원의 권한) 검사원이 제16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검사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출석답변을 요구하거나 관계 문서 또는 물품의 봉인이나 검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8조(검사계획의 내용) 검사계획에는 원칙적으로 다음 항목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피검사기관(시도·시군)의 명칭
2. 검사의 종류
3. 검사의 범위
4. 검사담당자의 성명 및 분담사항
5. 검사일시의 일정
6. 검사보고서 작성예정일

제169조(검사보고서) 제16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에 의하여 검사보고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참고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피검사기관의 명칭
2. 검사의 종류(구분, 방법)
3. 검사의 범위
4. 검사담당자의 성명 및 분담사항
5. 검사실시일정
6. 검사실시경과의 개요 및 결과
7. 시정 및 건의와 적절한 조치를 요할 사항
8. 기타 검사담당자의 의견
9. 기타 참고사항

제170조(검사결과조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6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보고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검사결과 위법, 부당, 부정의 사실을 발견 하였을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해당소속 기관장에게 시정, 변상 또는 주의를 명하거나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 변상, 주의 또는 징계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또는 해당 소속기관의장은 요구받은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71조(검사 중의 조치) 검사원은 실지 검사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긴급하고 중대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즉시 보

고하여 이에 대한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1. 검사기관(시·도, 시·군) 또는 수검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국가재산에 거액의 손실을 끼쳤다고 인정되는 사고를 발견한 경우
2. 그 밖에 중대한 사고로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3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2015년 9월 3일 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제 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 하여야 한다.

양곡관리특별회계 계정과목 및 내역

관	항	목 (계정과목)	세 목	내 역
자 산				자산은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으로 구분한다.
01 유동자산				유동자산은 당좌자산, 재고자산, 잡자산으로 구분한다.
	011 당좌자산			당좌자산의 계정과목은 다음과 같다.
		0111 국 고		한국은행에 예치된 양곡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 예금과 그 잔액(한국은행에 설치된 양곡증권정리기금계정의 수입과 지출 및 그 잔액)을 표시하는 계정이다.
		0112 세입(수입) 예 금		한국은행 수입정수관(기금출납명령권)구좌에 납입된 세입예금(기금수입금)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01113 지 출 관 (기금출납 공 무 원 예금)		지출관의 지출자금예금액(기금출납공무원의 지급자금예금액)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관	항	목 (계정과목)	세 목	내 역
		0114 관서운영 경비		지출관이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에게 배정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보유 현금과 예탁금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0115 외상매출금	매출항목별 곡 종 별	외상 매출한 양곡대금을 처리하는 계정 이다.
		0116 미 수 금	부산물판매 대, 포장 재 료 판매 대, 사고물품매 각대 기타	양곡 이외의 부산물, 포장재료의 판매대 금, 사고물품매각대금, 미회수액 및 기타 미수금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0118 유가증권		국채 및 기타 유가증권을 처리하는 계정 이다.
	012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계정과목은 다음과 같다.
		0121 조 곡	곡 종 별	조곡(가공재료)인 국산미곡, 국산잡곡 및 도입양곡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관	항	목 (계정과목)	세 목	내역
		0122 정 곡	곡 종 별	정곡인 국산미곡, 국산잡곡, 도입미곡 및 도입잡곡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0123 부 산 물	품 목 별	양곡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0124 제 공 품	곡 종 별	결산기말시 가공도중에 있는 양곡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0125 포장재료	품 목 별	양곡의 포장재료를 처리하는 계정이다.
		0126 훈 증 약	품 목 별 연 도 별	양곡훈증용소독약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013 잡 자 산			잡 자산의 계정과목은 다음과 같다.
		0131 선 급 금	수입양곡대 포장재료대 기 타	예매자금이외의 수입양곡대금,, 포장재료 매입대금 및 기타 선급금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관	항	목 (계정과목)	세 목	내 역
		0132 예매자금	곡 종 별	양곡의 예매자금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0133 가지급금		계정과목 또는 금액이 확정되지 않는 철도운임, 해상운임개산불여비 등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0134 보관현금및 유가증권	보관현금,보 관 국 채 ,기 타	세입세출외의 보관현금, 계약보증금, 보관국채, 기타 보관유가증권의 보관액과 원천징수금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0135 가공청산 미 수	곡 종 별	양곡가공성적계산결과 발생한 <u>도질</u> 공장에 대한 채권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0136 교환양곡	곡 종 별 교환양곡구 분별	교환양곡의 미회수분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0137 미수이자	기타대여금	결산 시 당해기간에 발생된 기타대여금에 대한 이자의 미수금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관	항	목 (계정과목)	세 목	내 역
02 고정자산	021 일반유형 자 산	0138 사고물품	품 목 별	변질, 망실, 침수, 기타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재고자산물품(양곡, 포장재료, 부산물, 다만, 훈증약제는 제외)의 사고액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고정자산은 유형고정자산 및 투자와 기타자산으로 한다. 유형고정자산의 계정과목은 다음과 같다.
		0211 건 물	공장용건물 창고용건물 기타건물	공장용건물, 창고용건물, 기타건물과 이에 대한 자본적 지출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0212 구 축 물	위장, 연돌, 교량, 기타 구축물	위장, 연돌, 교량, 기타 구축물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0213 기계시설	도장기계시설 기타기계시설	현미시설, 정미시설, 정맥시설, 압맥시설, 정선시설, 제분시설, 기타기계시설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관	항	목 (계정과목)	세 목	내역
		0214 차량운반구	승용차, 지프차, 이륜차, 기타	차량과 운반구를 처리하는 계정이다.
		0215 선박		양곡수송용 배지선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0216 공구기구		공구기구를 처리하는 계정이다.
		0217 비품		비품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0218 건설임시계정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 그 공사가 완료할 때까지 지급되는 총지급액을 일시 처리하는 계정으로서 완공후 해당 계정에 대체한다.
		0219 토지		양곡저장창고, 부지, 기타 소유토지를 처리하는 계정이다.
	022 투자 기타자산	0221 장기대여금		대여기간이 1년 이상인 대여금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0222 대여양곡	곡종별 대여구분별	대여양곡용으로 할부 매출한 양곡 및 기타 대여기간이 1년 이상인 양곡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관	항	목 (계정과목)	세 목	내 역
03 이연자산		0331 선급비용		이연자산의 계정과목은 다음과 같다. 지급된 비용 중 결산기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기에 부담하지 아니하고 차기에 이연될 비용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0332 미배분원가	보관비, 운반비, 상하차료 및 기타부대비	결산 시 원가요소비용으로서 미배분된 보관비, 운반비, 상하차료 및 부대비를 처리하는 계정이다.
부 채				부채는 유동부채, 고정부채, 충당금으로 구분한다.
04 유동부채		0411 단기차입금		단기부채의 계정과목은 다음과 같다. 정부기업예산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입하는 금액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관	항	목 (계정과목)	세 목	내역
		0412 외상 매입금	매입구분별 곡종별	양곡대금의 미지급액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0413 가수금		계정과목 또는 금액이 미확정으로 수입된 금액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0414 미지급금	보관비, 운반비, 상하차료및부대 비, 위탁가공비, 포장재료대, 기타	외상매입금의 포장재료대금, 운반 비, 보관비, 위탁가공비, 상하차료 및 부대비, 과오납반환금, 기타 미 지급금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0415 예수 보관금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원천징수금 기타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원천징수 금, 기타 예금보관금 등을 처리하 는 계정이다.
		0416 미인도 양곡	곡종별, 항목별, 징수구분별	대금을 수령하였거나 외상매출키 로 확정된 양곡 중 매입자에게 인 도하지 못한 양을 처리하는 계정이 다.
		0417 교환양곡 가수	곡종별	외상교환양곡 현물환수분을 일시 처리하는 계정으로 현물환수 마감 후에 교환비율에 따라 정산한 후 교환양곡계정에 대체한다.

관	항	목 (계정과목)	세 목	내 역
05 고정부채		0419 가공청산 미 금	품 종 별	양곡가공성적계산결과 가공계정에서 발생한 가공공장에 대한 채무를 처리 하는 계정이다.
		0420 선 수 금	양곡판매대, 부산물판매 대, 기타	결산기말에 양곡대금을 선수하고 매 출미지령 양곡대금과 부산물대금 및 기타 선수금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0511 장 기 차 입 금		고정부채의 계정과목은 다음과 같다 차입기간이 1년 이상의 차입금을 처리 하는 계정이다.
		0512 차관양곡		차관양곡 원금대 미상환액을 처리하 는 계정이다.
06 충 당 금		0611 감가상각 충 당 금	건물,구축물 기계시설,차 량운반구,공 구기구,비품	충당금의 계정과목은 다음과 같다. 일반유형자산인 건물, 구축물, 기계시 설, 차량운반구, 공구기구 및 비품의 감가상각에 대한 충당금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0612 대 손 충 당 금	외상매출금, 미수금,교환 양곡,예매자 금,사고물품	불량채권인 외상매출금, 미수금, 교환 양곡, 예매자금 및 사고 물품의 대손 예상액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0613 차관평가 충 당 금	차관구분별 곡 종 별	차관양곡 원금대 미상환액에 대한 환 율변동차액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관	항	목 (계정과목)	세 목	내 역
자 본				자본계정은 자본금과 잉여금으로 구분한다.
07 자 본 금		0711 고유자본		자본금의 계정과목은 다음과 같다. 자본금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0712 출 연 금		타 회계로부터 전입받은 출연금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08 잉 여 금		0811 자 본 잉 여 금		잉여금의 계정과목은 다음과 같다. 자본거래에 의하여 발생하는 잉여금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0812 이 익 잉 여 금		손익거래에 의하여 발생하는 잉여금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0813 재 평 가 적 량 금		고정자산의 재평가 시에 발생하는 잉여금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수 익				수입은 양곡사업수익, 양곡사업외 수익, 특별이익 등으로 구분한다.
09 양곡사업 수 익		0911 양곡매출	징수구분별 항 목 별 곡 종 별	양곡사업수익의 계정과목은 다음과 같다. 국산미곡, 국산잡곡, 도입미곡 및 도입잡곡의 매출액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관	항	목 (계정과목)	세 목	내 역
10 양곡사업 외 수 익				양곡사업외 수익의 계정과목은 다음과 같다
		1011 수입이자	기타대여금	기타 대여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처리하는 계정이다.
		1012 양곡교환 이 익	곡 종 별	양곡교환 시에 발생하는 이익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1013 양 곡 수 납 익	매입구분별 곡 종 별	양곡 매입 시 예정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실제 매입하였을 경우에 그 차액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1014 재고자산 가액개정 차 익	품 목 별	양곡 및 포장재료 등 재고자산의 가액을 개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1015 잡 익		수납이자, 양곡교환이익, 양곡수납익 재고자산가액개정차익에 규정한 이외의 현금을 수반하지 않는 양곡사업의 수익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1016 잡 수 입		수입이자, 양곡교환이자, 양곡수납익, 재고자산가액 개정차익, 잡익에 규정한 이외의 현금을 수반하는 양곡사업의 수익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1017 일반회계 전 입 금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1019 기 타 전 입 금		세계잉여금, 기타 전입된 금액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관	항	목 (계정과목)	세 목	내 역
11 특별이익		1111 전기손익 수 정 액		특별이익의 계정과목은 다음과 같다. 과년도 결산수정이익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1112 고정자산 처분이익		이 회계소유 고정자산의 처분이익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1113 외환차익		차관양곡의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이익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비 용				비용은 양곡사업비, 사업외비용, 특별손실 등으로 구분한다.
12 양 곡 사 업 비				양곡사업비는 사업직접비와 정곡조작비 및 관리비로 구분한다.
	121 사 업 직 접 비			사업직접비의 계정과목은 다음과 같다.
		1211 양곡매출 원 가		매출양곡인 국산미곡, 국산잡곡, 수입미곡 및 수입잡곡의 매출원가를 처리하는 계정이다.
	122 정 곡 조 작 비			정곡조작비의 계정과목은 다음과 같다.
		1221 정 곡 보 관 비		정부관리양곡의 정부보관비를 처리하는 계정이다.
		1222 정 곡 운 반 비		정곡의 운반비를 처리하는 계정이다.

관	항	목 (계정과목)	세 목	내역
	123 관 리 비	1223 정곡상하차 료및부대비		정곡의 상하차료 및 부대비를 처리하는 계정이다.
		1231 인 건 비	급여수당피복 비,급량비,일용 잡급	예산과목중 100단위에 속하는 급여, 상용잡급 기타수당 등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1232 물 건 비	여비수용비및 수수료,광고선 전비,재료비기 타,관공비,공공 요금및제세,장 비및시설유지 비,기타물건비	예산과목 중 200단위에 속하는 여비, 일반수용비를 처리하는 계정이다.
		1233 감 가 상 각 비		일반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처리하는 계정으로 감가상각 총당금의 상대 계정이다.
		1234 보 험 료		정부관리양곡 화재공제료 및 기타 보험료 발행액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관	항	목 (계정과목)	세 목	내 역
13 양곡사업 의 비 용		1235 잡 비	경상이전 정 부내부거래 기타	인건비, 물건비, 감가상각비, 보험료 이 외의 사업비용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사업외비용의 계정과목은 다음과 같다.
		1311 지급이자 및 수수료		차입금이자, 증권이자, 차관양곡이자 및 제수수료 등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1312 외환차손		환율변동으로 인한 외화부채에 대한 평가손실 및 상환차손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1313 대손상각		각종 대손상각액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1314 양곡교환 손 실	곡 종 별	양곡교환 시 발생하는 손실을 처리 하는 계정이다.
		1315 양 곡 수 납 손	매입구분별 곡 종 별	국산양곡 매입 시 예정가격 이상의 가격으로 실제 매입하였을 경우에 그 차액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관	항	목 (계정과목)	세 목	내 역
14 특별손실		1316 재 고 자산가액 개정차손	품 목 별	양곡부산물 및 포장재료 등 재고자산의 가격과 부채계정인 미인도양곡의 가격 을 개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처리 하는 계정이다.
		1317 잡 손		외환차손, 대손상각, 양곡교환손실, 양 곡수납손, 재고자산가액차손, 이외의 사업외 손실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1318 양곡판매 결손보전		농협매입분에 대한 매입가격과 산지가 격의 차액을 보전하는 계정이다.
		1411 전기손익 수 정 손	전기손익 수정손실	과년도 결산수정 손실을 처리하는 계정 이다.
		1412 고정자산 처분손실	고정자산 처분손실	이 회계소유 고정자산의 처분손실을 처 리하는 계정이다.

관	항	목 (계정과목)	세 목	내역
15 중간계정				중간계정은 본 시도계정, 대조계정, 내부차변계정, 내부대변계정, 양곡도입계정, 도착계정, 원가계산계정으로 구분한다.
	151 본 시도 계정			본시도계정은 다음과 같다
		1511 시도		본부에서는 시도와의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는 계정이다.
	161 대조계정			대조계정의 계정과목은 다음과 같다.
		1611 대여할부 미수		시도에 매도한 대여양곡대금을 처리하는 비망계정이다.
		1612 대여할부 가매출		대여할부 미수금에 대한 상대계정이다.
	171 내부차변 계정			내부차변의 계정과목은 다음과 같다.
		1711 자금시달		본부에서 시도지출관(기금출납공무원)에게 배정한 지출한도액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관	항	목 (계정과목)	세 목	내 역
181 내부대변 계 정		1712 본부로부터 매출지령	항 목 별 곡 종 별	시도에서 본부로부터 매출지령 받은 본부 징수분 매출양곡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1713 도외반출	상대시도별 품 목 별	시도에서 타시도로 발송한 양곡 및 포 장재료의 반출액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1714 군외반출	상대시군별 품 목 별	회계단위기관내의 시군간에 조작한 양 곡 및 포장재료의 반출액
		1715 시 도 로 대 체	상대시도별 상대과목별	본부에서 자금시달, 본부로부터 매출지 령, 도외반출, 군외반출 이외의 거래로 시도에 대체한 액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1716 본 부 로 대 체	상대과목별	시도에서 자금수령 본부로부터의 매출 지령, 도외반출, 군외반출 이외의 내부 거래로 본부에 대체한 액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내부대변의 계정과목은 다음과 같다.

관	항	목 (계정과목)	세 목	내역
		1811 자금수령		시도에서 본부로부터 배정받은 지출관(기금출납공무원)의 지출한도액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1812 시도에 매출지령	항 목 별 곡 종 별	본부에서 시도에 매출 지령한 본부 징수분 매출양곡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1813 도외반입	상대시도별 품 목 별	시도에서 타시도로부터 반입한 양곡 및 포장재료액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1814 군외반입	상대시군별	회계단위기관내의 시도간에 조작한 양곡 및 포장재료의 반입액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1815 시군에 매출지령	항 목 별 곡 종 별	시도에서 시군에 매출지령한 본부 징수분 매출양곡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1816 시도에서 대체	상대시도별 상대과목별	본부에서 자금시달, 시도에 매출지령, 도외반입, 군외반입, 시군에 매출지령 이외의 시군거래로 인하여 시도로부터 대체된 금액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관	항	목 (계정과목)	세 목	내 역
	191 양곡수입 차 액	1817 본부에서 대 체	상대과목별	시도에서 자금수령, 시도에 매출지령 도의반입, 군외반입 시군에 매출지령 이외의 내부거래로 인하여 본부로부터 대체한 금액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양곡수입계정은 다음과 같다.
		1911 양곡도입 차 액	수입원곡대수 입양곡조작비, 포장재료비,곡 종별, 모선별	양곡수입원가와 이에 대응하는 양곡 수입수익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201 미 도 착 계 정	2011 미 도 착 양 곡	상대시도(군)별, 품목별	월말 또는 연도말 포장재료의 수송도 중량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2012 미 도 착 포장재료	상대시도(군)별, 품목별	월말 또는 연도말 포장재료의 수송도 중량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292 원가계산 계 정			원가계산계정을 위한 원가요소의 계 정과목은 다음과 같다.

관	항	목 (계정과목)	세 목	내 역
		2021 재 료 비	제 목 별	가공하기 위하여 가공공장에서 인도한 양곡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2022 포 장 재 료 비	제 품 별	가공공장에서 사용된 포장재료를 처리하는 계정이다.
		2023 보 관 비	곡 종 별 품 목 별	조곡 및 포장재료의 보관비를 처리하는 계정이다.
		2024 운 반 비	곡 종 별 품 목 별	조곡 및 포장재료의 운반비를 처리하는 계정이다.
		2025 상하차료 및부대비	곡 종 별 품 목 별	조곡과 포장재료의 상하차료 부대비를 처리하는 계정이다.
		2026 가 공		조곡가공에서 발생하는 조곡의 가공원가를 계산하는 계정으로 차변에는 가공원가요소인 재료비, 위탁가공비, 포장재료비, 상하차료 및 부대비를 집합하고 대변에는 정곡부산물 및 원료도입 등의 발생익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다만, 가공원가계산계정은 원가계산기말에 일괄 대체한다.

관	항	목 (계정과목)	세 목	내 역
		2037 가공원가 차 액	제 품 별	정곡의 예정원가와 실제가공원가와의 차액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2028 위 탁 가 공 비	제 품 별	정부관리양곡 가공도급업자에게 지급하는 가공임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별표 2〉 서식

서식 번호	근 거	서식명	비치관서 및 보고주기		
			본부	시·도	시·군
	양특사무규정				
1	제12조 제1항	총계정원장	○	○	
2	제13조	장기대여금원장	○		
3	제13조	차입금원장	○		
4	제13조	건설임시계정원장	○	○	
5	제13조	양곡매출장	○	○	
6	제13조	자산부채정리부	○	○	
7	제13조	손익계정정리부	○	○	
8	제23조제2항	환불금청구서	○	○	○
9	제24조	정부양곡관리비(조작비)발생액보고서	시군		월보
부표1	"	위탁가공임발생액명세표	"		"
부표2	"	보관비발생액명세표	"		"
부표3	"	운반비발생액명세표	"		"
부표4	"	상하차료 및 부대비 명세표	"		"
10	제37조	가액개정계산서		○	
11	제42조	공공비축미곡매입일계표		○	○
12	"	공공비축미곡매입대장		○	○
13	"	양곡수불대장		○	○
14	"	공공비축미곡매입실적보고서		○	○
15	제43조제1항	수입양곡인수대장		○	○
16	제43조제1항	수입양곡모선별인수도상황보고서	시군:모선별인수작업완료시 사도: 입항예정물량인수완료시		
17	제46조 제2항	포장재인수확인보고서	분기별 보고		
18	제54조	훈증소독상황보고	연보		
19	제55조	양곡(인수·인도)지시서			○
20	"	포장재(입고출고/수송·인수도)지시서			○

서식 번호	근 거	서식명	비치관서 및 보고주기		
			본부	시·도	시·군
	양특사무규정				
21	제55조	양곡(작업, 입고, 운반, 하양하작업, 출고, 운반, 운수)지시서			○
22	제56조	정부관리양곡보관대장(정곡)			○
23	"	정부관리양곡보관대장(조곡)			○
24	"	양곡포장제입출고일보			○
25	제57조	양곡보관상황보고서		월보	
26	제58조	정부관리양곡보관창고시설현황보고서		연보	
부표1	"	새마을창고시설환황표			
27	제62조 제1항	양곡시도간 수송실행계획서		○	○
28	제64조 제1항	양곡시도간 수송실행요구서		○	○
29	제68조, 제72조	<input type="checkbox"/> 출하료 <input type="checkbox"/> 양곡수송증 <input type="checkbox"/> 양곡수령증 <input type="checkbox"/> 양곡운반증			○
30	제68조, 제72조	조곡(원표, 출하표, 수송증, 수령증)			○
31	제69조	작업보고서			○
32	"	작업증명서			○
33	"	양곡발송일보			○
34	"	하역협정서			○
35	제69조	발송도착내역부			○
36	"	검근표			○
37	제70조	포장재송증			○
38	"	포장재(수령증, 송증)발행대장			○
39	제73조	포장재 수취증			○
40	"	포장재발송도착통지서			○
41	제74조	포장재수령증			○
42	제76조	양곡수송실적보고서			
부표1	"	양곡도군간이동총괄표		기별보고	

서식 번호	근 거	서식명	비치관서 및 보고주기		
			본부	시·도	시·군
	양특사무규정				
43	제77조	포장재수송확인증			○
44	제79조	양곡가공지시대장		○	○
45	"	양곡가공원료재고대장		○	○
46	제80조	가공일보			○
47	"	양곡검사증			○
48	제81조	양곡가공실적대장			○
49	"	양곡가공실적보고			○
50	"	양곡가공제품 인수도 실적보고서		월별보고	
51	제82조	양곡가공실적계산서		기별보고	
52	제82조	양곡가공과부족량청산보고서		기별보고	
53	제91조	정부양곡도정공장대장		○	○
53-1	"	시설현황		○	○
54	"	제분공장대장		○	○
54-1	"	생산능력사정(계산)내용		○	○
55	"	정부관리양곡가공공장목록	○	○	○
56	제95조	포장재사용량보고서		○	○
57	"	제품포장실적대장			○
58	"	포장재수불대장			○
59	"	포장재료비대장			○
60	제99조	양곡매출지시대장	○		
61	"	양곡매출대장		○	
62	"	양곡매출지시대실적대장		○	
63	"	미인도양곡정리부			
64	제100조	양곡매출지시서	○	○	
65	제101조	양곡매출통지서		○	○
66	제103조	양곡매출상황보고서		○	○
부표1	"	양곡매출상황내역서		○	○
부표2	"	시군징수분 양곡매출상황내역서			○

서식 번호	근 거	서식명	비치관서 및 보고주기		
			본부	시·도	시·군
	양특사무규정				
67	제104조	부산불수불대장			○
68	"	부산물매출보고서	월보	○	○
69	제105조	양곡수급대장(본부용)	○		
70	"	양곡수급대장(특별시·광역시용)		○	
70-1	"	양곡수급대장(도 용)		○	
71	제106조	양곡수불상황보고서	기보		
부표1		양곡가공실적 및 청산총괄표			
부표2		이월가공제품생산예정량표			
부표3		과년도가공미청산량청산내역표			
부표4		양곡사고발생 및 처리상황표			
부표5		양곡도간수송지시 대 실적표			
72		부산물수불상황보고서	기보		
부표1		포장재 반출입 상황표	기보		
부표2		포장재사고발생 및 처리상황표	기보		
부표3		제품포장실적표	기보		
73	제107조	양곡사고발생경위보고	즉보		
74	"	양곡사고발생경위서			○
75	제108조	양곡사고발생 및 처리대장			○
76	제112조	양곡사고발생보고서	연보		
77	"	양곡사고발생처리내역보고서	연보		
부표1	"	발생/처리 조서	연보		
부표2	"	사고미처리조서	연보		

서식 번호	근 거	서식명	비치관서 및 보고주기		
			본부	사·도	시·군
	양특사무규정				
78	제152조	가공원가계산서		○	
부표1	제152조	<input type="checkbox"/> 재 료 비/ 포장재료비/위탁가공비 명세표		○	○
부표2	"	<input type="checkbox"/> 운반비/ 보관비/상하차료 및 부대비 배부계산표		○	○
부표3	"	부산물발생액명세표		○	○
부표4	"	회수포장재발생액명세표		○	○
부표5	"	재공품명세표		○	○
부표6	"	제품명세표		○	○
79	제157조	내부거래보고서		○	○
80-1		조·정곡계정 명세서		○	○
80-2		포장재료계정 명세서		○	○
80-3		미수금/외상매출금 명세표		○	○
80-4		선금금명세표		○	○
80-5		예매자금명세표		○	○
80-6		가지급금명세표		○	○
80-7		외상매입금명세표		○	○

양곡관리특별회계및양곡증권정리기금 회계직공무원관직지정과임면규정

개정 2013. 9. 17. 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 5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모든 회계직공무원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양곡관리특별회계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에 대한 회계직 공무원의 관직지정과 임면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수입징수관) ① 국고금관리법 제9조 및 제42조와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직에 있는 자를 해당관서의 양곡관리특별회계 수입징수관으로 지정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 식량정책관실 식량정책과장
2. 특별시, 광역시, 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 양정업무담당국장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 소장
4.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 원장

② 양곡관리법 제2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실 식량정책과장을 양곡증권정리기금 수입징수관으로 지정한다.

제3조(분임수입징수관) ① 국고금관리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직에 있는 자를 제2조 제1항 제2호에 지정된 양곡관리특별회계 수입징수관의 사무 중 일부를 분장하는 해당관서의 양곡관리특별회계 분임수입징수관으로 지정한다.

1. 각 시·군 : 부시장(다만, 국이 설치된 시는 양정업무담당국장), 부군수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양정업무담당과가 설치된 센터에 한함)
- ② 국고금관리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각 구의 양정업무담당국장을 제2조제1항제2호에 지정된 양곡관리특별회계 수입징수관의 사무 중 대역양곡 및 교환양곡의 수납을 위하여 해당관서의 양곡관리특별회계 분임수입징수관으로 지정한다.

제4조(재무관) ① 국고금관리법 제2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직에 있는 자를 해당관서의 양곡관리특별회계 재무관으로 지정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 식량정책관실 식량정책과장
2. 특별시, 광역시, 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 양정업무담당과장
- ② 양곡관리법 제2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실 식량정책과장을 양곡증권정리기금 재무관으로 지정한다.

제5조(분임재무관) 국고금관리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시·군(농업기술센터 포함)의 양정업무담당과장(다만, 과가 설치되지 않은 농업기술센터는 소장)을 제4조제1항제2호에 지정한 양곡관리특별회계 재무관의 사무 중 일부를 분장하는 해당관서의 양곡관리특별회계 분임재무관으로 지정한다.

제6조(지출관) ① 국고금관리법 제22조제2항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직에 있는 자를 해당관서의 양곡관리특별회계 지출관으로 지정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 식량정책관실 식량정책과 회계업무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
2. 특별시, 광역시, 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 양곡관리특별회계 업무담당 사무관
- ② 양곡관리법 제2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식량정책관실 식량정책과 양곡관리특별회계 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을 양곡증권정리기금 지출관으로 지정한다.

제7조(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각 시·군(농업기술센터 포함)의 양정업무담당계장을 해당관서의 양곡관리특별회계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으로 지정한다.

제8조(채권관리관) 국가채권관리법 제6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조에 지정된 양곡관리특별회계 수입징수관과 양곡증권정리기금 수입징수관을 각각 해당관서의 양곡관리특별회계 채권관리관과 양곡증권정리기금 채권관리관으로 지정한다.

제9조(분임채권관리관) 국가채권관리법 제6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조에 지정된 양곡관리특별회계 분임수입징수관을 해당관서의 양곡관리특별회계 분임채권관리관으로 지정한다.

제10조(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 ① 국유재산법 제28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실 식량정책과장을 양곡관리특별회계의 농림축산식품부 재산관리관으로 지정한다.

② 물품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직에 있는 자를 해당관서의 양곡관리특별회계 물품관리관으로 지정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 식량정책관실 식량정책과장
2. 특별시, 광역시, 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 양정업무담당과장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 소장
4.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 운영지원과장

제11조(분임재산관리관 및 분임물품관리관) ① 국유재산법 제28조제2항 및 제5항에 의하여 다음의 직에 있는 자를 해당관서의 양곡관리특별회계 분임재산관리관으로 지정한다.

1. 특별시, 광역시, 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 양정업무담당과장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 소장
3.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 운영지원과장

② 물품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시·군(농업기술센터 포함)의 양정업무담당과장(다만, 과가 설치되지 않은 농업기술센터는 소장)을 제10조에 지정된 물품관리관의 사무 중 일부를 분장하는 해당관서의 양곡관리특별회계 분임물품관리관으로 지정한다.

제12조(양곡관리관) 물품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직에 있는 자를 해당관서의 양곡관리특별회계 재고자산을 관리하는 양곡관리관으로 지정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 식량정책관실 식량정책과장
2. 특별시, 광역시, 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 양정업무담당과장

제13조(분임양곡관리관) 물품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직에 있는 자를 각각 제12조에 규정된 양곡관리관의 사무중 일부를 분장하는 해당관서의 분임양곡관리관으로 지정한다.

1. 특별시, 광역시의 각 구청 : 양정업무담당과장
2. 각 시·군(농업기술센터 포함) : 양정업무담당과장(다만, 과가 설치되지 않은 농업기술센터는 소장)

제14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및 유가증권취급공무원)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과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곡관리특별회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임면은 해당관서장에게 위임한다.

제15조(대리직의 임면) 제2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관직이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관서장이 그 직무를 대리할 자를 임면한다.

제16조(위임 및 제청) ① 제2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관직이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의 임면은 해당관서장에게 위임한다.

② 이 규정에 의하기 곤란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해당관서장의 제청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지정 또는 임면한다.

제17조(임면사항 보고) 이 규정에 의하여 각 관서장이 회계직 공무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그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유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2015년 7월 30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3조(중전훈령의 폐지) 종전의 “양곡관리특별회계및양곡증권관리기금회계직공무원관직지정과임면규정(농림수산식품부 훈령 제98호)”은 이를 폐지한다.



농산물검사기준

농산물검사기준

개정 농림부고시 제2007- 73호 2008. 1. 1
개정 농림수산물식품부고시 제2009-188호 2009. 8.25
개정 농림수산물식품부고시 제2012- 90호 2012. 8.24
개정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185호 2013.10. 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7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의 품목별 포장단위당 무게, 포장재 규격 및 포장방법, 품위검사규격 등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검사규격) ① 농산물의 품목별 포장단위당 무게는 별표1과 같다.
② 농산물의 포장재 규격 및 포장방법은 별표2와 같다.
③ 농산물의 품위 검사규격은 별표3과 같다.
④ 별표3 중 표준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다.

부 칙

-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 대형포장재 변경 규격은 2015년산 공공비축벼부터 적용하며, 『별표3』 농산물의 품위검사규격에서 ‘벼 품위검사규격’ 개정사항은 2014년산 공공비축벼부터 적용한다. 또한, 「별표3」 농산물의 품위검사규격에서 ‘쌀의 품위검사규격’의 개정사항은 국내산은 2013년산부터 적용하고, 수입산은 시행일 이후 국내 도착분부터 적용한다.
- ②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12월 30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표1】

농산물의 품목별 포장단위당 무게

품 목		포장단위당 무게
벼		40kg, 800kg
겉보리		40kg
쌀보리		40kg
맥주보리		40kg
밀		40kg
귀 리		30kg
현 미		2kg, 4kg, 5kg, 10kg, 20kg, 40kg
쌀		2kg, 4kg, 5kg, 10kg, 20kg, 40kg, 1,000kg
보리쌀		2kg, 4kg, 5kg, 10kg, 20kg, 40kg
콩		2kg, 4kg, 5kg, 10kg, 20kg, 40kg
옥수수		2kg, 4kg, 5kg, 10kg, 20kg, 40kg
고구마	식 용	10kg, 20kg
	가공용	40kg
절간고구마		20kg, 40kg
참깨		2kg, 4kg, 5kg, 10kg, 20kg, 40kg
피땅콩		30kg
알땅콩		2kg, 4kg, 5kg, 10kg, 20kg, 40kg
유채		40kg
사과		5kg, 10kg, 15kg
배		5kg, 10kg, 15kg
단감		5kg, 10kg, 15kg
감귤		5kg, 10kg, 15kg
고추		3kg, 10kg, 20kg
마늘		3kg, 5kg, 10kg, 20kg
양파		5kg, 10kg, 20kg

【별표2】

농산물의 포장재 규격 및 포장방법

1. 곡 류

가. 폴리에틸렌대(P.E대)

(1) 자재

KS M 3503(농업용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KS M 3509(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에 의한 튜브상 필름으로서 저밀도(LDPE) 또는 선형 저밀도(LLDPE) 필름이거나 저밀도 및 선형 저밀도 합성(50 : 50) 필름을 사용하되, 이물 부착 방지를 위하여 대전 방지 처리하여야 한다.

(2) 모양

평포대로서 지름 1mm의 통기공 20개를 양면이 맞닿리도록 설치하되 통기공의 배열은 상하 열접착 부위, 좌우 양 끝 3cm 정도 떨어진 곳에서부터 시작하여 규칙적인 간격을 두어야 한다.

(3) 크기 및 품질

적용 대상	수용량 (kg)	몸체(mm)		접착부 너비 (mm)	접착부 밖의 너비(mm)	필름의 호칭 두께(mm)
		길이 (±5)	너비 (±2)			
쌀, 보리쌀, 현미	2	330	230	5 ^(±1)	10 ^{이상}	0.07
	4	400	270	5	10	0.08
	5	400	300	5	10	0.10
	10	550	350	5	10	0.10
	20	700	450	10	10	0.15
콩, 옥수수	2	330	240	5	10	0.07
	4	410	300	5	10	0.08
	5	450	300	5	10	0.10

(4) 낙하 강도

- (㉠) 1회 시험용 공시포대는 10매 이상으로 한다.
- (㉡) 다음 “5항 나”의 방법에 따라 각 10회 시험할 때 시료 10매 중 5회까지는 파대 되지 않아야 하며, 6회 이후에 파대되는 것은 1매까지 허용한다.

(5) 시험 방법

- (㉠) 자재의 시험 방법은 KS M 3503(농업용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KS M 3509(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7. 시험방법”에 따른다.
- (㉡) 낙하 강도는 KS A 1015(크라프트 대형지대의 낙하 시험 방법)에 따른다.

(6) 검사 및 표시

- (가) 공인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나) 검사에 합격된 포대는 매장마다 “규격품”임이 표시되어야 하며, 또한 내용물이 “국정검사필품”임을 인사하여야 한다.
- (다) 포대의 매 장마다 제조자 명을 포대 하단 우측에 표시하여야 한다.
- (라) 인사의 색상, 양식 등 기타사항은 수요처의 요구에 따른다.

(7) 포장 방법

- (가) 포대에 내용물을 담은 후 상단에서 10mm 정도 남긴 부위에 너비가 약 5~10cm 정도 되도록 열접착 하여야 한다.

나. 직물제 포대(P.P대)

1) 소형 포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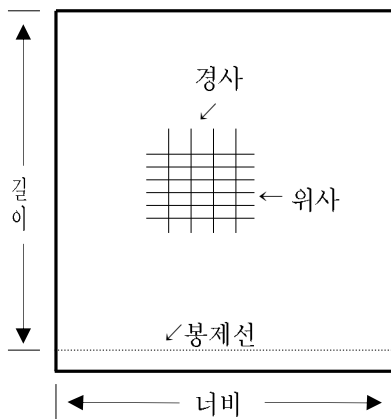
(1) 자재

- (가) 원단 : KS A 1037(포대용 폴리올레핀 연신사)의 규격중 2중 폴리프로필렌계로 섬도 100tex이상, 인장강도 29N이상의 연신사로 직조하여야 하며, 통기성을 주기 위하여 원단의 위사 너비는 4~6mm가 되어야 하고 포대를 구성하고 있는 위사는 1회 이상 접어진 실로서 제작하여야 한다.
- (나) 봉합실 : 봉제에 적합한 실로서 인장강도는 39N이상이어야 한다.
- (다) 슬라이드 파스너(이하 “지퍼” 라 한다) : 자동잠금장치가 있는 슬라이더가 부착된 지퍼로서 이빨 너비 5mm이상, 이빨 가로 인장강도 294N이상, 슬라이더 잠금강도 39N이상으로 왕복 여닫는 내구도는 100회 작동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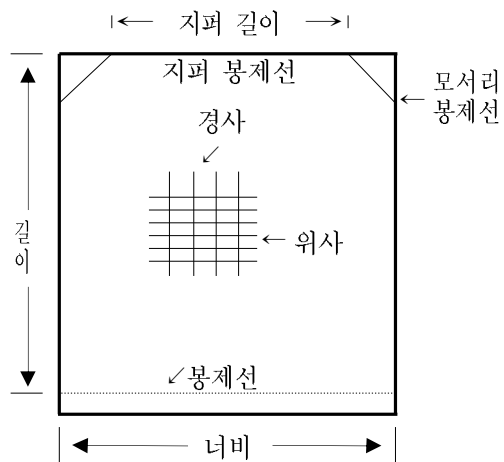
(2) 모양

원통형으로서 길이, 너비 및 지퍼 부착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가) 구봉식



나) 지퍼식



(3) 크기 및 품질

적용 대상	구 분		수용량 (kg)	몸 체 (mm)		직조밀도 (올/5cm)		지퍼 길이 (cm)	색 상	낙하강도
				길이	너비	경사	위사			
벼, 걸보리, 맥주 보리, 밀, (귀리)	조곡 1호	구봉식	40 (30)	±10 1,010	±10 610	±2 24	±2 24	이상 -	황다색	낙하시험 결과 지퍼 및 원단의 파손, 봉합의 터짐, 지퍼 잠 금장치의 열림 등에 의하여 내 용물이 새지 않 아야 한다.
		지퍼식	40 (30)	895	610	24	24	45		
쌀보리, 밀, 콩, 옥수수	조곡 2호	구봉식	40	930	560	24	24	-	베이지색	
		지퍼식	40	815	560	24	24	40		
현미, 쌀, 보리쌀		-	40	880	570	28	28	-	베이지색, 황다색 또는 백색 (수요처의 요구에 따 른다)	
			20	700	450	26	26	-		

(4) 제대 방법

- (가) 포대의 하단 봉제 부분은 2번 접어서 꿰매야 하고, 봉제선은 끝에서 13mm 이상 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바늘땀의 길이는 7mm 이하로 균일하게 꿰매야 한다.
- (나) 원단의 절단은 열 절단하여야 하며, 포대의 상단은 위사가 풀리지 않도록 처리 하여야 한다.
- (다) 지퍼식 포대의 지퍼 부착 위치는 포대 너비의 중앙부위 포대 안쪽으로 하며, 지퍼 봉제는 원단 윗부분을 안으로 2번 접어 바늘땀의 길이는 5mm 이하로 겹줄 봉제하되 지퍼의 끝에서 포대의 끝까지의 사이 부분은 사용에 지장이 없도 록 봉제 처리하며, 포대의 상단 모서리는 지퍼의 끝에서 포대의 끝까지를 한 변으로 하는 삼각형 형태가 되도록 봉제한다.
- (라) 포대는 찢어진 곳, 연신사가 끊어진 곳, 봉제 부분이 터진 곳, 봉합실이 빠진 곳 등 사용상 해로운 결점이 없어야 한다.
- (레) 기타 제대 방법은 일반 제대 관례에 따른다.

(5) 시험 방법

- (가) 직조밀도 : KS K 0511(직물의 밀도 측정방법)에 따른다.
- (나) 섬도 및 인장강도 : KS A 1037(포대용 폴리에틸렌 연신사)에 따른다. 다만, 시험편은 포대에서 채취한다.
- (다) 낙하시험 : KS A 1550(직물제 포대) “7.3 낙하시험” 방법에 따른다.
- (레) 실의 인장강도 : KS K 0409(실의 인장강도 및 신도 시험방법 : 외올법)에 따른다.

- (마) 지퍼의 치수 : 지퍼의 길이 및 이빨너비는 KS G 3102(슬라이드 파스너) 6.2 치수 측정 방법에 따른다.
- (바) 지퍼의 이빨 가로 인장강도 : KS G 3102 6.3 이빨 가로 인장강도 시험에 따른다.
- (사) 지퍼의 슬라이드 잠금강도 : KS G 3102 6.10 슬라이드 잠금강도 시험에 따른다.
- (아) 지퍼의 왕복 여닫는 내구도 : KS G 3102 6.11 왕복 여닫는 내구 시험에 따른다.

(6) 검사 및 표시

- (가) 구매기관은 이 규격에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 적격품만을 구매 공급하여야 하며,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품질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나) 조곡용 구봉식 포대의 윗부분에 꿰매는 선을 표시하되, 하단의 봉제선으로부터 조곡 1호는 885mm 부위에, 조곡 2호는 805mm 부위에 상단과 평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다) 인사의 색상, 양식 등 기타사항은 수요처의 요구에 따른다.

(7) 포장 방법

(가) 조곡용 구봉식

○ 제1 방법

곡류를 담은 후 포대 상단부를 나란히 하여 너비 5cm 정도로 2번 이상 접은 다음 강인한 화학사(인장강도 196N이상, 길이 240cm 이상의 꿰매는데 편리한 화학사)로 가급적 접은 부위 중앙부에 표시된 꿰매는 선을 따라 꿰매야 하며, 간격은 4~5cm 정도로 하여 내용물이 새지 않도록 단단히 꿰매야 한다.

○ 제2 방법

곡류를 담은 후 포대 상단부와 평행이 되도록 5cm정도 안으로 접어 넣은 다음 재봉틀로 꿰매되, 봉합실은 인장강도 39N이상인 것을 사용하고, 바늘땀 간격은 5mm이하로 한다.

○ 제3 방법

곡류를 담은 후 포대 상단부와 평행이 되도록 5cm정도 안으로 접어 넣거나 밖으로 접은 다음 봉제에 적합한 봉합실(인장강도 196N이상)을 사용, 가급적 접은 부위 중앙부를 손으로 꿰매거나 수동식 재봉기로 꿰매되 바늘땀의 간격은 2cm 이하로 균일하게 꿰매야 한다.

(나) 정곡용

조곡용 구봉식 포장방법 중 제2 방법에 따른다.

2) 대형 포대

(1) 자재

(가) 원단

- 몸체 : KS A 1037(포대용 폴리올레핀 연신사)의 규격 중 2종 폴리프로필렌계(P.P)로 섬도 172tex이상, 인장강도 65N이상의 연신사로 직조하여야 하며,

위사 너비는 4~6mm가 되어야 하고, 포대를 구성하고 있는 위사는 1회 이상 접어진 실로써 제작하여야 한다.

단, 벨트 부착부위는 이중직으로 제작하여야 하며 이중직은 모서리로부터 120±5mm의 위치에 경사는 2겹, 너비는 75mm이상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 주입구·배출구 : KS A 1037(포대용 폴리올레핀 연신사)의 규격 중 1종 폴리에틸렌 계(P.E)로 섬도 95tex이상, 인장강도 29N이상의 연신사로 제작하여야 하며, 안쪽에는 20 μ m이상 P.E코팅 하여야 한다.
- 배출구 덮개 및 보강대 : 몸체와 같다.
- 몸체 원단은 「식품공전」 ‘제 7.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의 폴리프로필렌(PP) 재질규격 및 용출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봉합실

- 봉제에 적합한 실로서 인장강도는 80N이상이어야 한다.

(다) 벨트

- 폴리프로필렌 계(P.P)로 직조된 것으로서 벨트의 인장강도는 15kN이상이어야 한다.

(라) 배출구 로프

- KS K 6405(폴리프로필렌 로프)의 호칭 굵기 5mm이상의 품질을 사용하여야 한다(단, 인장강도는 3.04kN 이상).

(마) 내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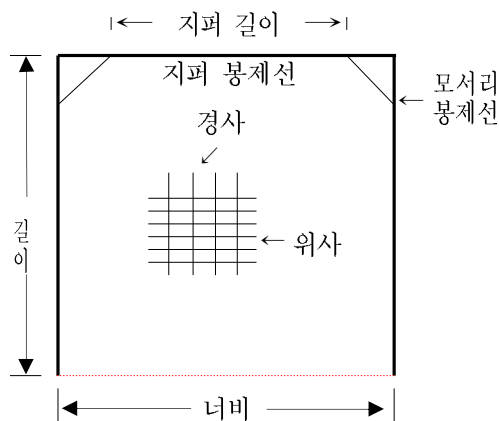
- 몸체원단 및 벨트의 재료는 KS A 1706(플렉시블 컨테이너)의 규정에 의한다. 단, 종류는 다회용을 적용한다.

(바) 슬라이드 파스너(이하 “지퍼”라 한다)

- 자동잠금장치가 있는 슬라이더가 부착된 지퍼로서 이빨 너비 5mm이상, 이빨 가로 인장강도 294N이상, 슬라이더 잠금강도 39N이상으로 왕복 여닫는 내구도는 100회 작동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2) 지퍼의 모양

원통형으로서 길이, 너비 및 지퍼 부착 위치는 다음과 같으며, 비포장재에만 적용한다.



(3) 크기 및 품질

(가) 몸체

적용 대상	구 분	수용량 (kg)	몸 체 (mm)				직조밀도 (올/5cm)		색 상
			가로	세로	높이	몸통둘레	경사	위사	
벼	원통형·벨트형	800	±20 900	±20 1,050	±30 1,500	±20 3,900	±1 28	±1 28	베이지색
쌀	원통형·벨트형	1,000	±20 900	±20 1,050	±30 1,500	±20 3,900	±1 28	±1 28	베이지색

* 가로·세로는 바깥쪽, 높이는 안쪽 치수를 말한다.

(나) 주입구·배출구

주입·배출구 크기 (mm)		직조밀도 (올/5cm)		지퍼 (mm)		끈 (mm)		색상
직경	길이	경사	위사	길이	부착위치	길이	부착위치	
±20	±30	±1	±1	±50	±50	±50	±50	백색 (끈 제외)
550	500	16	16	550	500 (상판으로부터)	1,000 (혹20)	300 (하판으로부터)	

※ 지퍼는 벼 포장제에만 적용

(다) 부속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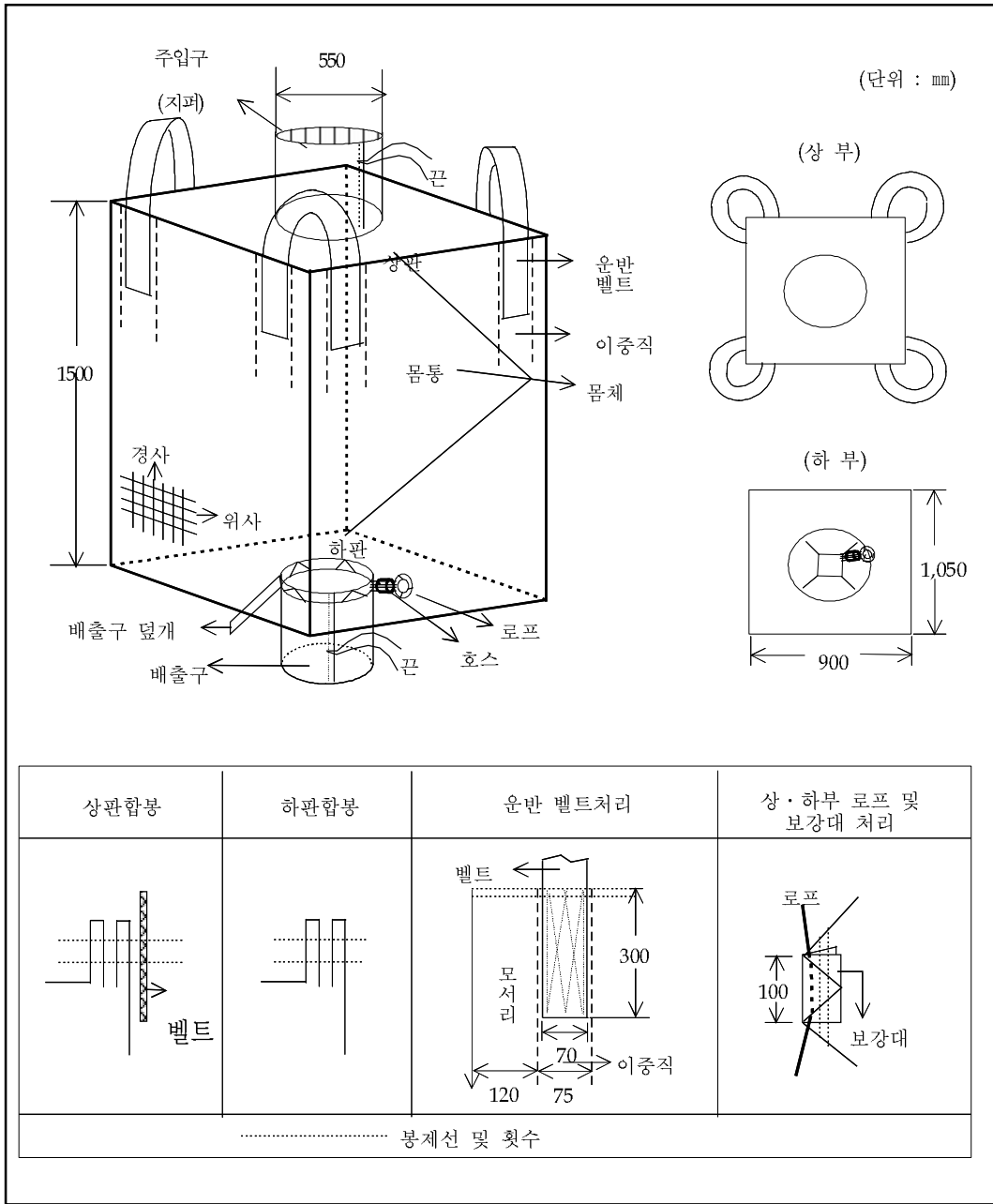
운반벨트 (mm)			로프 (mm)	호스(PVC) (mm)		배출구 덮개 (mm)	
너비	길이	색상	길이	직경(내경)	길이	가로	세로
±2	±20	베이지색	±50	±2	±5	±20	±20
70	1200		1800	13	30	250 또는 직경 350	300

(3) 제대방법

- (가) 포대의 몸통과 하판 및 상판의 봉제 부분은 각각 안쪽으로 1번 접어서 10mm이하의 동일한 간격으로 2줄로 꿰맨다.
- (나) 배출구 부착을 위한 하판 절단은 대각선 방향으로 봉제선 안쪽에 위치하도록 절단 한다.
- (다) 주입구와 상판, 배출구와 하판 결합 봉제 부분은 1회 이상 접어서 1~2줄로 꿰맨다.
- (라) 배출구 로프를 끼워 넣을 부위에 보강대(100±10mm×100±10mm)를 안쪽에 부착 후 2줄로 꿰맨다.
- (마) 바늘땀의 길이는 10mm 이하로 균일하게 꿰매야 한다.
- (바) 운반용 벨트는 이중직으로 제직된 부위의 중앙에 봉합실로 단단히 꿰맨다.

- (사) 원단·벨트·로프·끈의 재단은 열 재단하여 재단부위가 풀리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 (아) 포대는 찢어진 곳, 연신사가 끊어진 곳, 봉제 부분이 터진 곳, 봉합실이 빠진 곳, 봉제 마무리 등 사용상 해로운 결점이 없어야 하고, 벼의 주입과 배출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 (자) 필요에 따라 운반벨트, 몸통 보강벨트, 상부주입구 덮개 등 보완적인 것은 수요자의 요구에 따른다.
 - (차) 지퍼식 포대의 지퍼 부착 위치는 포대 너비의 중앙부위 포대 안쪽으로 하며, 지퍼 봉제는 원단 윗부분을 안으로 2번 접어 바늘땀의 길이는 5mm 이하로 겹줄 봉제하되 지퍼의 끝에서 포대의 끝까지의 사이 부분은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봉제 처리하며, 포대의 상단 모서리는 지퍼의 끝에서 포대의 끝까지를 한 번으로 하는 삼각형 형태가 되도록 봉제한다.
 - (카) 기타 제대 방법은 ‘모양’ 과 일반 제대 관례에 따른다.
- (4) 들어올리기 강도
- (가) 최대 충전 무게(벼 800kg, 쌀 1,000kg)에 상당하는 벼 또는 쌀, 모의 내용물을 110cm정도 균일하게 채우고 최대 충전무게의 6배(최초 충전 무게 포함)에 상당하는 하중을 들어 올린 상태에서 내용물의 누설, 포장재 파손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5) 모양



(6) 시험 방법

- (가) 직조밀도 : KS K 0511(직물의 밀도 측정방법)에 따른다.
- (나) 원단 섬도 및 인장강도 : KS A 1037(포대용 폴리에틸렌 연신사)에 따른다.
- (다) 실의 인장강도 : KS K 0409(실의 인장강도 및 신도 시험방법 : 외올법)에 따른다.
- (라) 벨트의 인장강도 : KS K 0411(웨빙, 테이프 및 브레이드의 인장 강력 및 신도 시험방법)에 따른다.
- (마) 로프의 인장강도 : KS K 6405(폴리프로필렌 로프)에 따른다.
- (바) 지퍼의 치수 : 지퍼의 길이 및 이빨너비는 KS G3102(슬라이드 파스너) 6.2 치수 측정 방법에 따른다.
- (사) 지퍼의 이빨 가로 인장강도 : KS G 3102 6.3 이빨 가로 인장강도 시험에 따른다.
- (아) 지퍼의 슬라이드 잠금강도 : KS G 3102 6.10 슬라이드 잠금강도 시험에 따른다.
- (자) 지퍼의 왕복 여닫는 내구도 : KS G 3102 6.11 왕복 여닫는 내구 시험에 따른다.
- (차) 위 시험편은 포대에서 채취한다.
- (카) 치수 측정 · 들어올리기 강도 · 내후성 시험 : KS A 1706(플렉시블 컨테이너)에 준한다.

(7) 검사 및 표시

- (가) 구매기관은 이 규격에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 적격품만을 구매 공급하여야 하며,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품질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나) 몸체 전면과 옆면 2개 면의 상단부위(1,100mm·1,150mm 하단에서 위로)에 각각 두 개의 선(한줄의 두께는 5mm 이상, 길이는 450mm 이상)을 긋고 그 중앙에 '중량표시선'이라고 표시한다.
- (다) 몸체 전면과 옆면 2개 면의 중앙부위(하단에서 위로 1000±10mm에 글자의 상단이 위치)에 '공공비축 벼' 또는 '가공용 쌀'이라 표시하고 이로부터 아래로 60mm에 비는 '(실중량 800kg)', '쌀은 '(실중량 1,000kg)' 이라 표시한다.
- (라) 몸체 전면과 옆면 2개 면의 하단부위(하단에서 위로 150mm에 글자 하단이 위치)에 제조원 및 전화번호, 제작 연 · 월을 표시한다.
- (마) 제조업자는 포장재 사용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 · 지시 · 경고 · 기타의 표시를 쉽게 훼손되지 않는 재질과 인쇄로 몸체 전면과 옆면 2개 면의 상단 중앙 봉제부위에 부착(제봉)한다.
- (바) 포장재 전면과 옆면 2개 면의 중앙부위에 품종, 연산, 성명, 주소, 검사표시(등급, 검사관)란을 표시한다.
- (사) 기타사항은 수요처의 요구에 따른다.

(8) 포장방법 등

- (가) 하부의 끈과 로프는 주입 전에 단단히 묶되, 배출에 용이하도록 풀기 쉽게 묶는다.
- (나) 벼 또는 쌀을 주입구에 넣는 과정에 상·하로 3-4회 정도 다지기 작업을 하여 내용물을 가볍게 다진 후, 주입이 끝나면 상단을 고르게 편다.
- (다) 주입 후 상부의 끈은 풀기작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단단히 묶는다. 지퍼의 경우 지퍼를 닫은 후 모서리봉제선 안쪽까지 넣어준다.
- (라) 주입·배출·운반·적재 등 포장재 사용 시에는 반드시 4개의 운반벨트를 사용하고 위험으로부터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마) 적재는 무게 중심이 더미 중앙에 오도록 안전 적재 하여야 한다.
- (바) 대형포대는 야적을 금지(직사광선과 비로부터 보호)하고, 반복 사용 시에는 강도·몸체·봉제·벨트·로프 등 안전 상태를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지대

(1) 자재

(가) 원지

① 황색 지대

KS M 7501(크라프트지)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백색 지대

황색지대규격을 적용한다.

(나) 봉합실

20'S로서 10합사 이상의 면사 또는 이와 동등한 품질의 것으로 인장강도 44.1N 이상으로 하되 편연(片燃)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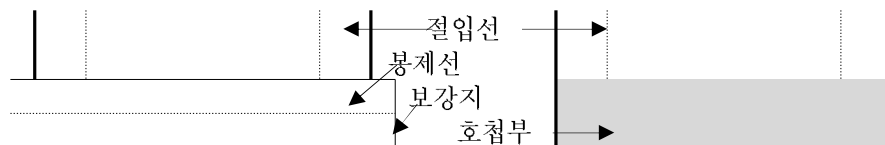
(다) 접착제

접착제는 악취 및 인체에 해가 없는 녹말분 및 내수성 강력 접착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모양

(가) 하단 봉합형

(나) 하단 호첩형



(3) 크기 및 품질

(가) 황색 지대

용도	수용량 (kg)	원지 겹수 및 평량		모양	몸체(mm)		절입 (mm)	시접 (mm)	상하단 호첩부 (mm)	매당 무게 (g)
		겹수	겹수/평량		길이	너비				
쌀, 보리쌀	5	2	1/80, 1/90	봉재형	(±5)	(±3)	(±3)	(±1)	(±2)	(±5%)
				호첩형	340	305	75	15	-	50
쌀, 보리쌀 현미	10	3	3/80	봉재형	320	305	75	-	40	50
				호첩형	550	300	75	15	-	100
	20	4	4/80 2/80, 2/90	봉재형	500	305	75	-	50	100
				봉재형	650	420	75	15	-	210
		3	3/90 2/80, 1/90	호첩형	650	420	75	15	-	220
				호첩형	620	420	75	-	50	180
10	3	3/80	봉재형	620	420	75	-	50	180	
			호첩형	570	305	75	15	-	110	
콩, 옥수수	10	3	3/80	봉재형	500	305	75	-	50	110
				호첩형	550	300	75	15	-	100
	20	4	4/80 2/80, 2/90	봉재형	650	420	75	15	-	210
				봉재형	650	420	75	15	-	220
		3	3/90 2/80, 1/90	호첩형	620	420	75	-	50	200
				호첩형	620	420	75	-	50	190
쌀, 보리쌀, 현미 외포장 - P.E 2kg×10대 - P.E 4kg×5대	20	2	2/90	봉재형	660	420	75	15	-	130
				호첩형	640	420	75	-	50	130

(나) 백색 지대

외부 1겹은 백색지대를 사용하되, 안쪽은 황색지대로 하고, 백색지대의 크기 및 품질은 황색지대 규격을 적용한다.

(4) 제대 방법

(가) 제대 및 포장방법

① 봉재형

㉞ 지대 위아래에는 반드시 보강지로 너비 50mm, 평량 115g/m² 이상의 크라프트 주름지를 사용하여 봉재하고, 주름지는 지대 밖 양쪽으로 각각 40mm 이상의 여분을 두어야 한다.

- ㉔ 지대의 위아래가 평행이 되도록 하여 바늘땀은 7~10mm 간격으로 균일하게 받침종이 또는 받침실을 대고 재봉하여야 하며, 바늘땀의 강도는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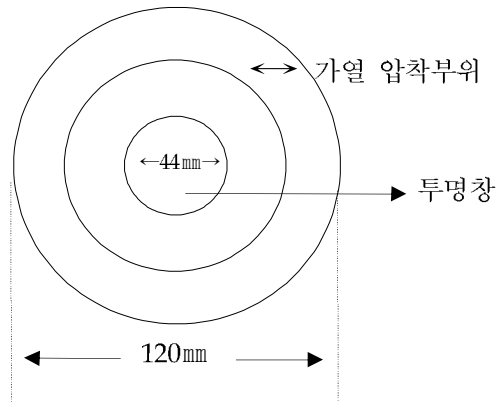
겹수	강도 kn
3	1.77이상
4	2.16이상

② 호첩형

- ㉔ 지대 위아래에서 50mm를 평행으로 접어 접착제로 균일하게 붙여야 한다.

- ㉔ 상단을 봉재할 경우에는 ①항의 봉재방법을 따른다.

- (나) 지대의 위아래 선은 원지의 세로 방향과 일치하고, 몸통접착부의 접착 너비는 10mm이상이어야 하며 접착제로 균일하게 붙여야 한다.
- (다) 지대는 각 겹과 전체가 균형이 취해지도록 제대되어야 하며 각 겹마다 찢어진 곳, 구멍 및 주름 등 사용상 결함이 없어야 한다.
- (라) 투명 창은 다음 그림과 같이 직경 44mm로 설치하고, 두께 0.07mm 폴리에틸렌 필름을 직경 120mm 크기로 겹장과 가운데 장, 가운데 장과 속장 사이에 두 겹을 대고 20mm 너비로 가열 압착하되, 투명 창의 설치 여부 및 설치 위치는 수요처의 요구에 따른다.



- (마) 기타 사항은 KSA1541(크라프트 지대)의 규격을 적용하되, KSA 1541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제대 관행에 따른다.

(5) 낙하 강도

- (가) 1회 시험용 공시포대는 10매 이상으로 한다.
- (나) 다음 “6항 다”의 방법에 따라 각 10회 시험할 때 시료 10매 중 5회까지는 파대되지 않아야 하며 6회 이후에는 1매까지 허용한다.

(6) 시험 방법

- (가) 원지의 시험 : KS M 7501(크라프트지) KS M 7500(크라프트 신장지)의 “시험 방법”에 따른다.
- (나) 실의 인장강도 : KS K 0409(실의 인장강도 및 신도 시험방법)에 따른다.
- (다) 낙하강도 : KS A 1015(크라프트 대형지대의 낙하강도 시험방법)에 따른다.
- (라) 접착상태 : KS M 7014(펄프의 알파·베타·감마의 셀룰로오스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7) 검사 및 표시

- (가) 공인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나) 검사에 합격된 포대는 매 장마다 “규격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다) 포대의 매 장마다 포대의 무게와 제조자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 (라) 인사의 색상, 양식 등 기타사항은 수요처의 요구에 따른다.

2. 서류

가. 합성수지대(P.P대또는P.E대)

(1) 자재

적용대상	수용량(kg)	조 건
고 구 마 절간고구마	40 20, 40	직물제 포대 또는 폴리에틸렌대로서 수송 중 새거나 찢어질 우려가 없고, 공기가 통할 수 있으며 깨끗한 것이어야 한다.

(2) 포장방법

튼튼한 화학사로 셀 우려가 없는 간격으로 꿰매거나 상단부를 나란히 한 다음 결박끈을 대고 3회 이상 접어 상투 모양으로 조이고, 접은 부위 아래쪽을 3회 이상 돌려 묶어야 한다.

나. 그물주머니(망대)

(1) 자재

- (가) 원단 : 고밀도 폴리에틸렌 모노필라멘트사로 메리야스 상으로 직조한 것이어야 한다.
- (나) 봉합실 : PP 4합사 또는 이와 동등한 품질의 것이어야 한다.
- (다) 화학사(끈) : 인장강도 20kgf 이상이어야 한다.

(2) 크기 및 품질

적용대상	수용량(kg)	크 기 (mm)	무 게 (g)
고 구 마	10	(700±30)×250	25 이상
	20	(800±30)×400	45 이상

(3) 포장 방법 : 화학사로 내용물이 새지 않도록 상단부를 묶어야 한다.

다. 골판지 상자

(1) 자재 및 크기

적용대상	수용량 (kg)	골판지의 종류	포장외치수(mm)			파열강도 (kg/cm ²)	압축 강도 (kg)	수분 함량 (%)	발수도
			길이	너비	높이				
고구마	10	KS A 1502의 2중 양면골판지 1종	385	310	(±10) 200	10	350	(±2.5) 10.5	R ₂
	20	KS A 1502의 2중 양면골판지 2종	480	350	270	14	450	"	"

(2) 시험 방법 : 과실류와 같다.

(3) 검사 : 공인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4) 포장 방법 : 과실류와 같다.

3. 특용작물류

가. 폴리에틸렌대(P.E대)

(1) 자재 및 모양 : 곡류와 같다.

(2) 크기 및 품질

적용 대상	수용량 (kg)	몸체(mm)		접착부 너비(mm)	접착부 밖의 너비(mm)	필름의 호칭 두께(mm)
		길이	너비			
참깨, 알뜡콩	2	(±5) 330	(±2) 240	(±1) 5	이상 10	0.07
	4	450	300	5	10	0.08
	5	480	300	5	10	0.10

(3) 낙하강도, 시험방법, 검사 및 표시, 포장방법 : 곡류와 같다.

나. 직물제 포대(P.P대)

(1) 자재 및 모양 : 곡류와 같다.

(2) 크기 및 품질

적용 대상	수용량 (kg)	구분	몸체 (mm)		직조밀도 (올/5cm)		지퍼 길이 (cm)	색상	낙하강도
			길이	너비	경사	위사			
유채	40	구봉식 지퍼식	±10 1,010	±10 610	±2 24	±2 24	이상 -	황다색	낙하시험 결과 지 퍼 및 원단의 파 손, 봉합의 터짐 지퍼 잠금 장치의 열림 등에 의하여 내용물이 새지 않 아야 한다.
			895	610	24	24	40		
참깨, 알뜡콩	40	구봉식 지퍼식	±10 930	±10 590	±2 28	±2 28	이상 -	-	낙하시험 결과 지 퍼 및 원단의 파 손, 봉합의 터짐 지퍼 잠금 장치의 열림 등에 의하여 내용물이 새지 않 아야 한다.
			815	590	28	28	45		

(3) 제대방법, 시험방법, 검사 및 표시, 포장방법 : 곡류와 같다.

다. 지대

- (1) 자재 및 모양 : 곡류와 같다.
 (2) 크기 및 품질

적용 대상	수용량 (kg)	원지 겹수 및 평량		모 양	몸체(mm)		절입 (mm)	시접 (mm)	하 단 호첩부 (mm)	보강지(mm)		매당 무게 (g)	
		겹수	겹수/평량		길이	너비				상단	하단		
참 깨 알땅콩	10	2	3/80	겹	불합형	(±5) 600	(±3) 350	(±3) 75	(±1) 15	(±2) -	이상 -	이상 -	(±5%) 130
					호첩형	580	350	75	-	50	-	-	130
	20	3	3/80	불합형	730	420	75	15	-	30	30	190	
				호첩형	710	420	75	-	50	30	-	180	
			3/90	불합형	730	420	75	15	-	-	-	200	
				호첩형	710	420	75	-	50	-	-	200	

- (3) 제대방법, 낙하강도, 시험방법, 검사 및 표시, 포장방법 : 곡류와 같다.

라. 합성수지대(P.P대또는P.E대)

- (1) 자재

적용 대상	수용량 (kg)	조 건
피땅콩	30	직물제 포대 또는 폴리에틸렌대로서 수송 중 새거나 찢어질 우려가 없고, 공기가 통할 수 있으며 깨끗한 것이어야 한다.

- (2) 포장 방법

포대 상단부를 마주 댄 후 한번 이상 겹고 튼튼한 화학사로 셀 우려가 없는 간격으로 꿰매야 한다.

4. 과실류

가. 골판지 상자

- (1) 자재 및 크기

적용대상	수용량 (kg)	골판지의 종류	포장외치수(mm)			과열강도 (kg/cm ²)	압축 강도 (kg)	수분 함량 (%)	발수도
			길이	너비	높이				
사과(Net)	15	KS A 1502의 2중 양면 골판지 2중	460	330	(±10) 325	이상 14.0	이상 350	(±2.5) 10.5	R ₂
	(Tray) 15		"	510	360	275	14.0	350	10.5
배 (2단)	15	"	505	360	230	14.0	350	10.5	"
	(3단) 15		"	450	310	300	14.0	350	10.5
단감	15	"	480	360	215	14.0	350	10.5	"
감귤	15	KS A 1033의 방수골 판지 중 내수골판지 2 호 이상	370	315	265	14.0	700	10.5	"

【기타 조건】

5kg, 10kg들이 골판지 상자는 KS A 1531(외부 포장용 골판지 상자)의 <표1> 2중 양면 골판지 상자 1종의 규정에 따른다.

(2) 시험 방법

- (가) 파열 강도 : KS M 7082(종이 및 판지의 고압 파열강도 시험 방법)에 따른다.
- (나) 압축 강도 : KS A 1012(포장 화물 및 용기의 압축시험 방법)에 따른다.
- (다) 수분 함량 : KS M 7023(종이 및 판지의 수분 시험 방법)에 따른다
- (라) 발수도 : KS M 7057(종이 및 판지의 발수도 시험 방법)에 따른다.
- (마) 결박재 : KS A 1507(폴리프로필렌 밴드)의 제6항 시험 방법에 따른다.

(3) 검사

공인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4) 포장 방법

- (가) 봉합 : 날개 봉합은 폭 2mm이상의 평철사로 상·하 양면에 각각 2개소 이상 봉합하거나 너비 50mm이상의 포장용 감테이프로 상·하 양면을 봉합 한다.
- (나) 결박 : KS A 1507(폴리프로필렌밴드)의 제16호 PP밴드로 세로 2개소를 결박하거나 또는 연질 폴리끈으로 세로 2개소를 두 돌림하여 묶는다.

5. 채소류

가. 직물제 포대(P.P대)

(1) 자재

(가) 원단 : KS A 1037(포대용 폴리올레핀 연신사)중 섬도 900데니어 이상, 인장 강도 3.0kgf 이상의 폴리프로필렌 연신사로 직조하여야 하며, 직조밀도는 20 울/5cm이어야 한다.

또한, 통기성을 좋게 하기 위하여 원단의 위사 너비는 4~6mm가 되어야 하고, 위사는 1회 이상 접어진 실로써 제작하여야 한다.

(나) 봉합실 : 봉제에 적합한 실로서 인장강도는 4kgf 이상이어야 한다.

(2) 모양 : 곡류의 원통형과 같다.

(3) 크기

적용대상	수용량 (kg)	몸 체 (mm)	
		길 이	너 비
고 추	3	800 (±30)	500
	10	1,000	700
	20	1,250	850

(4) 시험 방법

- (가) 직조 밀도 : KS K 0511(직물의 밀도 측정 방법)에 따른다.
- (나) 섬도 및 인장강도 KS A 1037(포대용 폴리올레핀 연신사)에 따른다.

- (다) 실의 인장강도 : KS K 0409(실의 인장강도 및 신도 시험 방법의 외올법)에 따른다.
 (5) 검사 : 공인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6) 포장 방법 : 내용물이 새지 않도록 상단부를 화학사로 묶어야 한다.

나. 골판지 상자

(1) 자재 및 크기

적용대상	수용량(kg)	골판지의 종류	포장외치수(mm)			파열강도(kg/cm ²)	압축강도(kg)	수분함량(%)	발수도
			길이	너비	높이				
마늘	5	KS A 1502의 중양면골판지 1종	275	195	220	8	200	10.5	R ₂
	10	"	385	310	210	10	350	"	"
	20	KS A 1502의 중양면골판지 2종	480	350	270	14	450	"	"
양파	5	KS A 1502의 중양면골판지 1종	275	195	205	8	200	"	"
	10	"	385	310	200	10	350	"	"
	20	KS A 1502의 중양면골판지 2종	480	350	255	14	450	"	"

- (2) 시험 방법 : 과실류와 같다.
 (3) 검사 : 공인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4) 포장 방법 : 과실류와 같다.

다. 그물주머니(망대)

- (1) 자재 : 서류와 같다.
 (2) 크기 및 품질

적용대상	수용량(kg)	크기(mm)	무게(g)
마늘	3	(450±30)×200	12이상
	5	(550±30)×200	15
	10	(700±30)×250	25
	20	(800±30)×450	35
양파	5	(550±30)×200	15
	10	(700±30)×250	25
	20	(800±30)×400	35

- (3) 포장 방법 : 내용물이 새지 않도록 상단부를 화학사로 묶어야 한다.

6. 수출·입 농산물

당사국간의 계약규격에 따른다.

【별표3】

농산물의 품위 검사규격

1. 벼

항목 등급	수분 (%)	최저한도		최고한도			
		형질	제현율 (%)	피해립·착색립(%)		이종곡립 (%)	이물 (%)
				계	착색립		
특등	130~150	특등표준품	82.0	1.0	0.0	0.2	0.2
1등	130~150	1등표준품	78.0	4.0	0.0	0.5	0.5
2등	130~150	2등표준품	74.0	7.0	0.1	1.0	1.0
3등	130~150	3등표준품	65.0	10.0	0.5	2.0	2.0

【기타조건】

- ① 통일벼 품종의 제현율 최저한도는 1등 75.0%, 2등 70.0%, 3등 65.0%로 한다.
- ② 찼벼 중 메벼 혼입률 최고한도는 특등 30%, 1등 50%, 2등 100%, 3등 150%로 한다.
- ③ 수분이 13.0%미만일 경우는 2등급을 낮추어 합격처리할 수 있다.

【정의】

- ① 백분율(%) : 전량에 대한 무게의 비율을 말한다.
- ② 형질 : 충실도, 단단함과 무름, 색택, 낱알의 모양과 고르기 등을 말한다.
- ③ 제현율 : 벼의 껍질을 벗겨 이를 1.6mm 줄체로 치면 체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현미의 비율을 말한다.
- ④ 수분 : 105℃ 건조법 또는 이와 동등한 값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측정된 함수율을 말한다.
- ⑤ 피해립 : 손상된 낱알(발아립·병해립·부패립·충해립 등)을 말한다.
다만, 피해가 경미하여 현미의 품질 및 제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것은 제외한다.
- ⑥ 착색립 : 표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색된 낱알 및 앙미를 말한다. 다만, 도정하면 제거되거나 쌀의 품질 및 도정수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것은 제외한다.
- ⑦ 이종곡립 : 벼 외의 다른 곡립을 말한다.
- ⑧ 이물 : 곡립 외의 것을 말한다.

2. 현미

가. 일반계 품종

항목 등급	최저 한도			최고 한도							
	형질	용적중 (g)	정립 (%)	수분 (%)	피해립·사미·착색립			누 (%)	이종 곡립 (%)	이물	
					계 (%)	사미 (%)	착색립 (%)			계 (%)	돌 (1.5kg 중개)
1 등	1등표준품	810	75.0	15.0	10.0	7.0	0.0	0.2	0.3	0.1	2
2 등	2등표준품	800	70.0	15.0	20.0	10.0	0.1	0.3	0.5	0.2	2
등외	등외표준품	780	60.0	15.0	25.0	15.0	0.5	0.5	1.0	0.7	2

【기타 조건】

- ① 찰현미 중 메현미 혼입률 최고한도는 1등 5.0%, 2등 10.0%, 등외 15.0%로 한다.
- ② 정부방출용 현미는 2등 이상으로 하고 누 혼입률 최고한도는 1.5kg중 30립으로 한다.

나. 통일계 품종

항목 등급	최저 한도			최고 한도							
	형질	용적중 (g)	정립 (%)	수분 (%)	피해립·사미·착색립			누 (%)	이종 곡립 (%)	이물	
					계 (%)	사미 (%)	착색립 (%)			계 (%)	돌 (1.5 kg 중개)
1 등	1등표준품	790	60.0	15.0	18.0	10.0	0.0	0.2	0.3	0.1	2
2 등	2등표준품	780	50.0	15.0	30.0	14.0	0.1	0.3	0.5	0.2	2
등외	등외표준품	760	45.0	15.0	40.0	18.0	0.5	0.5	1.0	0.7	2

【기타 조건】

- ① 찰현미 중 메현미 혼입률 최고한도는 1등 5.0%, 2등 10.0%, 등외 15.0%로 한다.
- ② 정부방출용 현미는 2등 이상으로 하고 누 혼입률 최고한도는 1.5kg중 30립으로 한다.

【정의】

- ① 백분율(%) : 전량에 대한 무게의 비율을 말한다.
- ② 형질 : 껍질의 얇음과 두터움, 충실도, 단단함과 무름, 색택, 낱알의 모양과 고르기, 껍질의 굽힌 정도, 심백 및 복백의 정도 등을 말한다.
- ③ 용적중 : 부라벨곡립계로 측정된 1ℓ의 무게를 말한다.
- ④ 정립 : 피해립, 사미, 착색립, 미숙립, 누, 이종곡립 및 이물을 제외한 낱알을 말한다.
- ⑤ 수분 : 105℃ 건조법 또는 이와 동등한 값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측정된 함수율을 말한다.
- ⑥ 피해립 : 손상된 낱알(발아립·병해립·충해립·부패립·금간 낱알·기형립·다미·싸라기 등)을 말한다. 다만, 피해가 경미하여 쌀의 품질 및 현백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것은 제외한다.

- ⑦ 사미 : 체적의 4분의 3 이상이 분상질 상태인 낱알을 말한다.
- ⑧ 착색립 : 표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색된 낱알 및 앵미를 말한다. 다만, 도정하면 제거되거나 쌀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것은 제외한다.
- ⑨ 미숙립 : 사미를 제외한 성숙하지 아니한 낱알을 말한다.
- ⑩ 금간 낱알 : 2줄 이상의 금이 간 낱알을 말한다.
- ⑪ 이종곡립 : 현미·뉘 외의 다른 곡립을 말한다.
- ⑫ 이물 : 곡립 외의 것과 KS A 5101-1 표준체 중 호칭치수 1.7mm인 그물체(이하 "1호체"라 한다)로 치면 체를 통과하는 것을 말한다.
- ⑬ 돌 : 돌·콘크리트 조각 등 광물성의 고형물로서 1호체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크기의 것을 말한다.

3. 쌀

쌀의 품위 검사규격은 「쌀의 등급 및 단백질 함량 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133호)」 「별표1」 쌀 등급 기준(제2조1항 관련)에 따라 밥쌀용과 중·단립종 가공용쌀은 “상”, 장립종 가공용쌀은 “보통” 기준을 적용하되, 중·단립종 가공용쌀의 싸라기 최고한도는 10.0%, 분상질립은 7.0%로 하고, 쌀의 도정도(강층의 벗겨진 정도와 제강된 정도)는 “표준품” 이상으로 하며, 수분의 최고한도는 15.0%로 한다.

4. 겉보리

항목 등급	최 저 한 도		최 고 한 도			
	형 질	정립 (%)	수분 (%)	피해립 (%)	이종곡립 (%)	이물 (%)
1 등	1 등표준품	90.0	14.0	6.0	1.5	0.4
2 등	2 등표준품	75.0	14.0	10.0	3.0	0.6
등 외	등외표준품	55.0	14.0	15.0	6.0	1.0

【정의】

- ① 백분율(%) : 전량에 대한 무게의 비율을 말한다.
- ② 형질 : 껍질의 얇음과 두터움, 충실도, 단단함과 무름, 색택, 낱알의 모양과 고르기 등을 말한다.
- ③ 정립 : 2.0mm 세로눈의 판체로 치면 체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건전한 낱알을 말한다.
- ④ 수분 : 105℃ 건조법 또는 이와 동등한 값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측정된 함수율을 말한다.
- ⑤ 피해립 : 손상된 낱알(발아립·병해립·부패립·충해립·금간 낱알·과채립·착색립 등)을 말한다. 다만, 피해가 경미하여 보리쌀의 품질 및 도정수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것은 제외한다.

⑥ 이종곡립 : 겉보리 외의 다른 곡립을 말한다.

⑦ 이물 : 곡립 외의 것을 말한다.

5. 쌀보리

등급	최 저 한 도		최 고 한 도			
	형 질	정립 (%)	수분 (%)	피해립 (%)	이종곡립 (%)	이물 (%)
1 등	1 등표준품	85.0	14.0	6.0	1.5	0.4
2 등	2 등표준품	70.0	14.0	10.0	3.0	0.6
등 외	등외표준품	50.0	14.0	15.0	5.0	1.0

【정의】

- ① 백분율(%) : 전량에 대한 무게의 비율을 말한다.
- ② 형질 : 껍질의 얇음과 두터움, 충실도, 단단함과 무름, 색택, 낱알의 모양과 고르기 등을 말한다.
- ③ 정립 : 2.0mm 세로눈의 판체로 치면 체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건전한 낱알을 말한다.
- ④ 수분 : 105℃ 건조법 또는 이와 동등한 값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측정함수율을 말한다.
- ⑤ 피해립 : 손상된 낱알(발아립 · 병해립 · 부패립 · 충해립 · 금간 낱알 · 파쇄립 · 착색립 등)을 말한다. 다만, 피해가 경미하여 보리쌀의 품질 및 도정수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것은 제외한다.
- ⑥ 이종곡립 : 쌀보리 외의 다른 곡립을 말한다.
- ⑦ 이물 : 곡립 외의 것을 말한다.

6. 맥주보리

등급	최 저 한 도			최 고 한 도					색 택
	형 질	발아세 (%)	정립 (%)	수분 (%)	세맥 (%)	피해립 (%)	이종곡립 (%)	이물 (%)	
1 등	1 등표준품	92.0	80.0	13.0	8.0	4.0	1.5	0.5	품종고유의 색택
2 등	2 등표준품	92.0	65.0	13.0	10.0	6.0	3.0	1.0	—
등 외	등외표준품	92.0	50.0	13.0	15.0	9.0	5.0	2.0	—

【정의】

- ① 백분율(%) : 전량에 대한 무게의 비율을 말한다.
- ② 형질 : 껍질의 얇음과 두터움, 충실도, 단단함과 무름, 색택, 낱알의 모양과 고르기 등을 말한다.

- ③ 발아세 : 정립으로서 20℃에서 96시간에 발아한 낱알 수의 비율을 말한다.
- ④ 정립 : 2.5mm 세로눈의 판체로 치면 체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건전한 낱알을 말한다.
- ⑤ 수분 : 105℃ 건조법 또는 이와 동등한 값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측정된 함수율을 말한다.
- ⑥ 세맥 : 2.2mm 세로눈의 판체로 치면 체를 통과하는 낱알을 말한다.
- ⑦ 피해립 : 손상된 낱알(발아립·병해립·부패립·충해립·금간 낱알·파쇄립·착색립·부아립·박피립 등)을 말한다. 다만, 피해가 경미하여 맥아의 품질 및 제품 수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것은 제외한다.
- ⑧ 이종곡립 : 맥주보리 외의 다른 곡립을 말한다.
- ⑨ 이물 : 곡립 외의 것을 말한다.
- ⑩ 품종 고유의 색택 : 일반적 재배 조건에서 나타나는 그 품종의 색택을 말한다.

7. 밀

항목 등급	최 저 한 도		최 고 한 도				
	형 질	정립 (%)	수분 (%)	피해립 (%)	이종곡립 (%)	이 물	
						계 (%)	비린깜부기병립 (1kg중 개)
1 등	1 등표준품	90.0	13.0	6.0	0.5	0.4	15
2 등	2 등표준품	75.0	13.0	10.0	1.0	0.6	30
등외	등외표준품	60.0	13.0	15.0	3.0	1.0	50

【정의】

- ① 백분율(%) : 전량에 대한 무게의 비율을 말한다.
- ② 형질 : 겹질의 얇음과 두터움, 충실도, 단단함과 무름, 색택, 낱알의 모양과 고르기 등을 말한다.
- ③ 정립 : 2.4mm 세로눈의 판체로 치면 체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건전한 낱알을 말한다.
- ④ 수분 : 105℃ 건조법 또는 이와 동등한 값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측정된 함수율을 말한다.
- ⑤ 피해립 : 손상된 낱알(발아립·병해립·부패립·충해립·파쇄립·착색립 등)을 말한다. 다만, 피해가 경미하여 가공 제품의 품질 및 수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것은 제외한다.
- ⑥ 이종곡립 : 밀 외의 다른 곡립을 말한다.
- ⑦ 이물 : 곡립 외의 것을 말한다.
- ⑧ 비린깜부기병립 : 비린깜부기병균에 침해된 낱알을 말한다.

8. 귀리

등급 \ 항목	최 저 한 도		최 고 한 도			
	형 질	정립 (%)	수분 (%)	피해립 (%)	이종곡립 (%)	이물 (%)
1 등	1 등표준품	80.0	14.0	6.0	1.0	0.5
2 등	2 등표준품	70.0	14.0	10.0	2.0	1.0
등 외	등외표준품	50.0	14.0	15.0	3.0	2.0

【정의】

- ① 백분율(%) : 전량에 대한 무게의 비율을 말한다.
- ② 형질 : 껍질의 얇음과 두터움, 충실도, 단단함과 무름, 색택, 낱알의 모양과 고르기 등을 말한다.
- ③ 정립 : 2.0mm 세로논의 판체로 치면 체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건전한 낱알을 말한다.
- ④ 수분 : 105℃ 건조법 또는 이와 동등한 값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측정함수율을 말한다.
- ④ 피해립 : 손상된 낱알(발아립 · 병해립 · 부패립 · 충해립 · 파쇄립 · 착색립 등)을 말한다. 다만, 피해가 경미하여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것은 제외한다.
- ⑤ 이종곡립 : 귀리 외의 다른 곡립을 말한다.
- ⑥ 이물 : 곡립 외의 것을 말한다.

9. 보리쌀

등급 \ 항목	최저한도	최 고 한 도					
		수분 (%)	착색립 (%)	싸 라 기		이 물	
	도정도			큰싸라기 (%)	잔싸라기 (%)	계 (%)	돌(1.5kg 중 개)
합격	표준품	14.0	1.0	15.0	0.3	0.2	1

【기타 조건】

- ① 쌀보리쌀의 큰싸라기 혼입률 최고한도는 10.0%로 한다.
- ② 맥주보리를 원료로 하는 겉보리쌀의 큰싸라기 혼입률 최고한도는 25.0%로 한다.

【정의】

- ① 백분율(%) : 전량에 대한 무게의 비율을 말한다.
- ② 도정도 : 강층의 벗겨진 정도와 제강된 정도를 말한다.
- ③ 수분 : 105℃ 건조법 또는 이와 동등한 값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측정함수율을 말한다.
- ④ 착색립 : 표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색된 낱알을 말한다. 다만, 보리쌀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것은 제외한다.

- ⑤ 큰싸라기 : 1호체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싸라기로서 그 길이가 완전한 낱알 평균 길이의 2분의 1 미만인 것을 말한다.
- ⑥ 잔싸라기 : 1호체로 치면 통과하되, 2호체로 치면 통과하지 아니하는 싸라기를 말한다.
- ⑦ 이물 : 보리쌀 외의 것과 2호체로 치면 체를 통과하는 것을 말한다.
- ⑧ 돌 : 돌·콘크리트 조각 등 광물성 고형물로서 2호체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크기의 것을 말한다.

10. 콩

대립종

항목 등급	최 저 한 도			최 고 한 도			
	형 질	정립 (%)	낱알의 고르기 (%)	수분 (%)	피해립·미숙립·이종곡립·이물		
					계 (%)	이종곡립 (%)	이물 (%)
1 등	1 등표준품	90.0	70.0	14.0	10.0	0.5	0.5
2 등	2 등표준품	80.0	70.0	14.0	20.0	1.0	1.0
3 등	3 등표준품	70.0	70.0	14.0	30.0	1.5	1.5
등외	—	60.0	70.0	14.0	40.0	2.0	2.0

중립종

항목 등급	최 저 한 도			최 고 한 도			
	형 질	정립 (%)	낱알의 고르기 (%)	수분 (%)	피해립·미숙립·이종곡립·이물		
					계 (%)	이종곡립 (%)	이물 (%)
1 등	1 등표준품	88.0	70.0	14.0	12.0	0.5	0.5
2 등	2 등표준품	78.0	70.0	14.0	22.0	1.0	1.0
3 등	3 등표준품	70.0	70.0	14.0	30.0	1.5	1.5
등외	-	63.0	70.0	14.0	37.0	2.0	2.0

소립종

항목 등급	최 저 한 도			최 고 한 도			
	형 질	정립 (%)	낱알의 고르기 (%)	수분 (%)	피해립·미숙립·이종곡립·이물		
					계 (%)	이종곡립 (%)	이물 (%)
1 등	1 등표준품	85.0	70.0	14.0	15.0	0.5	0.5
2 등	2 등표준품	75.0	70.0	14.0	25.0	1.0	1.0
등외	—	65.0	70.0	14.0	35.0	1.5	1.5

【기타 조건】

- ① 껍질의 색깔에 따라 황색콩, 녹색콩, 갈색콩, 흑색콩 등으로 구분한다.
- ② 색깔이 다른 콩의 혼입률 최고한도를 1등 0.5%, 2등 1.0%, 3등 3.0%, 등외 5.0%로 한다.
- ③ 낱알의 고르기는 다음관 같이 해당 등근눈의 관체로 치면 체위에 남는 잔량에 대한 무게비율을 말하며, 콩의 굵기에 따라 대립종, 중립종, 소립종 순으로 우선 적용한다.

구 분	구 분 방 법
대립종	체눈의 직경이 7.10mm인 체위에 남는 것
중립종	체눈의 직경이 6.30mm인 체위에 남는 것
소립종	체눈의 직경이 4.00mm인 체위에 남는 것

【정의】

- ① 백분율(%) : 전량에 대한 무게의 비율을 말한다.
- ② 형질 : 색택, 낱알의 모양 등을 말한다.
- ③ 정립 : 피해립, 미숙립, 이종곡립, 이물을 제외한 건전한 낱알을 말한다.
- ④ 낱알의 고르기 : 기타조건에서 정한 콩의 굵기별로 해당 등근눈의 관체로 쳤을 때, 체 위에 남는 콩의 비율을 말한다.
- ⑤ 수분 : 105℃ 건조법 또는 이와 동등한 값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측정된 함수율을 말한다.
- ⑥ 피해립 : 손상된 낱알(병해립·충해립·부패립·변질립·변색립·파쇄립·껍질이 갈라지거나 벗겨진 립 등)을 말한다. 다만, 성숙 도중에 자연적으로 껍질의 일부가 갈라진 것, 자반병립 중 자주색 병반의 면적이 그 콩알 표면적의 20% 이하인 것 등 피해가 경미하여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것은 제외한다.
- ⑦ 미숙립 : 성숙하지 아니한 낱알을 말한다.
- ⑧ 이종곡립 : 콩 외의 다른 곡립을 말한다.
- ⑨ 이물 : 곡립 외의 것을 말한다.

11. 옥수수

항목 등급	최 저 한 도		최 고 한 도			
	형 질	정립 (%)	수분 (%)	피해립·미숙립·이종곡립·이물		
				계 (%)	이종곡립 (%)	이물 (%)
1 등	1 등표준품	85.0	16.0	15.0	1.0	0.5
2 등	2 등표준품	70.0	16.0	30.0	1.5	1.0
등외	등외표준품	50.0	16.0	50.0	2.5	1.5

【정의】

- ① 백분율(%) : 전량에 대한 무게의 비율을 말한다.
- ② 형질 : 충실도, 색택, 낱알의 모양과 고르기 등을 말한다.
- ③ 정립 : 피해립, 미숙립, 이종곡립, 이물을 제외한 건전한 낱알을 말한다.
- ④ 수분 : 105℃ 건조법 또는 이와 동등한 값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측정된 함수율을 말한다.
- ⑤ 피해립 : 손상된 낱알(병해립·충해립·부패립·변질립·변색립·파쇄립 등)을 말한다. 다만, 피해가 경미하여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것은 제외한다.
- ⑥ 미숙립 : 성숙하지 아니한 낱알을 말한다.
- ⑦ 이종곡립 : 옥수수 외의 다른 곡립을 말한다.
- ⑧ 이물 : 곡립 외의 것을 말한다.

12. 고구마

등급 \ 항목		최 고 한 도			
		중결점구(%)	경결점구(%)	크기의 고르기(%)	이물(%)
식 용	1 등	0.0	10.0	±20.0	2.0
	2 등	2.0	15.0	±25.0	2.0
	3 등	5.0	20.0	±30.0	3.0
가공용	합격	5.0	—	—	3.0

【기타 조건】

- ① 품종 고유의 모양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 ② 표면에 물기가 없어야 한다.
- ③ 줄기 및 잔뿌리는 제거되어야 한다.
- ④ 부패, 변질된 것이 없어야 한다.
- ⑤ 크기에 따라 특대, 대, 중, 소, 극소로 분류하되 분류 기준은 다음에 따른다.

구 분	특대	대	중	소	극소
1구의 무게 (g)	400 이상	250 이상 400 미만	150 이상 250 미만	100 이상 150 미만	60 이상 100 미만

【정의】

- ① 백분율(%) : 전량에 대한 개수의 비율을 말한다. 다만, 이물은 전량에 대한 무게의 비율을 말한다.
- ② 중결점구 : 결점의 정도가 심한 것(병충해의 피해가 뚜렷한 것, 찌이 난 것, 잘린 것 등)을 말한다. 다만, 가공용의 것은 찌이 난 것만을 말한다.

- ③ 경결점구 :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기형인 것, 골이 파인 것, 경미한 자상 또는 찰상이 있는 것, 기타 중결점에 속하지 아니하는 결점이 있는 것 등)을 말한다.
- ④ 크기의 고르기 : $\frac{\text{최대구(최소구)무게}-\text{평균무게}}{\text{평균 무 게}} \times 100$ 에 의하여 계산된 비율을 말한다.
- ⑤ 이물 : 고구마 외의 것을 말한다.

13. 절간고구마

등급 \ 항목	최 고 한 도				
	수분(%)	두께(mm)	겉질쪽(%)	변질쪽(%)	이물(%)
1 등	13.0	7	10.0	10.0	1.0
2 등	14.0	7	20.0	30.0	3.0
등외	15.0	7	30.0	—	5.0

【정의】

- ① 백분율(%) : 전량에 대한 무게의 비율을 말한다.
- ② 두께 : 절편의 평균 두께를 말한다.
- ③ 수분 : 105℃ 건조법 또는 이와 동등한 값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측정된 함수율을 말한다.
- ④ 겉질쪽 : 절단면의 면적보다 겉질의 면적이 더 넓은 절편을 말한다.
- ⑤ 변질쪽 : 곰팡이가 피었거나 변질, 부패된 절편을 말한다.
- ⑥ 이물 : 절간고구마 외의 것을 말한다.

14. 참깨

등급 \ 항목	최저한도	최 고 한 도		
	용적중(g)	수분(%)	다른종피색립(%)	이물(%)
1 등	580	10.0	1.5	2.0
2 등	530	10.0	2.0	3.0

【정의】

- ① 백분율(%) : 전량에 대한 무게의 비율을 말한다.
- ② 용적중 : 부라웰곡립계로 측정된 1ℓ의 무게를 말한다.
- ③ 수분 : 105℃ 건조법 또는 이와 동등한 값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측정된 함수율을 말한다.

④ 다른 종피색립 : 검은 참깨를 말한다.

⑤ 이물 : 참깨 외의 것을 말한다.

15. 땅콩

가. 피땅콩

등급 \ 항목	최 고 한 도			
	수분(%)	불완전협(%)	피해협(%)	이물(%)
1 등	10.0	16.0	9.0	1.5
2 등	10.0	23.0	18.0	2.5
등외	10.0	30.0	27.0	3.5

나. 알땅콩

등급 \ 항목	최 저 한 도		최 고 한 도		
	형 질	정립 (%)	수분 (%)	피해립 · 미숙립 · 이물	
				계(%)	이물(%)
1 등	1등표준품	90.0	9.0	10.0	0.5
2 등	2등표준품	80.0	9.0	20.0	1.0
등외	등외표준품	70.0	9.0	30.0	1.5

【정의】

- ① 백분율(%) 전량에 대한 무게의 비율을 말한다.
- ② 수분 : 105℃건조법 또는 이와 동등한 값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측정 한 함수율을 말한다.
- ③ 불완전협 : 미숙협, 불임협, 파쇄협을 말한다.
 - ㉠ 미숙협 : 각지 전체 또는 한쪽 끝이 덜 여물어 심하게 얇은 것을 말한다.
 - ㉡ 불임협 : 각지는 충분히 발육되었으나 땅콩알이 없는 것을 말한다.
 - ㉢ 파쇄협 : 각지가 부러졌거나 깨어진 것과 떨어져 나온 알땅콩 중 손상이 없는 것을 말한다.
- ④ 피해협 : 변질협 · 변색협 · 충식협 · 상해협을 말한다.
 - ㉠ 변질협 : 각지가 변질된 것을 말한다. 다만, 그 땅콩알이 정상(가벼운 종피 변색품을 포함한다)인 것은 제외한다.
 - ㉡ 변색협 : 각지가 변색된 것을 말한다. 다만, 그 땅콩알이 정상(가벼운 종피 변색품을 포함한다)인 것은 제외한다.
 - ㉢ 충식협 : 각지 또는 그 땅콩알이 벌레의 피해를 받은 것을 말한다.
 - ㉣ 상해협 : 각지 속의 땅콩알이 기계적인 손상을 받은 것과 떨어져 나온 알땅콩 중 손상이 있는 것을 말한다.
- ⑤ 이물 : 피땅콩 또는 알땅콩 외의 것을 말한다. 다만, 피땅콩에 붙어 있는 씨방자 루는 제외한다.
- ⑥ 형질 : 충실도, 색택, 난알의 모양과 고르기 등을 말한다.

- ⑦ 정립 : 피해립, 미숙립, 이물을 제외한 건전한 낱알을 말한다.
- ⑧ 피해립 : 손상된 낱알(병해립·충해립·변질립·변색립·파쇄립 등)을 말한다. 다만, 피해가 경미하여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것은 제외한다.
- ⑨ 미숙립 : 성숙하지 아니한 낱알을 말한다.

16. 유체

항목 등급	최 고 한 도				색 택
	수분 (%)	피해립·미숙립·세립		이물 (%)	
		계(%)	세립(%)		
1 등	10.0	10.0	5.0	2.0	완숙된 고유의 색택
2 등	10.0	30.0	15.0	3.0	완숙된 고유의 색택

【정의】

- ① 백분율(%) : 전량에 대한 무게의 비율을 말한다.
- ② 수분 : 105℃건조법 또는 이와 동등한 값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측정된 함수율을 말한다.
- ③ 피해립 : 직경 1.5mm 등근눈의 판체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낱알 중 손상된 낱알(발아립·병해립·부패립·충해립·변질립 등)을 말한다. 다만, 피해가 경미하여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것은 제외한다.
- ④ 미숙립 : 성숙하지 아니한 낱알을 말한다.
- ⑤ 세립 : 직경 1.5mm 등근눈의 판체로 치면 통과하는 낱알을 말한다.
- ⑥ 이물 : 유체 외의 것을 말한다.

17. 사과

항목 등급	최 저 한 도							최고한도		
	1개의 무게 (g)			색 갈 비 율 (%)				과균 비율 (%)	결점과 혼입률(%)	
	국광·홍옥·오레이·축 및 이와 무게가 비슷한 품종	후지·인도·스타킹·쓰가루·골덴데리시어스·조나골드·스타크립슨·메구미 및 이와 무게가 비슷한 품종	무쓰·세계일 및 이와 무게가 비슷한 품종	홍옥·스타킹·스타크립슨 및 이와 색갈이 비슷한 품종	국광·메구미·조나골드 및 이와 색갈이 비슷한 품종	후지·세계일·쓰가루 및 이와 색갈이 비슷한 품종	골덴데리시어스·무쓰·인도·축 및 이와 색갈이 비슷한 품종		경결 점과	중결 점과
1 등	185	300	350	60	50	40	품종고유의 색갈	±15	10	0
2 등	150	250	300	50	30	30	품종고유의 색갈	±20	20	5
3 등	125	215	250	20	20	20	품종고유의 색갈	±25	30	10

【기타 조건】

① 다른 품종의 것 또는 부패·변질된 것이 없어야 한다.

【정의】

- ① 1개의 무게 : 동일 상자 안의 사과 1개의 평균 무게를 말한다.
- ② 색깔 비율 : 품종 고유의 색깔을 기준으로 감정과의 착색 정도별 면적 비율에 해당 농도 비율을 각각 곱하여 합산한 것을 말한다.
- ③ 과균비율 : $\frac{\text{최대과(최소과)무게}-\text{평균무게}}{\text{평균무게}} \times 100$ 에 의하여 계산된 비율을 말한다.
- ④ 결점과 혼입률 : 전량에 대한 결점과의 개수 비율을 말하며, 1과마다 다음 표에 의하여 감정하고, 결점의 정도가 경결점과 기준보다 가벼운 것은 정상과로 인정한다. 다만, 동일한 결점이 산재한 것은 종합하여 판정하고, 1과에 여러 가지 결점이 있는 것은 가장 중한 결점에 따른다.

기준 결점별		경 결 점 과	중 결 점 과
병 충 해 과	그을음병	과면의 5% 이상 30% 이하인 것	경결점과 기준보다 심한 것
	검은무늬점	과피에 그친 것으로서 너비 3mm 이내의 것이 10개 이상 30개 이하인 것	
	잎말이나방류	길이 5mm 이상 15mm 이하의 것으로서 고착 상태인 것	
	각지벌레류	10개 이상 30개 이하인 것	
	고 두 병	—	
	심식충류	—	피해가 과육에 미친 것
상 해 과	자 상	너비 3mm 이내이고, 길이 5mm 이상 15mm 이하로서 고착 상태인 것	경결점과 기준보다 심한 것
	압 상	너비 10mm 이상 15mm 이하로서 2개 소 이내인 것	
	열 상	꼭지 또는 배꼽 부위에 있는 것으로서 길이 10mm 이상 20mm 이하의 고착 상태인 것	
외 관 불 량 과	녹 및 약해	과면의 20% 이상 50% 이하인 것	경결점과 기준보다 심한 것
	일 소	얇은 색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너비 10mm 이상 30mm 이하인 것	
	형 상	품종 고유의 과형이 아닌 것	심한 이형과
	기 타	변색된 것, 꼭지 빠진 것, 기타 불량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것	시든 것, 오염된 것, 기타 불량 정도가 심한 것
미 숙 과	—	—	색깔, 육질, 향미, 씨의 색깔 등의 성숙도가 현저히 불량한 것

- ⑤ 다른 품종의 것 : 당해 품종 외의 품종을 말한다.
- ⑥ 부패·변질된 것 : 탄저병·부패병·과숙 또는 동해 등으로 과육 또는 과심이 변질되거나 부패된 것을 말한다.

18. 배

항목 품종 등급	최 저 한 도			최 고 한 도			색 갈
	1개의 무게 (g)			과균 비율 (%)	결점과 혼입률(%)		
					경결 점과	중결 점과	
	장십랑·풍수· 신수·20세기 및 이와 무게가 비슷한 품종	신고 및 이 와 무게가 비슷한 품종	금 촌 추 · 단 배·만삼길 및 이와 무게가 비슷한 품종				
1 등	250	300	375	±15	10	0	품종고유의 색깔
2 등	215	250	300	±20	20	5	품종고유의 색깔
3 등	190	215	250	±25	30	10	품종고유의 색깔

【기타 조건】

① 다른 품종의 것 또는 부패·변질된 것이 없어야 한다.

【정의】

- ① 1개의 무게 : 사과와 같다.
- ② 과균비율 : 사과와 같다.
- ③ 결점과 혼입률 : 전량에 대한 결점과의 개수 비율을 말하며, 1과마다 다음 표에 의하여 감정하고, 결점의 정도가 경결점과 기준보다 가벼운 것은 정상과로 인정한다. 다만, 동일한 결점이 산재한 것은 종합하여 판정하고, 1과에 여러 가지 결점이 있는 것은 가장 중한 결점에 따른다.

결점별		기준	경 결 점 과	중 결 점 과
병충해과	그을음병 (후변현상)		과면의 5% 이상 30% 이하인 것	경결점과 기준보다 심한 것
	검은무늬점		과피에 그친 것으로서 너비 10mm 이상이거나 개수로 3개 이상 10개 이하인 것	
	콩가루벌레류		길이 5mm 이상 10mm 이하인 것으로 고착 상태인 것	
	깍지벌레류		10개 이상 30개 이하인 것	
		심식충류		—
상해과	찰 과 상		과피에 그친 것으로서 과면의 5% 이상 20% 이하인 것	경결점과 기준보다 심한 것
	자 상		너비 3mm 이내이고 길이 5mm 이상 15mm 이하로서 고착 상태인 것	
	압 상		너비 10mm 이상 15mm 이하의 압상이 2개소 이내로서 부패의 염려가 없는 것	

결점별		기준	경 결 점 과	중 결 점 과
외관 불량과	녹 및 약해		과면의 20% 이상 50% 이하인 것	경결점과 기준보다 심한 것
	일 소		엷은 색을 나타내는 것으로 너비 10mm 이상 30mm 이하인 것	피해가 과면 전체에 퍼져 있거나 심한 것
	형 상		품종 고유의 과형이 아닌 것	유부과, 심한 이형과
	기 타		변색된 것, 기타 불량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것	오염된 것, 기타 불량 정도가 심한 것
미 숙 과			—	색깔, 육질, 향미, 씨의 색깔 등의 성숙도가 현저히 불량한 것

- ④ 다른 품종의 것 : 당해 품종 외의 품종을 말한다.
- ⑤ 부패·변질된 것 : 병해(검은무늬병, 겹무늬병)·과숙 또는 동해 등으로 과육이 변질·부패되거나 과심이 검게 변한 것을 말한다.

19. 단감

항목	최 저 한 도		최 고 한 도		색 갈	
	1개의 무게(g)		과균 비율 (%)	결점과 혼입률(%)		
품종 등급	부유·차량·감백목 및 이와 무게가 비슷한 품종	선사환 및 이와 무게가 비슷한 품종		경결 점과	중결 점과	
1 등	180	125	±15	10	0	품종고유의 색깔
2 등	150	100	±20	20	5	품종고유의 색깔
3 등	115	75	±25	30	10	품종고유의 색깔

【기타 조건】

- ① 다른 품종의 것 또는 부패·변질된 것이 없어야 한다.

【정의】

- ① 1개의 무게 : 사과와 같다.
- ② 과균비율 : 사과와 같다.
- ③ 결점과 혼입률 : 전량에 대한 결점과의 개수 비율을 말하며, 1과마다 다음 표에 의하여 감정하고, 결점의 정도가 경결점과 기준보다 가벼운 것은 정상과로 인정한다. 다만, 동일한 결점이 산재한 것은 종합하여 판정하고, 1과에 여러 가지 결점이 있는 것은 가장 중한 결점에 따른다.

결점별		기준	경 결 점 과	중 결 점 과
병충해과	그을음병		과면의 5% 이상 30% 이하인 것	경결점과 기준보다 심한 것
	까지벌레류		10개 이상 30개 이하인 것	
	기 타		피해가 심하지 아니하고 고착 상태인 것	피해가 과육에 심하게 미친 것
상해과	찰과상		과피에 그친 것으로서 과면의 5% 이상 20% 이하인 것	경결점과 기준보다 심한 것
	자상		너비 3mm 이내이고, 길이 5mm 이상 15mm 이하로서 고착 상태인 것	
외관불량과	녹 및 약해		과면의 10% 이상 30% 이하인 것	경결점과 기준보다 심한 것
	일 소		얇은 색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10mm 이상 30mm 이하인 것	
	형 상		품종 고유의 과형이 아닌 것	심한 이형과
	기 타		불량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것	꼭지가 빠지거나 꼭지에 틈이 생긴 것, 오염된 것, 기타 불량 정도가 심한 것
미 숙 과			—	과피의 착색 면적이 20% 이하인 것이거나 육질, 향미, 씨의 색깔 등의 성숙도가 현저히 불량한 것

④ 다른 품종의 것 : 당해 품종 외의 품종을 말한다.

⑤ 부패·변질된 것 : 탄저병·과숙 또는 동해 등으로 과육이 변질되거나 부패된 것을 말한다.

20. 감귤(온주밀감)

항목 등급	1개의 지름		최 고 한 도			색 갈
	최소 (cm)	최대 (cm)	결점과 혼입률(%)		과균비율 (%)	
			경결점과	중결점과		
1 등	6.1	8.0	10.0	0.0	10.0	품종 고유의 색깔
2 등	5.5	8.0	20.0	5.0	15.0	품종 고유의 색깔
3 등	—	—	30.0	10.0	20.0	품종 고유의 색깔

【기타 조건】

① 다른 품종의 것 또는 부패·변질된 것이 없어야 한다.

【정의】

① 1개의 지름 : 동일 상자 안의 최대과 또는 최소과의 지름을 말한다.

- ② 과균비율 : $\frac{\text{최대과 지름}-\text{최소과 지름}}{\text{최대과 지름}+\text{최소과 지름}} \times 100$ 에 의하여 계산된 비율을 말한다.
- ③ 결점과 혼입률 : 전량에 대한 결점과의 개수 비율을 말하며, 1과마다 다음 표에 의하여 감정하고, 결점의 정도가 경결점과 기준보다 가벼운 것은 정상과로 인정한다. 다만, 동일한 결점이 산재한 것은 종합하여 판정하고, 1과에 여러 가지 결점이 있는 것은 가장 중한 결점에 따른다.

결점별 기준		경 결 점 과	중 결 점 과
병충해과	그을음병	과면의 10% 이상 30% 이하인 것	경결점과 기준보다 심한 것
	까지벌레류	10개 이상인 것	
	기타 (검은 무늬점등)	피해가 심하지 아니한 것	
상해과	찰과상	과피에 그친 것으로서 과면의 5% 이상 20% 이하인 것	경결점과 기준보다 심한 것
	자상	과피에 그친 것으로서 길이 10mm 이상의 고착 상태인 것	—
외관불량과	약해 및 일소	과면의 10% 이상 30% 이하인 것	경결점과 기준보다 심한 것
	형상	품종 고유의 과형이 아닌 것	심한 이형과
	기타	불량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것	오염된 것 기타 불량 정도가 심한 것
미숙과		—	담황색 이상의 착색 부분이 전체 과면의 60% 미만인 것
기타		꼭지가 긴 것, 부피과	—

- ④ 다른 품종의 것 : 숙기(조생·중생·만생)가 다른 품종을 말한다.
- ⑤ 부패·변질된 것 : 병해(수지병·탄저병 등), 상해(자상·압상 등) 또는 동해 등에 의하여 과피 또는 과육이 변질되거나 부패된 것을 말한다.

21. 고추(붉은 마른고추)

등급	항목	최저 한도	최고한도					
			수분 (%)	결점과 혼입률(%)		탈락종자 (%)	이물 (%)	1과의 길이 7cm 이하 혼입률(%)
				중결점과	경결점과			
1등	7.0이상	15.0	1.0	10.0	1.0	1.0	5.0	
2등	7.0이상	15.0	3.0	15.0	2.0	1.5	15.0	

【정의】

- ① 수분 : 105℃ 건조법 또는 이와 동등한 값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측정 한 함수율을 말한다.

- ② 결점과 혼입률 : 전량에 대한 결점과의 무게 비율을 말하며, 1과마다 다음 표에 의하여 감정한다. 다만, 동일한 결점이 산재한 것은 종합하여 판정하고 1과에 여러 가지 결점이 있는 것은 가장 중한 결점에 따른다.

기준 결점별	중 결 점 과	경 결 점 과
반점 및 변 색	황백색 또는 녹색의 과면의 20% 이상인 것. 과열로 검게 변한 것이 과면의 30% 이상인 것.	중결점과 기준보다 심하지 아니한 것(꼭지 또는 끝 부분의 경미한 반점 또는 변색은 제외한다)
박 피	미숙으로 과피가 매우 얇고 주름이 심한 것	중결점과 기준보다 심하지 아니한 것(끝 부분의 경미한 주름은 제외한다.)
손 상	—	갈라진 것, 길이의 2분의 1 이상이 갈라진 것
병충해	과면의 20% 이상인 것	중결점과 기준보다 심하지 아니한 것
기 타	심하게 오염된 것	중결점과 기준보다 심하지 아니한 것

- ③ 탈락 종자 : 떨어져 나온 고추씨의 무게 비율을 말한다.
 ④ 이물 : 고추 외의 것(떨어진 꼭지를 포함한다)의 무게 비율을 말한다.

22. 마늘(동마늘)

항목 등급	최저한도			최 고 한 도					
	크기(cm)			크기의 고르기 (%)	결점구 혼입률(%)			쪽마늘 (%)	이물 (%)
	한지형	난지형			중결점구		경결점 구		
		대서	남도		계	형상불량			
1 등	4.0	6.0	5.0	15	3.0	1.0	4.0	4.0	0.3
2 등	3.5	4.5	4.0	20	5.0	2.0	10.0	10.0	0.5
등외	3.0	3.5	3.5	25	8.0	4.0	15.0	10.0	1.0

【기타 조건】

- ① 동일 품종으로서 품종 고유의 형상 및 색깔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② 흙은 충분히 털고, 잘 건조하여야 한다.
 ③ 줄기는 마늘통으로부터 2cm정도 남기고 잘라야 한다.
 ④ 난지형 1등의 열구 혼입률 최고한도는 30%로 한다.
 * 동마늘의 건조 상태는 마늘통의 외피를 손으로 만져보고 비벼보아 건조정도를 판단한다.

【정의】

- ① 크기 : 1마늘통의 평균 지름을 말한다.
 ② 크기의 고르기 : $\frac{\text{최대구 지름}-\text{최소구 지름}}{\text{최대구 지름}+\text{최소구 지름}} \times 100$ 에 의하여 계산된 비율을 말한다.

- ③ 결점구 혼입률 : 전량에 대한 결점구의 개수 비율을 말하며, 1구마다 통마늘 상태로 다음 표에 의하여 감정한다. 다만, 형상불량 외의 중결점구는 마늘쪽의 쪽 수 비율을 말한다.

결점별 기준	중 결 점 구	경 결 점 구
병충해	증상이 뚜렷하거나 진행성인 것	중결점구 기준보다 심하지 아니한 것
상 해	기계적 손상이 마늘쪽의 육질에 미친 것	마늘쪽 수의 4이상이 떨어져 나간 것 외피에 기계적 손상을 입은 것, 뿌리털이 빠진 것
형상불량	벌마늘(완전한 줄기가 2개 이상 발생한 2차 생장구), 싹이 난 것, 뿌리가 난 것	—
기 타	부패 또는 변질된 것	중결점구 기준보다 심하지 아니한 것

- ④ 쪽마늘 : 마늘통의 줄기로부터 떨어져 나온 마늘쪽의 무게 비율을 말한다.
 ⑤ 이물 : 마늘 외의 것의 무게 비율을 말한다.
 ⑥ 열구 : 마늘쪽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줄기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마늘통 높이의 3/4 이상이 외피에 싸여 있는 것은 제외한다.

23. 양파

항목 등급	최 저 한 도		최 고 한 도			이물 (%)
	크기 (cm)		크기의 고르기 (%)	결점구 혼입률(%)		
	편평형	구형·기타		중결점구	경결점구	
1 등	7.5	7.0	15	2.0	5.0	0.3
2 등	6.5	6.0	20	3.0	7.0	0.5
등외	5.0	5.0	25	5.0	15.0	1.0

【기타 조건】

- ① 동일 품종으로서 품종 고유의 형상 및 색깔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② 흙은 충분히 털고 잘 건조하여야 한다.
 ③ 줄기는 양파통으로부터 1cm 정도 남기고 잘라야 한다.
 ④ 부패·변질된 것이 없어야 한다.

【정의】

- ① 크기 : 양파 1구의 평균 지름을 말한다.
 ② 크기의 고르기 : $\frac{\text{최대구 지름} - \text{최소구 지름}}{\text{최대구 지름} + \text{최소구 지름}} \times 100$ 에 의하여 계산된 비율을 말한다.

- ③ 결점구 혼입률 : 전량에 대한 결점구의 개수 비율을 말하며, 1구마다 다음 표에 의하여 감정한다. 다만, 동일한 결점이 산재한 것은 종합하여 판정하고, 1구에 여러 가지 결점이 있는 것은 가장 중한 결점에 따른다.

결점별 기준	중 결 점 구	경 결 점 구
병 충 해	증상이 뚜렷하거나 진행성인 것	외피에 그치고 진행성이 아닌 것으로서 심하지 아니한 것
상 해	자상 또는 압상이 육질에 심하게 미친 것	외피가 표면적의 1/2 이상 벗겨진 중결점구 기준보다 자상 또는 압상이 심하지 아니한 것
형상불량	짜이 난 것, 추대된 것	쌍구, 열구, 이형구
기 타	심하게 오염된 것	중결점과 기준보다 심하지 아니한 것

- ④ 이물 : 양과 외의 것의 무게 비율을 말한다.

24. 누에씨

등급	기 준	
	나방검사시	누에알검사시
합격	나방검사결과 병독이 발견되지 않은 누에씨	누에알검사결과 병독이 발견되지 않은 누에씨

【기타조건】

- ① 검사과정에서 나방 또는 누에씨를 분실하였거나, 혼합되어 구분할 수 없는 누에씨는 불합격으로 한다.
- ② 불합격된 누에씨는 전량 소각 폐기하여야 한다.

【정의】

- ① 나방검사라 함은 누에씨의 어머니나방에 대하여 병독 유무를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 ② 누에알검사라 함은 누에알을 부화시킨 후 개미누에에 대하여 병독 유무를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 ③ 병독이라 함은 잔알이병원체를 말한다.

【검사단위의 구성】

- ① 검사단위의 구성은 다음 표와 같이 한다.

원원누에씨	원누에씨	보급누에씨	누에알검사
5나방 단위	28나방 단위	30~40나방단위	1상자당 200알

- ② 보급누에씨의 나방검사는 소잠구의 크기에 따라 아래 표에 의거 검사대상 나방수를 정하여 검사하여, 추출된 나방에서 병독이 발견된 경우 또는 소잠구별 누에씨 생산량이 계획량의 70%미만인 경우는 모든 나방을 검사하여야 한다.

소잡구의 크기	검사대상나방수 비율	소잡구의 크기	검사대상나방수의 비율
1,400나방 이하	100%	8,401~14,000나방	60%~40%
1,401~4,200나방	100%~80%	14,001~28,000나방	40%~20%
4,201~8,400나방	80%~60%	28,001나방 이상	20%~10%

25. 누에 고치

가. 정상 고치

항목 등급	최 저 한 도					색 갈
	생견사량(%)		정견비율 (%)	견층비율(%)		
	봄누에 고 치	여름 및 가을 누에고치		봄누에 고 치	여름 및 가을 누에고치	
1 등	19.0	18.0	98	23.5	22.5	고유의 색갈
2 등	18.0	17.0	96	22.5	21.5	고유의 색갈
3 등	17.0	16.0	94	21.5	20.5	고유의 색갈

나. 격외 고치

구 분	기 준
걸물든고치	경미하게 걸물든고치
중고치	물든고치·쇳자리고치·별난고치 등
하고치	얇은고치·구멍고치·죽은고치·끝얇은고치 등 조사하기에 부적당한 고치
쌍고치	고치 1개에 번테기가 2개 이상 들어 있는 고치

【기타 조건】

- ① 마른누에고치는 견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누에든고치·선번테기고치는 검사하지 아니한다.

【정의】

- ① 생견사량 : 견층비율에 유효 생사율을 곱하여 산출된 비율을 말한다.
다만, 유효 생사율은 고치층의 주름·조밀·영견상태·교착상태·고치의 모양 및 고르기 등에 따라 추정된 비율을 적용한다.
- ② 정견비율 : 전체 고치의 개수에 대한 정상적인 고치의 개수의 비율을 말한다.
- ③ 견층비율 : 전체 고치의 무게에 대한 견층무게의 비율을 말한다.
- ④ 물든고치 : 더럽혀진 고치를 말한다.
- ⑤ 쇳자리고치 : 쇳의 자국이 난 고치를 말한다.
- ⑥ 별난고치 : 보통의 것과 모양이 매우 다른 고치를 말한다.
- ⑦ 얇은고치 : 고치의 견층이 극히 얇은 고치를 말한다.
- ⑧ 구멍고치 : 구더기가 나온 고치를 말한다.

- ⑨ 죽은고치 : 누에 또는 번데기가 죽은 고치를 말한다.
- ⑩ 끝얇은고치 : 고치의 양끝이 얇게 되었거나 구멍이 난 고치를 말한다.
- ⑪ 마른누에고치 : 찌서 말린 고치를 말한다.
- ⑫ 누에든고치 : 고치 속의 누에가 번데기로 변하지 못한 고치를 말한다.
- ⑬ 선번데기고치 : 번데기가 덜 굵은 고치를 말한다.

26. 생사

가. 목적섬도 18데니어 이하의 경우

항목 \ 등급	5A	4A	3A	2A	A	B	C	D	
목적섬도(데니어)									
섬도편차 (데니어)	┌12 이하 └13~15 ┘16~18	0.70이하 0.75이하 0.85이하	0.80이하 0.90이하 1.00이하	0.95이하 1.05이하 1.20이하	1.10이하 1.25이하 1.40이하	1.35이하 1.50이하 1.70이하	1.75이하 1.95이하 2.20이하	2.35이하 2.60이하 2.95이하	2.35초과 2.60초과 2.95초과
목적섬도(데니어)									
실무너Ⅱ류 (개)	┌12 이하 └13~18	17이하 10이하	26이하 17이하	37이하 26이하	50이하 37이하	65이하 50이하	82이하 65이하	101이하 82이하	101초과 82초과
마 디 (점)		98이상	97이상	95이상	93이상	88이상	79이상	66이상	66미만
항목 \ 계급	(1)	(2)	(3)	(4)	(5)	(6)	(7)	(8)	
목적섬도(데니어)									
섬도최대편차 (데니어)	┌12 이하 └13~15 ┘16~18	1.9이하 2.0이하 2.3이하	2.2이하 2.4이하 2.7이하	2.6이하 2.8이하 3.2이하	3.0이하 3.3이하 3.8이하	3.6이하 4.1이하 4.6이하	4.7이하 5.3이하 5.9이하	6.3이하 7.0이하 8.0이하	6.3초과 7.0초과 8.0초과
항목 \ 계급	(1)	(2)	(3)	(4)	(5)	(6)			
실 무 너 Ⅲ 류 (개)	1이하	2이하	6이하	13이하	22이하	22초과			
항목 \ 계급	(1)	(2)	(3)	(4)	(5)				
목적섬도(데니어)									
실폴립절단 (회)	┌12 이하 └13~18	7이하 5이하	15이하 12이하	25이하 21이하	37이하 32이하	37초과 32초과			
항목 \ 계급	(1)	(2)	(3)	(4)	(5)				
강 력 (g)				3.7이상				3.7미만	
항목 \ 계급	(1)	(2)	(3)						
신 도 (%)	19이상	18이상						18미만	

나. 목적섬도 19데니어 이상 33데니어 이하의 경우

항목 \ 등급	5A	4A	3A	2A	A	B	C	D
목적섬도(데니어)								
섬도편차 (데니어) ㄱ19~22	1.00이하	1.15이하	1.35이하	1.60이하	1.95이하	2.50이하	3.35이하	3.35초과
┆23~25	1.10이하	1.30이하	1.50이하	1.80이하	2.20이하	2.80이하	3.75이하	3.75초과
┆26~29	1.15이하	1.35이하	1.60이하	1.90이하	2.30이하	2.95이하	3.95이하	3.95초과
┆30~33	1.30이하	1.50이하	1.75이하	2.05이하	2.50이하	3.20이하	4.30이하	4.30초과
목적섬도(데니어)								
실무늬Ⅱ류 (개) ㄱ19~25						50이하		
┆26~33	5이하	10이하	17이하	26이하	37이하	42이하	65이하	65초과
	3이하	7이하	13이하	20이하	30이하		56이하	56초과
마디 (점)	98이상	97이상	95이상	93이상	88이상	79이상	66이상	66미만
항목 \ 계급	(1)	(2)	(3)	(4)	(5)	(6)	(7)	(8)
목적섬도(데니어)								
섬도최대편차 (데니어) ㄱ19~22							9.0이하	9.0초과
┆23~25	2.7이하	3.1이하	3.6이하	4.3이하	5.3이하	6.8이하	10.1이하	10.1초과
┆26~29							10.7이하	10.7초과
┆30~33	3.0이하	3.5이하	4.1이하	4.9이하	5.9이하	7.6이하	11.6이하	11.6초과
	3.1이하	3.6이하	4.3이하	5.1이하	6.2이하	8.0이하		
	3.5이하	4.0이하	4.7이하	5.5이하	6.8이하	8.6이하		
항목 \ 계급	(1)		(2)	(3)	(4)		(5)	(6)
실무늬Ⅲ류 (개)	0		1이하	2이하	6이하		13이하	13초과
항목 \ 계급	(1)		(2)		(3)		(4)	(5)
목적섬도(데니어)								
실풀림절단 (회) ㄱ19~25	4이하		10이하		18이하		29이하	29초과
┆26~33	3이하		9이하		17이하		27이하	27초과
항목 \ 계급	(1)							(2)
강 력 (g)	3.7이상							3.7미만
항목 \ 계급	(1)	(2)	(3)				(4)	
신 도 (%)	20이상	19이상	18이상				18미만	

다. 목적섬도 34데니어 이상의 경우

항목	등급	5A	4A	3A	2A	A	B	C	D
	목적섬도(데니어)								
섬도편차 (데니어)	┌34~49	2.30이하	2.60이하	3.10이하	3.65이하	4.45이하	5.70이하	7.65이하	7.65초과
	└50~69	3.25이하	3.75이하	4.40이하	5.20이하	6.35이하	8.15이하	10.90이하	10.90초과
	└70이상	3.90이하	4.45이하	5.25이하	6.20이하	7.60이하	9.75이하	13.05이하	13.05초과
목적섬도(데니어)									
	섬도최대편차 (데니어)								
	┌34~49	7.0이하	8.0이하	9.5이하	11.0이하	13.5이하	17.0이하	23.0이하	23.0초과
└50~69	10.0이하	11.0이하	13.0이하	15.5이하	19.0이하	24.5이하	32.5이하	32.5초과	
	└70이상	11.5이하	13.5이하	16.0이하	18.5이하	23.0이하	29.0이하	39.0이하	39.0초과
실 무 니 II 류 (개)		1이하	3이하	7이하	13이하	20이하	30이하	42이하	42초과
마 디 (점)		98이상	97이상	95이상	93이상	88이상	79이상	66이상	66미만
항목	계급	(1)			(2)	(3)	(4)	(5)	
	실 무 니 III 류 (개)	0			1이하	2이하	6이하	6초과	
항목	계급	(1)	(2)	(3)		(4)	(5)		
	목적섬도(데니어)								
실풀림절단 (회)	┌34~49	1이하	6이하	13이하	22이하	22초과			
	└70이상	0이하	4이하	10이하	18이하	18초과			
항목	계급	(1)						(2)	
	강 력 (g)	3.7이상						3.7미만	
항목	계급	(1)	(2)	(3)			(4)		
	신 도 (%)	20이상	19이상	18이상			18미만		

【정의】

- ① 목적섬도 : 생사를 제조할 때 목표로 한 실의 굵기를 말한다.
- ② 섬도편차 : 시료의 굵기 정도를 측정, 도수분포표로 작성하여 계산한 표준편차 값을 말한다.
- ③ 섬도최대편차 : 시료의 평균섬도 값을 중심으로 가장 큰 측정값의 편차를 말한다.
- ④ 실무니 : 시료를 가지런히 감은 검사관에 나타나는 줄무늬 현상을 말하며, 실무니 변화 농도를 표준화하여 I, II, III류로 기준농도를 정한다.

- ⑤ 마디 : 검사관에 감은 시료상에 나타나는 실 마디로서, 종류로는 왕마디·큰마디·중마디·잔마디로 구분한다.
- ⑥ 실풀림절단 : 실풀림검사 시간 내에 보빈에 감는 동안 실 가닥이 절단된 횟수를 말한다.
- ⑦ 강력(g) : 시료에 외력을 가하여 절단하는데 드는 힘을 섬도로 나눈 값을 말한다.
- ⑧ 신도(%) : 시료에 외력을 가하여 절단하기까지의 늘어나는 길이를 원래의 길이로 나눈 값의 백분율을 말한다.

27. 쌍고치실

항목		격			
		특우등	우등	1등	2등
섬도개차(%)	목적섬도(데니어) 79 이하	65 이하	80 이하	100 이하	100 초과
	80 이상	60 이하	75 이하	100 이하	100 초과
특수마디(감점)	목적섬도(데니어) 79 이하	1 이하	6 이하	12 이하	12 초과
	80~159	2 이하	8 이하	18 이하	18 초과
	160 이상	3 이하	12 이하	25 이하	25 초과
풀림새성적중 총절단횟수(회)	목적섬도(데니어) 159 이하	20 이하	40 이하	60 이하	60 초과
	160 이상	10 이하	20 이하	30 이하	30 초과

【정의】

- ① 섬도개차 : 평균섬도를 중심으로 편차값이 가장 큰 섬도측정값의 개차의 백분율을 말한다.
- ② 특수마디 : 쌍고치실에 나타난 마디의 일종으로서, 검은덩이마디, 붉은덩이마디, 붉은마디, 왕덩이마디, 이물마디로 구분한다.

28. 견연사

종 별	우 급	양 급	가 급
야 잠 사	500점 이상	400점 이상 500점 미만	400점 미만
쌍고치실 및 복합연사	650점 이상	500점 이상 650점 미만	500점 미만
특수편직용	700점 이상	650점 이상 700점 미만	650점 미만
기 타	850점 이상	700점 이상 850점 미만	700점 미만

【정의】

- ① 견연사 : 생사를 집합하여 꼬임을 주어 섬도·형태·탄성·강신도 등 생사의 성상을 변화시킨 실을 말한다.
- ② 야잠사 : 들누에 고치로부터 뽑은 생사를 말한다.

- ③ 복합연사 : 생사·쌍고치실·야잠사 등과 혼합하여 제조한 견연사를 말한다.
- ④ 특수편직용 : 편직물용으로 제조한 견연사를 말한다.
- ⑤ 기타 : 일반 생사로 제조한 견연사를 말한다.

29. 수출하는 농산물

당사국간의 계약규격에 의한다.

30. 수입하는 농산물

당사국간의 계약규격에 의한다. 다만, 생사·쌍고치실·견연사는 국내산 농산물 검사규격과 같다.

양 곡 관 리 법

2014년 1월 일 인쇄
2014년 1월 일 발행

발행처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식량정책과**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전 화 : 044 - 201 - 1816~7
팩 스 : 044 - 868 - 2306
<http://www.mafra.go.kr>

인 쇄 : **한 라 기 획**
전 화 : 044 - 868 - 7334~5
팩 스 : 044 - 868 - 7336
E-mail : hanra503@naver.com